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2025. 8.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사 우

목 차

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 1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

2. 세입 결산 ····· 2

3. 세출 결산 ····· 3

가. 총괄 내역 ····· 3

나. 이월·불용 내역 ····· 6

다. 이용·이체·전용 내역 ····· 7

라. 예비비 사용 ····· 8

4. 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주요 검토내용 ····· 9

가. 총괄검토 ····· 9

□ 통일부 예산 구조의 불안정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 9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 15

□ 1억원 이상 보조단체의 회계검사 비용 기준 마련 필요 ····· 21

나. 일반회계 ····· 25

다. 남북협력기금 ····· 30

Ⅱ.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별 검토 ····· 32

1. 세 입 ····· 32

□ 수납률이 저조한 과태료의 수납률 제고 필요 ····· 34

2. 통일정책(1000 프로그램) ····· 37

가. 개 요 ····· 37
나. 세부사업별 검토 ····· 38
1) 통일정책추진(1031-300) ····· 38
□ 세목별 초과집행·불용 등 예산 집행의 불균형 해소 필요 ····· 39
□ 반복적인 수의계약 집행 지양 및 수의계약 요건 사전점검 필요 ·· 42
□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실효성 확보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 46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의 실질적 성과 제고 필요 ····· 52
□ 자문기구 예산의 집행 적정성 제고 필요 ····· 55
□ 세목 조정 및 용역비 집행 관리 강화 필요 ····· 61
2)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 67
□ 사업예산 집행관리 내실화 필요 ····· 69
3)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 ····· 73
□ 예산 집행의 일관성 제고 및 주요 협력국 확대 필요 ····· 74
□ 단독 응찰 반복에 따른 수의계약 구조개선 필요 ····· 76
□ 긴급 수의계약 및 단기 행사 위주의 운영 개선 필요 ····· 78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과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평가 및 환류 제도 마련 필요 ····· 81

3. 북한정세분석(1500 프로그램) ····· 85

가. 개 요 ····· 85
나. 세부사업별 검토 ····· 86
1) 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 ····· 86
2)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1533-502) ····· 88
□ 북한정보 포털의 자료 등록 및 업데이트 구조 개선 필요 ····· 90
3)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308) ····· 95
4)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 ····· 96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 97

4. 인도적 문제해결(2100 프로그램) ····· 100
가. 개 요 ····· 100
나. 세부사업별 검토 ····· 101
1)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2133-302) ····· 101
2)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 ····· 102
□ 잦은 보조금 집행계획 변경 및 내부 회원에 사례비 지급의 부적정 ····· 105
□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생계지원비 등 지급 부적정 ····· 109
□ 한시기구 '납북자대책팀'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조치 여부 등 종합적 검토 필요 ····· 111
3)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2133-505) ····· 114
4)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 115
□ 예산 편성 내실화 및 집행 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필요 ····· 117
□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필요 ····· 121
5)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 ····· 125
□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127
□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영상 보고서' 제작 부적정 등 ····· 129
6) 북한인권재단 운영(2135-304) ····· 133
□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 개선 필요 ····· 134
7)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2135-305) ····· 136
□ 당초 편성 목적 외 소송경비 집행 부적정 ····· 137
□ 집행 부진 부적정 및 실제 추진 가능한 대안의 적극적 발굴 필요 등 ····· 140
8)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 ····· 143
9)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2135-501) ····· 144
10)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2137-301) ····· 145
□ 기념관 운영 예산의 연례적 세목조정 등 변경집행 부적정 ····· 146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2300 프로그램) ····· 150
가. 개 요 ····· 150
나. 세부사업별 검토 ····· 152

1)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 152
□ 예산에 없던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전용을 통한 추진 ····· 156
2)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2331-500) ····· 161
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2337-301) ····· 162
□ 반복적인 집행률 저조 및 예산 편성의 합리성 제고 필요 ····· 164
4)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 ····· 167
□ 하나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현실화 필요 ····· 169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2331-302) ····· 171
1) 결산 개요 ····· 171
2) 사업별 검토 ····· 173
□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정착을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 174
□ 예산 미편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존 사업 예산 감액 등 부적정 178
□ 당초 사업목적에서 벗어난 예산 집행 부적정 ····· 182
3) 사업 외 검토 ····· 185
□ 결산잉여금 축소를 위한 노력 등 필요 ····· 185

6.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3000 프로그램) ····· 188

가. 개 요 ····· 188
나. 세부사업별 검토 ····· 190
1)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3031-300) ····· 190
2)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3032-303) ····· 191
3)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3032-506) ····· 192
4)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3036-312) ····· 193

7. 남북회담(4000 프로그램) ····· 194

가. 개 요 ····· 194
나. 세부사업별 검토 ····· 195
1) 남북회담 추진(4031-300) ····· 195
2)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4032-302) ····· 196

8. 통일교육(5000 프로그램) ····· 198
가. 개 요 ····· 198
나. 세부사업별 검토 ····· 200
1)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 ····· 200
□ 국회 의결 내용과 다른 내역사업 신설 후 타 사업으로 내역변경 부적정 ····· 202
□ 예산 소요에 대한 예측력 강화 등 필요 ····· 206
2)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 210
□ 실소요가 없는 예산 편성 후 불용 부적정 ····· 211
3)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5031-309) ····· 214
4)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5031-507) ····· 216
5)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5033-308) ····· 217
9. 통일행정지원(7000 프로그램) ····· 218
가. 개 요 ····· 218
나. 세부사업별 검토 ····· 219
1)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 219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파견관 행정비용 연례적 불용 ····· 220
2)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10, 7011-260) ····· 223
□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기본경비 수요 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 224
□ 주러시아 통일주재관 직위 복원 검토 필요 ····· 227
3)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7011-258) ····· 229
□ 예산 미편성된 종료사업 잔여 물량에 대한 기본경비 활용 부적정 ····· 230
□ 국외업무여비 예산 연례적 조정 및 전용 부적정 ····· 234
4) 정책연구개발(7031-300) ····· 237
5) 통일업무지원(7032-303) ····· 238

Ⅲ. 2024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결산 개요 ····· 239

1. 남북협력기금 결산 총괄 ····· 239

가. 기금 총괄 ····· 239
나. 수입 결산 ····· 240
다. 지출 결산 ····· 241

2. 남북협력기금 수입 결산 검토 ····· 244

가. 건물대여료 ····· 244
나.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245
다. 기타재산이자수입 ····· 249
라. 기타경상이전수입 ····· 250
마. 기타잡수입 ····· 253
바.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 254

3. 남북협력기금 지출 결산 검토 ····· 255

가. 통일정책 ····· 255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 257
나. 남북사회문화교류 ····· 258
1) 남북사회문화교류 ····· 259
다. 인도적 문제해결 ····· 261
1) 이산가족교류지원 ····· 262
2) 대북인도적지원 ····· 263
라.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 267
1)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 268
□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업무 위탁비 집행 부적정 ····· 271
□ 소극행정으로 인한 국가재정상 손해 발생 여부 조사 실시 필요 ····· 275
□ 관행에 따른 예산 과다 편성 후 불용 부적정 ····· 284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국회 심의 시 변화된 상황의 적시 반영 필요 ····· 287
2) 개성공단 조성 ····· 291

마.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 294
바. 기금간 거래 ····· 295
사. 여유자금 운용 ····· 298

Ⅳ.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 299

1. 재정상태 분석 ····· 299

가. 자 산 ····· 300
나. 부 채 ····· 301
다. 순자산 ····· 302

2. 재정운영 분석 ····· 303

가. 프로그램순원가 ····· 304
나. 관리운영비 ····· 305
다. 비배분비용 ····· 305
라. 비배분수익 ····· 305

3. 순자산변동 분석 ····· 306

가. 기초순자산 ····· 306
나. 재정운영결과 ····· 306
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306
라. 조정항목 ····· 307

Ⅴ.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조치 결과 ····· 308

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2024년도 세입은 전년 대비 32.9% 감소한 13억원이 수납되었고, 예산액 14억 4,800만원 대비 89.8%가 수납되었음.

2024년도 세출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2,986억 5,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3,221억 3,700만원 대비 92.7%가 집행되었음.

남북협력기금전출금(예산 1,000억원 집행) 제외 시 일반예산은 1,986억 5,7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2,220억 2,700만원 대비 89.4%가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전년도 결산액	전년 대비 증감율
	예산현액(A)	결산액(B)	수납률 또는 집행률(B/A)		
세 입	1,448	1,300	89.8	1,937	△32.9
세 출	322,137	298,657	92.7	256,247	△16.6
-일반예산	222,027	198,657	89.4	256,247	△22.5
-기금전출금	100,000	100,000	100	57,200	74.8

자료: 통일부

2. 세입 결산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7.8% 감소한 14억 4,8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14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6% 감소하였음.

2024년도 수납액은 13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7.0%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9,400만원임.

< 2024년도 세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024년	1,448	1,494	1,300	89.8	87.0	-	194
2023년	2,006	2,185	1,937	96.5	88.6	-	249
증감률	△27.8	△31.6	△32.9	-	-	-	△22.1

자료: 통일부

3. 세출 결산

가. 총괄 내역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3,220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1억 1,00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3,221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이 중 집행액은 2,986억 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7%임.

< 2024년도 세출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4년	322,027	322,137	298,657	92.7	92.7	3,448	20,032
-일반예산	222,027	222,137	198,657	89.5	89.4	3,448	20,032
-기금전출금	100,000	100,000	100,000	100	100	-	-
2023년	323,340	327,447	256,247	79.3	78.3	110	71,090
증감율	△0.4	△1.6	16.6	13.4	14.4	3,034.5	△71.8

자료: 통일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작년에 비해 14.4%p 증가하였고 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일반예산의 집행률 역시 전년 보다 11.1%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이 계획 대비 저조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2300) 프로그램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액(80억 5,300만원 불용)과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비(13억 7,400만원 불용)에서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조달청 심의절차 등으로 시공업체 계약이 지연되어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31억 6,000만원

이월) 등 34억 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2024년도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1000 통일정책	14,788		14,788	13,639		1,149
1031 평화통일기반조성	14,788		14,788	13,639		1,149
1500 북한정세분석	13,998		13,998	10,633	3,160	206
1533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4,159		4,159	3,963		196
1535 북한자료센터 운영	9,839		9,839	6,670	3,160	10
2100 인도적 문제해결	13,167		13,167	12,141	143	882
2133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1,326		1,332	1,269		63
2135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10,422		10,416	9,473	143	799
2137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1,419		1,419	1,399		20
230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83,897		83,897	74,014		9,883
2331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52,838		53,161	52,705		456
233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31,059		30,736	21,309		9,427
3000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4,399		4,319	3,734		585
3031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3,417		3,337	2,995		342
3032 개성공단 사업 지원	733		733	573		160
3036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249		249	166		83
4000 남북회담	2,355		2,355	2,152		203
4031 남북회담 추진	305		305	192		113
4032 남북회담본부 운영	2,050		2,050	1,960		90
5000 통일교육	22,861		23,948	22,818		1,129
5002 국립통일교육원 인건비	5,691		6,765	6,334		431
5018 국립통일교육원 기본경비	1,397		1,410	1,278		132
5031 통일교육추진	14,308		14,308	13,778		529
5033 통일교육원 시설운영	1,465		1,465	1,428		37
7000 통일행정지원	66,562	110	65,665	59,525	145	5,994
8400 회계기금간거래	100,000		100,000	100,000		
합 계	322,027	110	322,137	298,657	3,448	20,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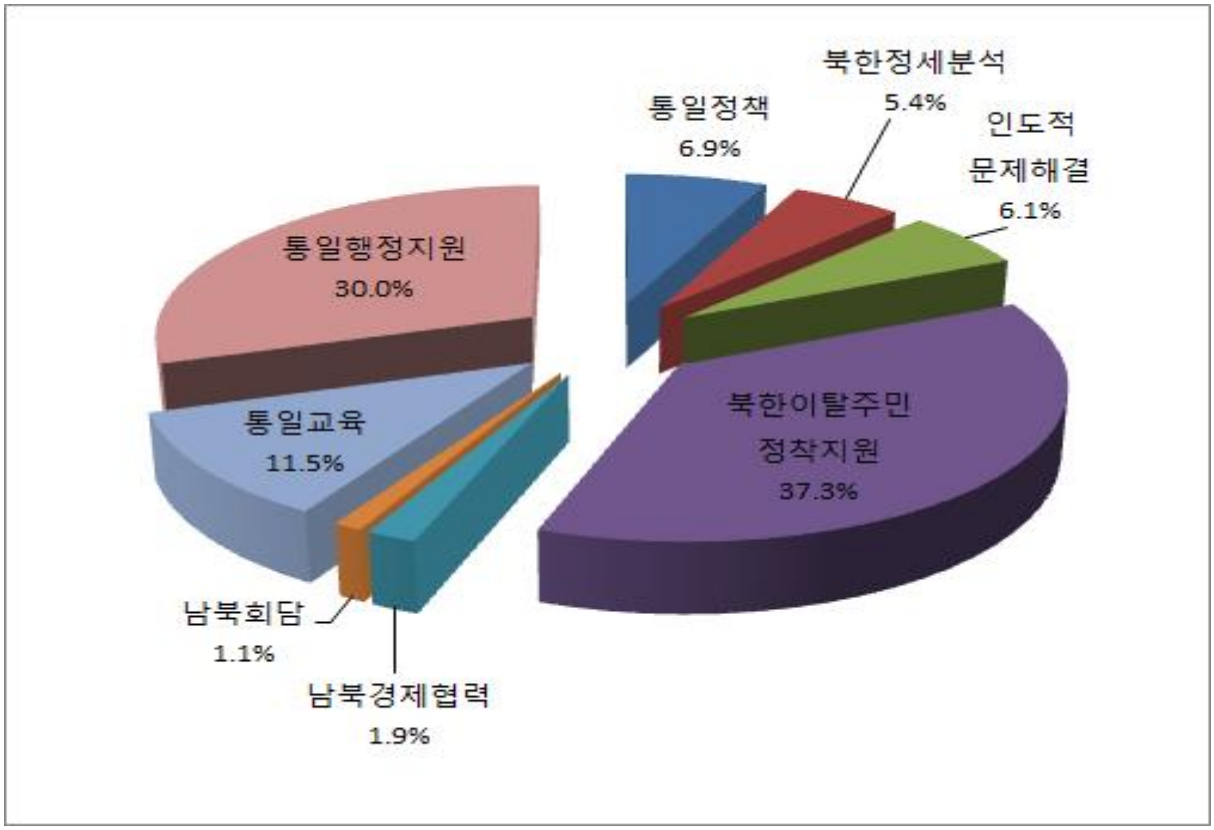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일반예산에서 각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약 3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통일행정지원 프로그램이 약 30.0%,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약 11.5%의 비중이며, 통일정책 프로그램이 약 6.9%,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약 6.1%,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이 약 5.4%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예산의 총 지출액에서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남북회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1~2%임.

<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 >



자료: 통일부

나. 이월·불용 내역

2024년도 이월액은 34억 4,800만원으로,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의 이월에 따른 것임.

< 2024년도 주요 이월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내 역	이월액
합 계		3,448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조달청 심의절차 등으로 시공업체 계약 지연	3,160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이월(건축·전기 계약기간 : ~25년)	143
총액인건비 대상·비대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하나원 기본경비	기본경비 이월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5% 범위 내 이월 가능)	145

자료: 통일부

2024년도 불용액은 200억 3,200만원으로, 주요 불용 내역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집행잔액 80억 5,300만원,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집행잔액 13억 7,400만원,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인한 출연금 4억 7,50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55억 2,500만원 등임.

< 2024년도 주요 불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불용액
합 계		20,032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주거지원금 등 각 분야 정착금 지급액 감소	8,053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하나원 교육생 구호교정비 등 관련 교육훈련비	1,374
북한인권재단 운영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인한 출연금 전액	475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으로 관련 인건비 등 집행잔액	453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 사업 집행잔액	9,677

자료: 통일부

다. 이용·이체·전용 내역

2024년도 이용은 11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체 내역은 없었으며, 전용액은 5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700만원(35.9%)이 감소하였음.

< 2024년도 이용·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감(A-B)	증감률
이용	합 계	1,167	125	1,042	833.6
	일반회계	1,167	125	1,042	833.6
전용	합 계	583	910	△327	△35.9
	일반회계	583	910	△327	△35.9

자료: 통일부

주요 전용 내역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 등 3억 500만원, 에듀테크(실감형 콘텐츠) 개발 용역 관련 일반연구비 1억원 등임.

< 2024년도 주요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전용액
합 계		583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일반용역비	305
통일교육 지원체계 및 구축	에듀테크(실감형 콘텐츠) 개발 용역 관련 일반연구비	100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2024북한인권보고서 발간비 관련 일반수용비	40
납북피해자 문제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전금	10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북한방송 위성 수신용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10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	사이버안전센터 CCTV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7
기본경비	기본경비 부내 재조정 등	111

자료: 통일부

라. 예비비 사용

2024년도 예비비 사용 실적은 없음.

4. 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주요 검토내용

가. 총괄검토

□ 통일부 예산 구조의 불안정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통일부의 2024년도 일반예산 중 북한인권/남북교류협력/통일정책추진 관련 예산은 각각 104억원(5.7%), 68억원(3.7%), 148억원(8.1%)인데, 최근 10년간 예산 규모 및 통일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음.

< 최근 10년간 북한인권/남북교류협력/통일정책추진 예산 변동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일반회계 예산액								비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계획금액 전체)[4]
	통일부	사업비 계	북한인권 관련[1]		남북교류협력 관련[2]		통일정책추진[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5년	229,983	182,467	-	-	6,510	3.6	12,572	6.9	1,234,777
'16년	243,072	193,700	-	-	9,956	5.5	11,193	6.1	1,255,042
'17년	244,762	193,122	13,451	7.4	9,470	5.2	10,769	5.9	958,754
'18년	227,498	172,937	13,826	7.6	5,167	2.8	6,744	3.7	959,266
'19년	219,875	160,640	3,066	1.7	7,268	4.0	7,550	4.1	1,103,583
'20년	218,569	156,423	2,135	1.2	6,527	3.6	8,938	4.9	1,202,991
'21년	229,355	165,477	2,040	1.1	7,997	4.4	13,287	7.3	1,243,070
'22년	230,881	167,407	1,996	1.1	8,468	4.6	14,950	8.2	1,269,046
'23년	223,340	160,675	4,081	2.2	7,633	4.2	15,774	8.6	1,210,118
'24년	222,027	157,874	10,422	5.7	6,754	3.7	14,788	8.1	872,235

주1) 북한인권 관련 : 북한인권 개선 기반구축(단위사업) 예산 합계임
- '16년 북한인권법 제정,'19년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국회 재단 이사 미추천)으로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 감액 편

성, '23년 신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예산 편성, '24년 신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편성
주2) 남북교류협력 관련 : 남북관계 기반구축(舊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프로그램)+개성공단지원(프로그램)+남북회담본부 운영(단위사업)+남북회담(프로그램) 예산으로 구성
- '18년 회담본부 리모델링 완료(△42억원), '19~'20년 판문점 자유의집 개보수 편성 및 완료, '19년 남북회담 추진 예산 증액, '22년 통일교육원의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 교류협력실로 이관, '23년 교류협력실 폐지로 DMZ평화의길 활성화(걷기)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재이관
주3) 통일정책 추진 : 통일정책(프로그램) 예산 합계
- '18년 통일준비위원회 폐지에 따른 사업 폐지, '21년 통일+센터 지역별 설치 예산 편성
주4)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기금 사업비 전체가 교류협력 지원 예산임. '16년 개성공단 중단으로 '17년 대출수요, 개성공단 지원 관련 경협기반(융자), 경제교류협력대출, 개성공단지원 예산 감액 편성됨.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남북관계 관리, 통일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등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국가과제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인 기관임.

그러나 통일부의 지난 10여 년간 예산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북한 인권, 남북교류협력, 정착지원 등 주요 사업 예산 항목의 증감 폭이 매우 크고,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연도별 예산 규모와 중점사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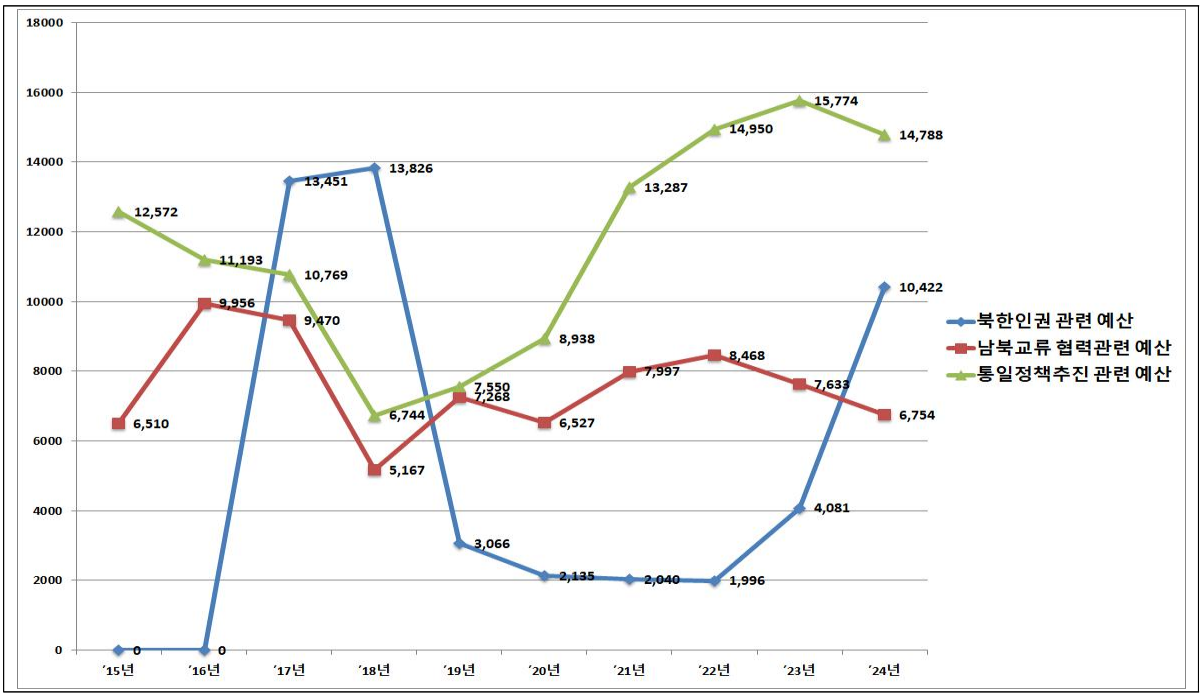
예를 들어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제도 정비와 기록센터 설립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시기가 있었으나, 그 직후 예산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실상 집행되지 않는 시기가 있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도 특정 시기에는 대규모 사업 계획이 편성되었으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기금의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남북협력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흐름을 보였음.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 우선순위 조정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사업 운영과 축적된 정책 효과의 축소를 초래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 기반 형성과 국민 신뢰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연결되

고 있다고 할 것임.

< 최근 10년간 북한인권/남북교류협력/통일정책추진 예산 변동추이 그래프 >

(단위 : 백만원)



이와 함께 부처 내부적으로도 잦은 조직 변동으로 인해 정책의 장기 목표 설정과 계획적 집행이 어려워지고, 예산의 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실·국·과 조직 직제 및 인원 변동 현황 >

(단위 : 명)

구분	본부			소속기관			계
	현황		소계	현황		소계	
2015	직속부서	45	238	남북회담본부(6과)	77	304	542
	기획조정실(4과)	41		통일교육원(6과)	65		
	통일정책실(7과)	6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3팀)	89		
	정세분석국(3과)	28		남북출입사무소(3과)	31		
	교류협력국(5과)	39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9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2과 1팀)	2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8		
				한반도통일미래센터(3과)	25		

구분	본부			소속기관			계
	현황		소계	현황		소계	
2016	직속부서	52	239	남북회담본부(6과)	75	312	551
	기획조정실(4과)	41		통일교육원(6과)	65		
	통일정책실(5과)	4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3팀)	89		
	정세분석국(3과)	28		남북출입사무소(3과)	30		
	교류협력국(4과)	31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7		
	공동체기반조성국(4과)	35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1과 1팀)	10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한반도통일미래센터(3과)	25		
2017	직속부서	52	245	남북회담본부(6과)	75	317	562
	기획조정실(4과)	41		통일교육원(6과)	66		
	통일정책실(5과)	3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3팀)	91		
	정세분석국(3과)	28		남북출입사무소(3과)	30		
	교류협력국(4과)	34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7		
	인도협력국(4과)	4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1과 1팀)	10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한반도통일미래센터(3과)	27		
2018	직속부서	52	251	남북회담본부(6과)	75	350	601
	기획조정실(4과)	43		통일교육원(6과)	67		
	통일정책실(5과)	3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3팀)	100		
	정세분석국(3과)	28		남북출입사무소(3과)	30		
	교류협력국(4과)	35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3부)	30		
	인도협력국(4과)	4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1과 1팀)	10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한반도통일미래센터(3과)	27		
2019	직속부서	52	253	남북회담본부(6과)	75	351	604
	기획조정실(4과)	44		통일교육원(6과)	67		
	통일정책실(5과)	3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3팀)	101		
	정세분석국(3과)	29		남북출입사무소(3과)	30		
	교류협력국(4과)	35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3부)	30		
	인도협력국(4과)	4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1과 1팀)	10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한반도통일미래센터(3과)	27		
2020	직속부서	52	272	남북회담본부(5과)	72	335	607
	기획조정실(4과 1팀)	47		통일교육원(6과)	68		
	통일정책실(5과)	4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2팀)	97		
	교류협력실(7과)	52		남북출입사무소(2과)	25		
	정세분석국(3과)	3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3부)	30		
	인도협력국(4과 1팀)	43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1과 1팀)	7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한반도통일미래센터(2과)	22		

구분	본부			소속기관			계
	현황		소계	현황		소계	
2021	직속부서	52	277	남북회담본부(5과)	72	336	613
	기획조정실(4과 1팀)	49		국립통일교육원(6과 1팀)	69		
	통일정책실(5과)	4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2팀)	97		
	교류협력실(7과)	52		남북출입사무소(2과)	25		
	정세분석국(3과)	3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3부)	30		
	인도협력국(4과 1팀)	4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1과 1팀)	7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한반도통일미래센터(2과)	22		
2022	직속부서	53	300	남북회담본부(5과)	71	316	616
	기획조정실(4과 1팀)	48		국립통일교육원(6과 1팀)	69		
	통일정책실(6과)	4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2팀)	95		
	통일미래전략기획단	9		남북출입사무소(2과)	25		
	교류협력실(6과)	49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2부)	20		
	정세분석국(3과 1팀)	35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인도협력국(4과 2팀)	47		한반도통일미래센터(2과)	22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2과)	10					
2023	직속부서	58	282	남북관계관리단(4과 1팀)	64	254	536
	기획조정실(4과)	45		국립통일교육원(6과 1팀 1센터)	85		
	통일정책실(5과 1팀)	4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2팀)	91		
	인권인도실(6과 1팀)	57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정보분석국(5과 2팀)	50					
	통일협력국(3과 1팀)	30					
2024	직속부서	58	280	남북관계관리단(4과 1팀)	63	251	531
	기획조정실(4과)	44		국립통일교육원(6과 1팀 1센터)	84		
	통일정책실(5과 1팀)	4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2팀)	90		
	인권인도실(6과 1팀)	56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정보분석국(5과 2팀)	50					
	통일협력국(3과 1팀)	30					

자료: 통일부

물론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외부 환경 및 대북정세에 따라 예산 배분이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중장기 예산 구조 또한 정권 변화에 따른 급격한 증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통일부는 향후 정책 방향 설정 시, 외교안보 등과 함께 중장기적 정책성과 축적과 국민적 공감 형성의 관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도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획기능 강화, 사업평가 기반 예산 운영, 국회와의 정책협의 활성화 등을 통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통일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1] 등에 따라 작성한 '2024회계연도 통일부 성과계획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임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2개)-프로그램 목표(8개)-성과지표(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음.

< 통일부 성과관리체계도 >

임 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비 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 표	■전략목표 Ⅰ. 남북간 대화와 교류,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하여 원칙과 실용성·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를 만들어간다 - 프로그램 목표 Ⅰ-1. 원칙에 입각한 남북대화 여건 조성 및 재개, 남북회담 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Ⅰ-2.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Ⅰ-3. 질서있는 남북 교류를 통해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Ⅰ-4. 질서있는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전략목표 Ⅱ. 통일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을 향한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1. 통일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2. 정세분석 역량 강화 및 북한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3. 2030 통일미래세대 대상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공감대를 확산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통하여 자립·자활 기반을 강화한다

1)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통일부가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2024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8개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를 6개(75%)임.

< 전략목표 달성 현황 >

전략목표	사업규모 (억 원)	성과지표 목표달성 실적	
Ⅰ. 남북간 대화와 교류,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하여 원칙과 실용성·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를 만들어간다.	413	지표 수	4
		달성/미달성	3/1
		달성률	75%
Ⅱ. 통일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을 향한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1,163	지표 수	4
		달성/미달성	3/1
		달성률	75%
총 계	1,576	지표 수	8
		달성/미달성	6/2
		달성률	75%

< 재원현황 및 비중 >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비중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전략목표Ⅰ : 남북간 대화와 교류,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하여 원칙과 실용성·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를 만들어간다.	12,145	260	8,847	413	26.2
전략목표Ⅱ : 통일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을 향한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1,433	1,207	1,316	1,163	73.8

전략목표Ⅰ은 남북간 대화와 교류,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하여 원칙과 실용성·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이고,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대화 추진 및 회담 대응 역량 강화, 북한 인권증진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및 원칙있는 인도적 지원, 북한의 변화 유도 및 동질성 회복, 질서있는 교류협력 기반 구축 마련에 중점을 두었음.

전략목표Ⅱ는 통일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을 향한 정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통일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국내외 공감대 형성, 정세분석 역량 강화 및 북한 정보제공 확대, 2030 대상 통일교육 활성화와 통일 공감대 확산,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이 중 통일부의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략목표Ⅰ의 성과지표 4개 중 3개는 목표를 달성(목표달성률 75.0%)하였으나, 1개(25%)는 그 목표를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북한인권에 대한 인지도 개선'은 예년에 비해 국내 인권단체 지원보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 증진 활동에 집중하여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그 사유를 들고 있음.

'북한인권에 대한 인지도 개선'은 2024년도에 신규로 도입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인데, 통일부가 그 사유로 들고 있는 것과 같이 국제사회 대상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들도 아울러 작용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그에 따라 대책을 조속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전략목표Ⅱ의 경우도 성과지표 4개 중 3개는 목표를 달성(목표달성률 75.0%)하였으나 1개(25%)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고객만족도' 지표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동 지표는 23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임.

동 프로그램 목표를 위한 세부사업들의 예산 집행률은 약 92%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불안한 국제정세, 북한의 도발 지속 등 대·내외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국민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업 수행을 통해 전략목표인 고객만족도 제고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외교부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외교부 성과계획서'에서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고, 전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를 임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6개)-프로그램목표(12개)-성과지표(1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외교부 성과관리체계도 >

임 무	외교부는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고, 전 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
비 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 표	■전략목표 Ⅰ.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Ⅰ-1.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전략목표 Ⅱ.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1. 아세안·동남아·유럽 및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2. 중남미·아중동지역 국가와의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외교다변화를 실현한다
	■전략목표 Ⅲ.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Ⅲ-1. UN 등 주요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무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Ⅲ-2. 원자력·비확산·군축 분야 국제협력강화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국제군축·비확산체제강화에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Ⅲ-3. SDG 달성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Ⅲ-4.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한다
	■전략목표 Ⅳ.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 활동을 지원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Ⅳ-1. 글로벌 중추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공공외교를 확대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Ⅳ-2.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영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전략목표 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Ⅴ-1. 다자경제외교 및 주요국과의 지역경제외교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Ⅴ-2. 기후·환경·에너지·과학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략목표 Ⅵ.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Ⅵ-1. 외교연구와 교육을 강화하여 역량있는 외교인재를 양성한다

통일부와 유사하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그 임무의 일부로 내세우면서도 그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표체계를 가진 외교부는 전체 15개 성과지표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통일부가 8개 성과지표 목표 중 6개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친 것은 향후 통일부가 그 성과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임.

<전략목표 달성 현황 >

전략목표	사업규모 (억 원)	성과지표 목표달성 실적	
Ⅰ.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131	지표 수	2
		달성/미달성	2/0
		달성률	100%
Ⅱ. Ⅱ.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한다	493	지표 수	2
		달성/미달성	2/0
		달성률	100%
Ⅲ.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20,104	지표 수	4
		달성/미달성	4/0
		달성률	100%
Ⅳ.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813	지표 수	2
		달성/미달성	2/0
		달성률	100%
3.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216	지표 수	3
		달성/미달성	3/0
		달성률	100%
Ⅵ.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111	지표 수	2
		달성/미달성	2/0
		달성률	100%
총 계	21,868	지표 수	15
		달성/미달성	15/0
		달성률	100%

□ 1억원 이상 보조단체의 회계검사 비용 기준 마련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제2항[2]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외부 회계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42조[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2024년도 통일부 소관의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회계검사 비용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단체와 자부담으로 처리한 단체가 혼재되어 있고, 단체별 회계검사 지출액과 보조금 교부액 대비 비율이 다소 편차가 있음.

< 통일부 소관, 1억원 이상 보조사업 및 회계검증 지출 금액 등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보조단체명	보조금 교부액	회계검증 지출 금액	비용지출 (-에서)
납북피해자문제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지원(2133-306)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185	0.9	보조금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	뉴코리아여성연합	140	2.1	보조금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6. 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세부사업명	보조단체명	보조금 교부액	회계검증 지출 금액	비용지출 (-에서)
일 공론화(2135-306)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북한인권정보센터	110	1.7	보조금
	(재)원음방송	102	1.5	자부담
	(사)북한인권	105	1.6	보조금
	(사)유엔인권정책센터	147	2.2	보조금
	(사)탈북자동지회	172	2.6	보조금
	(재)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	172	2.6	보조금
	(사)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172	2.6	보조금
	(사)북한개발연구소	150	2.3	보조금
	(사)북한인권시민연합	114	1.7	보조금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2137-301)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100	0.4	자부담
학교 통일교육 강화 (5031-308)	국민대학교	220	0.9	자부담
	이화여자대학교	185	0.7	자부담
	강릉원주대학교	160	1.1	자부담
	동아대학교	185	1	자부담
	한양대학교	180	1.7	자부담
	고려대학교(세종)	180	0.8	자부담
	원광대학교	180	1	자부담
	공주교육대학교	150	0.5	자부담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5031-309)	중앙통일교육센터	183	0.9	보조금
	서울통일교육센터	162	1	보조금
	경인통일교육센터	129	1	보조금
	경남통일교육센터	129	1	보조금
	경북통일교육센터	122	1.1	보조금
사회문화교류 지원 (2040-40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2,398	4	보조금
	남북역사학자협의회	1,088	7	보조금
개성공단 기반조성(3041-40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 (무상)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5,168	15	보조금

자료: 통일부

예를 들어 소규모 단체(탈북자동지회, 보조금 대비 약 1.5%)는 보조금 규모가 큰 단체(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보조금 대비 약 0.17%)에 비하여 회계검사 비용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큼.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2023. 6.)으로 인하여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이 기존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그 대상이 대폭 늘어났지만,

회계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 여부에 대한 사항은 2018년도부터 매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민간보조사업' 항목에서 '보조사업자가 자체 재원으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도 승인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여 왔다고 설명함.[4)]

하지만, 2024년도 연초 각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보조단체에 개별 통보하는 '보조금 지침'에서는 회계검사 비용 부담에 대해 명시하지 아니한 채 통보하였는 바, 이에 따라,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4년의 경우 단체별로 보조금 또는 자부담 처리 방식이 상이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임.

회계검사는 단순한 보고 절차가 아니라, 보조금 집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후 통제수단인 동시에 관련 법령에 명시된 공적 의무사항인

---

4)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pp. 100-107.
나. 보조사업자의 책무
(8)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제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이하 같음)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체재원으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만큼, 통일부는 1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단체별 규모·사업의 복잡성 등을 고려한 회계검사 비용과 그 부담 재원에 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부서 및 담당자가 이를 숙지하는 한편, 개별 보조단체에 통보하는 보조금 지침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나. 일반회계

(1) 과태료 세입(수납액 100만원)과 관련하여, 2024년도 과태료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한 바, 통일부는 집행 절차와 체납자 관리 강화를 통해 과태료 수납률을 제고하는 등 징수 관리의 실효성 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2) 통일정책추진의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9억 800만원 집행)은 예산 세목별 집행의 불균형과 반복적인 수의계약 집행,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의 집행 투명성·활용방안 부족 등이 확인되어 예산 편성의 정확성, 계약·집행 절차의 엄정성, 조사결과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9억 4,000만원 집행)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당초 사업계획과의 불일치, 세목 조정 등 운영·집행상의 미흡함이 드러나 향후 성과관리 체계와 집행기준의 투명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선 조치가 필요함.

(3) 국내통일기반조성(93억 8,4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내역사업별 예산의 초과집행·불용 및 계획과 실제 집행 간 불일치가 반복되어 예산 집행관리 내실화가 필요함.

(4) 국제통일기반조성의 내역사업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3억 7,300만원 집행)와 관련하여, 고위급 주요국 협력대화는 예산 대비

초과 집행된 반면, 실무급 협력대화가 불용되었는 바, 예산 집행의 탄력성, 협력국 다양성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 실효성 제고와 사업 환류체계 마련,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또한, 동 세부사업에서 단독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이 반복되어 실질적 경쟁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기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업 설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 구조의 경쟁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봄.

(5)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사업(18억 7,2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북한정보포털의 자료 등록과 업데이트가 수작업 위주로 이루어져 정보의 신속성·시의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력 보강 또는 AI 기반 자동화 및 데이터 정제 기능 고도화 등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을 통해 정보 제공의 범위와 정확성, 이용자 편의성 제고가 필요함.

(6) 전후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사업(1억 8,5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인 보조금 집행 변경과 내부 회원에 대한 사례비 지급,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생계지원비 집행 등이 나타나 사업계획 관리의 엄정성, 집행의 목적 적합성,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정비가 필요함.

(7)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의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2억 8,4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영상’ 북한인권보고서 제작과 잦은 세목 조정·전용 등으로 예산이 초과 집행되어 사업계획의 충실성 확보와 정규 예산 반영, 보고서 발간의 내실화 방안 검토가 필요함.

(8)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의 내역사업 ‘인도지원 정책개발’(1,900만원 집행)에서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달리 소송비용으로 집행되었는 바, 불가피한 돌발 상황에 대비한 예산 구분 및 엄정한 집행 관리로 사업 내실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내역사업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6,000만원 집행)에서도 집행 부진과 전용이 반복되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춘 현실적인 수요 예측과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내실화 및 집행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9)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12억 9,9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매년 세목조정과 특정 항목의 불용 등 예산 집행의 부적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전년도 실집행 실적을 반영한 적정예산 편성으로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강화가 필요함.

(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사업 중 정착금 지급 사업(85억 4,6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률이 2022년 99.5%, 2023년 83.6% 및 2024년 72.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금 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새로운 정책 대상자들에게 제도개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동 사업이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결산잉여금 규모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결산잉여금이 2022년 28억 600만원 대

비 약 50%(14억원)가 증가한 42억 600만원에 달하였는 바, 향후 동 재단에 대한 과도한 출연금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각 사업의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출연금 예산 편성에 임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12)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사업(5억 8,7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년도 개시 약 10일 만에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사업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연수 예산 4억 2,700만원을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였는 바, 향후 통일부는 신규 예산 편성시 새로운 정책대상 발굴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편성된 예산이 소극적·편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13)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46억 1,600만원)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예산 2,000만원을 2023년 및 2024년에 전액 집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한정된 국가 예산이 집행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14)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파견관 행정비용(1,900만원)이 사업 재개 없이 매년 반복 편성 및 불용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바, 통일부는 파견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예산을 기계적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인력 계

획 수립 등 실현 가능성에 기반한 예산 운영과 관리 강화가 필요함.

(15)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2억 9,400만원 집행)와 관련하여, 집행액 2억 9,400만원 중 7,800만원을 2023년에 사업이 종료된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주요사업비) 소요 경비로 집행하였는 바, 통일부는 기본경비의 성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주요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기본경비 등의 예산이 활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다. 남북협력기금

(1)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사업(35억 3,1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업무를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5]에 위탁하였으나, 권한의 위탁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의 근거 법률(모법)에 명시적인 위탁 근거를 두어야 하는 바,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사업(90억 9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지급한 자재·장비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여 통일부는 원고에게 원금의 1.3배에 달하는 지연손해금 51억 4,200만원 등 총 90억 900만원의 배상금을 집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통일부 및 예산당국의 소극행정으로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점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DMZ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4억 7,4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DMZ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소요경비가 4억 8,3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어도 2023년 10월 5일 이전에 인지하였음에도 국회의

5)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상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감액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소요액을 과다편성(7억 6,100만원)하여, 나머지 금액 2억 8,700만원이 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향후 통일부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판문점견학 통합운영 사업(11억 9,2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2023년 7월 미군 병사 무단월북 사건 직후 판문점 견학이 전면 중단 이후 그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최근 5년 내 최고 금액을 2024년 계획액으로 편성하여 대규모 불용액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는 바, 향후 통일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국회의 심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변화된 상황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소요경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Ⅱ.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별 검토

1. 세 입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14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6% 감소한 14억 9,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3억원이 수납(징수결정액 대비 87.0% 수납)되었으며, 1억 9,400만원은 미수납됨.

< 2024년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024	1,448	1,494	1,300	89.8	87.0	-	194
2023	2,006	2,185	1,937	96.5	88.6	-	249
증감율	△27.8	△31.6	△32.9	-	-	-	△22.1

자료: 통일부

수납액 세부내역은 건물대여료 등 재산수입 4억 3,1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경상이전수입 8억 3,000만원, 오두산통일전망대 입장료수입 등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3,900만원임. 오두산통일전망대는 2024년부터 입장료가 무료화되었으나, 2023.12월 입장료 3,000만원이 2024.1월에 세입처리되었음.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체납자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 지자체 국고보조금 반납절차 지연 등 1억 9,400만원임.

< 2024년도 세입 미수납액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명		내 용	미수납액
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보조금 등 발생이자	0.2
	과태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9.7
	가산금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0.9
	기타경상이전수입	소송비용 및 지자체 국고보조금 반납절차 지연	183
합 계			194

자료: 통일부

□ 수납률이 저조한 과태료의 수납률 제고 필요

통일부의 2024년도 과태료(56-563) 세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1,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음.

< 최근 4년간 과태료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21	10	10	-	10	46	38	380.0	82.6	8	-
'22	10	10	-	10	8	6	60.0	75.0	2	-
'23	10	10	-	10	10	4	40.0	40.0	6	-
'24	10	10	-	10	11	1	10.0	9.1	10	-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6]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2024년도의 과태료 부과 내역은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에 대한 200만원 등 총 11건 1,120만원이며, 이 가운데 9건 970만원이 미수납된 것임.

---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2024년 과태로 부과 내역 >

구 분	납부자(단체)	금 액	부과사유	미수납사유
과태료	윤○○	5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
	양○○	10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
	진○○	5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과태료 재판 진행중
	손○○	20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과태료 재판 진행중
	권○○	10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과태료 재판 진행중
	김○○	10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과태료 재판 진행중
	이○○	10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과태료 재판 진행중
	한○○	10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과태료 재판 진행중
	조○○	10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과태료 재판 진행중
	이○○	200만원	재외국민 방북신고의무 위반	단순 미납
	동○○○	2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단순 미납

자료: 통일부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서,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 확립과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수단인바, 이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저조할 경우 제재의 실효성 저하 및 행정질서 이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통일부는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나,

징수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납이 이행되지 않고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 상황은 징수 관리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부서의 수납 독려 및 체납자 관리, 필요시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실질적인 후속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통일부는 과태료 징수에 있어 징수결정 이후 집행 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추징 노력을 통해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통일정책(1000 프로그램)

가. 개 요

통일정책 프로그램은 통일 및 통합 대비 정책 개발·연구, 북핵·평화구축 정책 수립 등 통일대비 중장기 통일정책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국민·국제사회 대상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반사업 추진 등 국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화통일기반조성 1개 단위사업에 3개 세부사업(통일정책추진, 국내통일기반조성, 국제통일기반조성)으로 이루어져 있음.

< 2023년도 통일정책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15,537	14,788	14,788	14,789	13,640	13,574
□평화통일기반조성(1031단위사업)	15,537	14,788	14,788	14,789	13,640	13,574
○ 통일정책추진(300)	3,090	2,049	2,049	2,049	1,848	1,756
○ 국내통일기반조성(301)	9,726	10,144	10,144	10,143	9,384	8,741
○ 국제통일기반조성(302)	2,721	2,595	2,595	2,597	2,408	3,077

자료: 통일부

평화통일기반조성 단위사업에서 각 세부사업이 차지하는 결산 지출액 비중을 보면,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이 68.8%,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이 17.7%, 통일정책추진 사업이 12.9%를 차지하고 있음.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통일정책추진(1031-300)

통일정책추진 사업은 남북 통합을 위한 중장기적 통일정책을 마련하고, 통합과정에 필요한 법·제도 준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0억 4,900만원 중 18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통일정책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49	2,049	-	±75	2,049	1,848	201	90.1	90.1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통일 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사업에 9억 800만원,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에 9억 4,0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통일정책추진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통일정책추진	2,049	2,049	±75	2,049	1,848	201
· 통일 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999	999	±27	999	908	91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50	1,050	±48	1,050	940	110

자료: 통일부

(1)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 세목별 초과집행·불용 등 예산 집행의 불균형 해소 필요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은 통일 이후 통합까지 대비하기 위한 제도·법제 마련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여론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4년도 집행률은 90.9%로 양호한 편이나, 세부 항목별로 초과집행 또는 불용이 반복되어 편성의 정확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미흡한 측면이 확인됨.

<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실적 >

(단위: 백만원, %)

사업내용		예산계획	집행실적	집행률
1. 대북·통일전략 기획 및 법제 체계화 추진		**425**	**389**	**91.5**
	남북 통일·통합 정책·법제개발 및 해외사례 연구용역	259	221	85.3
	통일·통합 관련 연구 네트워크 구축	93	109	117.2
	심사·평가비 및 회의 준비비 등	33	39	118.2
	통일연구DB 유지보수 및 전산장비 구입	40	20	50.0
2. 통일·통합 준비 및 공론화		**164**	**164**	**100.0**
	전문가 네트워크	32	30	93.8
	통일·통합 준비 확산	130	133	102.3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의 등	2	1	50.0
3.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 수립		**80**	**77**	**96.3**
	전문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12	18	150.0
	북핵·평화체제 조성 관련 연구용역	30	50	166.7
	평화·공감대 확산	38	9	23.7
4. 남북관계발전 정책포럼		**30**	**12**	**40.0**
5.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300**	**266**	**88.7**
계		**999**	**908**	**90.9**

자료: 통일부

세부적으로 ‘통일·통합 관련 연구 네트워크 구축’(집행률 117.2%), ‘심사·평가비 및 회의 준비비’(118.2%) 등은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집행된 반면, ‘통일연구DB 유지보수 및 전산장비 구입’(50.0%), ‘남북관계발전 정책포럼’(40.0%) 등은 집행이 저조한 바, 계획과 실집행 간 괴리가 발생하였음.[7)]

주요 세목별로도 여비 및 자산취득비는 전액 또는 대부분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세목 간 예산 운용이 계획과 달리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의 주요 세목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액 대비)
	계획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일반수용비(210-01)	**132**	21	153	**153**	115.9
임차료(210-07)	**35**	6	41	**40**	114.3
일반용역비(210-14)	**159**	△26	133	**133**	83.6
국내여비(220-01)	**4**	-	4	**2**	50.0
국외여비(220-02)	**17**	-	17	**1**	5.9
사업추진비(240-01)	**22**	-	22	**22**	100.0
자산취득비(430-01)	**20**	-	20	**0**	0.0

자료: 통일부

일반용역비(1억 5,900만원) 중 2,600만원은 일반수용비 등으로 세목조정 후 집행되었고, 국외여비의 경우 당초 ‘통일·통합 관련 연구 네트워크 구축’

7) 통일부는 중장기 통일·대북정책 수립, 미국 대선 및 미중 갈등 등 한반도 정세 변화로 인한 자문이 증가하였고, 글로벌 통일인식조사(2024년 신규사업) 관련 자문 필요, 학술회의 다수 개최 등으로 인해 관련 사업비가 초과 집행된 반면, ‘남북관계발전 정책포럼’의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지원·보강하고 남북관계 발전 사항에 필요한 자문을 수행하고자 편성되었는데, 자문 수요 감소로 인한 사례비 집행이 저조하였고, 회의개최 장소를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등 부내 시설 이용으로 임차료 절감 등으로 예산대비 집행액이 저조하였다는 설명임.

의 해외사례 조사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출장 취소[8]로 인해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불용되었으며,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도 '통일연구DB의 기능 개선 및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다가 물품 구매 수요가 없어 전액 불용됨.

이러한 집행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소요 예측이 면밀하지 못했고, 연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세목 조정이 이루어져 집행관리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을 시사함.

따라서 통일부는 불용되거나 초과 집행되는 세목(자산취득비, 국외여비 등)은 면밀히 분석하여 실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용역비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세부 계약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요구 및 편성의 근거자료를 관리하여 편성과 집행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당초 통일연구원 및 서울대학교와의 공동 일정(2024. 4.20.-4.28. 이탈리아)으로 계획되었으나, 동 기간 중 주요 현안 업무(글로벌 통일인식조사,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수립)와 일정이 중첩됨에 따라 일정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장을 취소하고, 이후 다시 해외사례 조사를 시도하지 않은 바, 그 긴요성이 떨어지는 국외출장을 편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반복적인 수의계약 집행 지양 및 수의계약 요건 사전점검 필요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에 편성된 일반용역비(210-14) 1억 5,900만원 중 83.6%에 해당하는 1억 3,300만원이 총 6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됨.

<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의 일반용역비(210-14)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계약명	발주금액	계약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 유형	수의계약 사유
통일부 장관-4대 연구원장 특별좌담회 행사 대행	22	22	스피언스	'24.2.~ '24.2.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제5호가목2)
통일부 장관-4대 연구원장 무대 환경 조성	22	22	린커	'24.2.~ '24.2.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제5호가목2)
'새로운 통일담론'의견수렴을 위한 청년캠프 행사 대행	49	49	컨빈인 코리아	'24.5.~ '24.7.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제5호가목 5)가)
제77회 세계여론조사학회 연례 국제학술회의 세션 운영	10	10	성균관 대학교	'24.7.~ '24.8.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제5호가목2)
한국정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세션 운영	10	10	한국 정치학회	'24.8.~ '24.9.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제5호가목2)
통일부-대한변협 공동 학술세미나 관리,운영	20	20	국민 대학교	'24.11.~ '24.12.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제5호가목2)
계	**133**	**133**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9] 등을 근거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이

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은 집행상의 편의를 우선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용역 규모는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900만원이었으며, 특히 연초에 실시한 <통일부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이하 '신년 좌담회')의 경우, 하나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무대환경 조성'과 '행사대행' 용역을 각각 2,200만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음.

신년 좌담회는 2024년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계획에 없던 사업으로, 2024년 1월 중순 사업추진이 보고된 후 약 보름만인 2월 5일에 실시되었는데, 통일부는 2023년 12월말 북한이 기존의 남북 합의를 파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것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새로운 통일담론' 마련 등을 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시급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했으며, 용역의 내용과 성격이 상이하여 각각 분할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그러나, 단일 목적의 행사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분할계약 금지' 원칙에 따라 일괄계약 및 일괄집행이 타당하고,[10] 인위적 분리계약은 경쟁입찰의 회피이자 수의계약 남용으로 보여질 수 있음.

---

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및 각종 집행기준 등에서는 "동일 또는 밀접 일체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일괄 발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신년 좌담회'처럼 하나의 행사 수행을 위해 무대조성과 운영 전반(행사진행/지원/프로그램 등)이 한 세트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계약 형식보다 실제 실체(행사 전체의 단일 목적)가 더 우선한다고 봄.

또한 일반용역비(4,400만원)와 함께 장소 임차료(2,200만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된 바, 이와 같은 수의계약 방식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긴급성' 요건 역시 「국가계약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불가피·예측불가한 긴급사유, 위기발생 등)에 부합해야 하며, 단순히 행사 일정이 촉박하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통일부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 >

1. 행사 개요

o (일시·장소) '24. 2. 5.(월),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6층)

o (행사명) 통일부장관 - 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o (주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2024년 정세환경 평가 및 전략 구상

o (진행 순서) 좌담 및 질의응답 * 영어 동시통역 지원

14:30~15:00	**사전 환담**	
15:00~15:10	**개회식**	* 사회 : 이영아 아나운서(UniTV)
	개회선언,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장관 모두말씀	
15:10~16:30	**특별 좌담회**	
15:10~15:50	[1세션] 2024년 정세환경 평가	
15:50~16:30	[2세션] 2024년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16:30~17:00	**국민과의 대화**	* 사전 질문 취합

2. 홍보 계획

o (對언론) △보도자료 배포(1.29.) △현장 취재 지원

o (온라인) △통일부·4대 연구원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당일 유튜브 생중계 △촬영분 편집 및 추후 활용

o (행사 초청) 총 100석 규모

- △내·외신 기자 △주한대사관 관계자 △유관단체(평통, 민통, 자총 등) △통일부 관련 청년세대(20·30자문단, 대학생기자단 등)
- URL을 통한 사전 참석자 등록 및 질문 접수 실시

자료: 통일부

< '통일부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비 목	사업 내용	집행액
일반수용비(210-01)	사례비(4대 연구원장)	2
임차료(210-07)	포시즌스호텔	22
일반용역비(210-14)	린커(무대환경 조성 용역)	22
	스피언스(행사대행 용역)	22
합 계		68

자료: 통일부

따라서 신년 좌담회의 경우 단순히 '긴급성'이 요구되어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기보다는, 계약금액 분할을 통한 입찰절차 회피 등 관련 규정과 계약 투명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처리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향후 통일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도 법령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의계약 사유별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 등 사업 실무자가 긴급성·소액계약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실효성 확보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내내역사업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는 세계 주요 8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 북핵, 북한인권 등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파악하고 통일 공공외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2024년 신규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의 일반연구비 3억원 중 2억 6,600만원이 집행됨(집행률 88.7%).[11]

<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사업 개요 >

o 조사 목적: 세계 시민의 한반도 통일 인식 및 지지 여론 파악
o 조사 대상: 8개국 18세 이상 성인 9,223명(△미국 2,000명 △미국 외 각 1,000명 기준) * 미국·영국·호주·일본·독일·프랑스·베트남·폴란드
o 조사 일시 및 횟수: 2024.9.13.~10.4. 국가별 1회
o 조사 방식: 국가별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온라인 웹 조사
o 조사 주관: 통일연구원
o 조사 수행: ㈜한국갤럽조사연구소
o 표본추출 방식: 각 국가별로 해당 국가의 18세 이상 인구 모집단 정보를 반영, 성·연령·권역별 할당 추출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파악하고 통일공공외교의 글로벌화를 위한 첫 시도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함.

11) 8개국 총 9,223명의 응답자 중 한국을 방문한 비율은 15.4%로 대다수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한국의 위치를 인지한 비율(73.2%)로 미루어볼 때, 한국의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한 기본적 상식을 가진 응답자로 파악됨. 동 조사결과의 요약은 붙임 [참고자료] 참조.

동 사업은 총 사업비를 일반연구비로 계약하여 집행한 바, 인건비, 조사비, 회의비, 자문사례비, 임차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각 항목별 산출 근거와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의 투명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전체 예산의 65.8%에 해당하는 조사비(1억 7,500만원)는 국가별 응답자 1인당 단가, 문항별 비용 등 산출근거가 불명확하여 그 적정성 검토가 곤란하고, 책임연구원 등 인건비(2,400만원), 수용비(1,700만원) 등과 한국갤럽의 조사수행비, 기타 비용 간의 관계 및 구조도 모호함.

<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 분	산출내역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인건비	책임연구원 등	24	책임연구원 등 인건비
	경비	수용비	17	조사수행비(한국갤럽)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결과발표회 개최 (사례비, 통역, 임차료, 다과비 등) 보고서 발간 및 인쇄비 출장비 자문사례비 등
		사업인건비	5	
		임차료	5	
		여비	4	
		자문사례비 등	15	
		회의비	9	
		조사비	175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11	(인건비+경비)의 6% 이내
합 계			**266**	

자료: 통일부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조사비에 국가별 조사 단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온라인 웹조사의 특성상 국가별 조사 인프라 및 조사 환경 등이 상이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한편, 베트남의 경우 고학력 응답자가 과대 표집되는 등 표본 설계가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 통일부는 조사과정에서 국가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성별·연령별·권역별 비례 표본 추출을 하였지만, 베트남의 경우 온라인 접근성에 학력 격차가 존재하여 고학력(고졸 및 대졸) 비율이 모집단에 비해 과표집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설명함.

아울러, 조사 결과는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의 글로벌화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나, 향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단순한 국제 여론조사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계획과 활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조사비, 인건비 등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표본 설계와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결과의 정책 반영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국회 예산심의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

[참고자료] 2024글로벌 통일인식조사

< 국가별 조사인원, 문항 내용 등 >

구분	표본		국가별 문항	공통 문항(4)
	배분	완료주)		
미국	2,000	2,024	미북대화 및 북한의 공격 가능성	- 통일에 대한 국제여론(남북한 통일의 당위성, 가능성, 바탕이 되어야 할 체제 등) - 북핵문제 및 비핵화 이슈(북한의 핵개발, 비핵화 실현가능성, 핵개발의 위협인식 등) - 북한인권 문제 및 탈북민 사안(인권 침해상황 및 탈북민에 대한 인식 등) - 유관국 인식 및 국가이미지(남북한에 대한 인식 등)
일본	1,000	1,087	북일 관계 현안	
호주	1,000	1,002	한국과의 관계, 한국의 다자안보협력체 참여	
영국	1,000	1,019	대북 제재, 북아일랜드 분쟁의 시사점	
프랑스	1,000	1,015	한-나토 협력, 남북단일팀에 대한 의견	
독일	1,000	1,030	독일 통일요인 및 통일 이후 사회발전정도, 통일 경험에 대한 의견	
폴란드	1,000	1,025	체제전환 경험,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의견	
베트남	1,000	1,021	한국에 대한 지식, 한-베트남·아세안 협력에 대한 의견	
계	9,000	9,223		

주: 조사결과 품질 제고를 위해 표본을 초과 확보하고 오류 및 불완전 데이터를 정제한 후 성/연령/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표본수에 맞춤.
자료: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약

< 국가별 주요 결과 요약 >

국가	통일 지지율	통일가능성 긍정	북핵위협 인식	북핵포기 필요성	북한인권 인식	한국이미지 긍정	북한이탈주민 인식
베트남	65.3% (최고)	65.3% (최고)	59.5%	59.9% (최저)	37.9%	65.2% (최고)	78.4% (최고)
독일	57.2%	44.5%	51.2%	60.9%	25.9%	37.7%	49.1%
프랑스	56.0%	44.5%	59.2%	62.9%	54.2%	52.0%	53.9%
폴란드	52.6%	40.3%	61.9%	69.2%	46.1%	42.6%	64.7%
영국	48.6%	33.6%	60.8%	70.9%	29.3%	57.4%	51.2%
호주	48.5%	33.6%	63.2%	71.7%	26.1%	58.7%	50.3%
미국	47.1%	39.4%	69.7%	66.9%	28.0%	45.0%	44.7% (최저)
일본	27.4% (최저)	13.3% (최저)	71.7%	74.6% (최고)	13.7%	16.4% (최저)	55.8%

자료: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약

< 국가별 특징 및 시사점 >

조사국	국가별 특징	시사점
베트남	통일 지지율·가능성 모두 1위, 북한이탈주민 인식도 매우 높음, 자유민주주의 체제 선호는 가장 낮음.	- 남북한 통일의 글로벌 지지율은 약 50%. - 통일 장애요인: 사회·문화적 이질감(39.5%), 북한 핵개발(33.8%). - 통일의 핵심 가치: 자유·인권 증진(39.1%), 안보위협 해소(21.7%), 세계평화 기여(14.6%). - 통일 필요요소: 북한 핵개발 포기(33.4%), 남북 군사적 대치 완화(23.4%), 자유주의 가치 확산(17.5%). -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57%가 부정적, 북핵 대응방안으로 외교적 협상(39.0%)과 경제제재(26.3%) 선호. - 한국의 핵무기 개발·도입에 대해 과반(50.2%)이 반대. - 북한인권 인식은 정부 비판 불허(74.8%), 언론 자유 침해(73.5%)에 대해 높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베트남(78.4%), 폴란드(64.7%) 높고, 미국(44.7%), 독일(49.1%) 상대적 낮음. -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베트남, 호주, 영국 순 -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본, 영국, 호주 순
독일	분단 경험국, 통일에 대한 공감대 높음, 세대·지역별 인식 차 존재.	
프랑스	통일 지지율·가능성, 북핵 위협 인식 모두 높음, 인권 인식도 높음.	
폴란드	체제전환 경험국, 북한 및 통일 문제 이해도 높음, 북한이탈주민 인식 높음.	
영국·호주	통일 지지율 50% 내외, 북핵 위협 인식 높음, 인권 인식은 낮음.	
미국	통일 지지율 47.1%, 북핵 위협 인식 매우 높음, 북한이탈주민 인식은 최저.	
일본	통일 지지율 27.4%로 최저, 북핵 위협·비핵화 필요성 인식 가장 높음,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81%.	

자료: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약

(2)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통일 미래전략의 구상 및 수립,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직속의 민간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2024년도에는 10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9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집행률 89.5%), 1억 1,000만원이 불용됨.

동 사업은 ①위원회 및 분야별 전략그룹 운영, ②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및 1.5트랙(민관 협력) 운영, ③정책연구용역 과제, ④정책 공감대 형성, ⑤운영비 등 5개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고, 세부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4년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 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위원회 및 분야별 전략그룹 운영	264	258	97.7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및 1.5트랙 운영	451	366	81.2
정책연구용역 과제 위촉	150	147	98.0
정책 공감대 형성	150	147	98.0
운영비	35	22	62.9
계	**1,050**	**940**	**89.5**

자료: 통일부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의 실질적 성과 제고 필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전체회의 2회(3.15, 9.6.), 위원장단 회의 5회(2.13., 3.29., 4.29., 6.10., 9.13.), 특별위원회 회의 3회(4.24, 5.2., 5.20.), 각 분과위원회별 3회(4.3~4.12., 7.23.~8.29., 10.10~10.23.) 등을 개최하고, 회의비로 총 6,459만원을 집행함.

2024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통일담론'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이후에는 국내외 공론화를 위해 위원회가 개최한 회의 및 예산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8.15 통일독트린' 수립 이전,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일자	참석위원	회의 내용	집행액
1차 전체회의		**3.15.**	**위원장 등 35명**	**· 새로운 통일담론 관련 논의 · 2기 위원회 운영방향 등**	**14,093**
위원장단 회의		3.29.	위원장 등 6명	·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방향 등	2,050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정치·군사	4.3.	분과위원장 등 8명	· 새로운 통일담론 위원회 자문 등	2,100
	경제	4.12.	분과위원장 등 5명		1,526
	사회·문화	4.9.	분과위원장 등 8명		2,470
	인권·인도	4.12.	분과위원장 등 7명		2,465
	국제협력	4.12.	분과위원장 등 6명		1,570
특별위원회 회의		4.24.	특위위원장 등 11명	·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3,520
특별위원회 회의		5.2.	특위위원장 등 11명	·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1,650
특별위원회 회의		5.20.	특위위원장 등 8명	·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2,500
위원장단-특위 합동회의		5.29.	위원장 등 11명	·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2,931
위원장단 회의		6.10.	위원장 등 6명	·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1,695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정치·군사	7.29.	분과위원장 등 4명	· 향후 통일담론 공론화 방향	1,605
	경제	8.8.	분과위원장 등 8명		2,155
	사회·문화	7.25.	분과위원장 등 6명		2,615
	국제협력	7.23.	분과위원장 등 7명		1,158
				계	**46,103**

자료: 통일부

< '8.15 통일독트린' 수립 이후,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일자	참석위원	회의 내용	집행액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인권·인도	8.29.	분과위원장 등 7명	· 향후 통일담론 공론화 방향	1,620
2차 전체회의		**9.6.**	**위원장 등 28명**	**·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 위원회 운영방향 등**	**6,220**
위원장단 회의		9.13.	위원장 등 5명	·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및 공론화 방향	1,319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정치·군사	10.16.	분과위원장 등 7명	· 통일 독트린 공론화 및 후속조치 추진방향	2,277
	경제	10.10.	분과위원장 등 6명		1,986
	사회·문화	10.16.	분과위원장 등 7명		2,277
	인권·인도	10.23.	분과위원장 등 6명		1,651
	국제협력	10.21.	분과위원장 등 5명		1,188
				계	**18,488**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위한 의견수렴 및 <8.15 통일 독트린> 수립[12] 이후 활동에 총 6억 8,100만원(회의비 6,459만원 포함)을 집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을 위하여 장관 주재 '수요포럼', '통일이 있는 저녁' 등의 간담회를 포함하여 3억 2,800만원,[13] <8.15 통일 독트린> 수립 이후에는 국내외 공론화 및 후속조치를 위하여 지역순회 공론화 5,000만원, 학술세미나 8,600만원, 국외 출장 1억 9,800만원 등 3억 5,300만원을 집행함.

12) 2024년 윤 前 대통령은 '3.1절 기념사' 발표 직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됐다면서 '새로운 통일관'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통일부장관도 대통령 업무보고(2024. 3. 8.)에서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음.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 시기 이후 30년째를 맞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대체에 방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견해를 수렴하는 각종 행사를 추진하였는 바, 통일부 장관은 각계각층과의 만남에서 새 담론의 키워드로 '자유'와 '인권'을 제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13) 붙임 참고자료 <2024년도 '8.15 통일독트린' 수립 이전, 의견수렴 및 공론화 추진을 위한 집행> 참조.

이와 같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음.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8.15 통일독트린> 내 정책 항목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증빙 등과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즉, 회의 개최 실적만으로는 질적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공론화 활동(지역순회 공론화 용역, 학술세미나, 국외출장 등) 추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국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이 부족함.

따라서 정책 완성도 제고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를 갖추고, 행사 참여자 수, 언론보도 분석, 정책 전후의 여론 변화 등을 종합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향후 실질적인 통일정책 개발 및 공론화의 중심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첫째, 위원회의 활동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지표(예: 정책 반영 실적률, 국민 공감도, 국제지지 확보 정도 등)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성과 평가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둘째, 각 분야별 전문가 논의가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오프라인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 활용, 주요 오피니언 리더와의 전략적 협력 등 공론화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항목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그 필요성과 규모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 관리의 엄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자문기구 예산의 집행 적정성 제고 필요

2024년 상반기에 통일부는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을 위하여 '수요포럼'과 '통일이 있는 저녁' 등 다양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추진하였는데,

붙임 <참고자료: 2024년도 '8.15 통일독트린' 수립 이전, 의견수렴 및 공론화 추진을 위한 집행>과 같이, 제5차 통일이 있는 저녁(5.2) 및 별도 용역사업인 '청년들이 그리는 통일미래 캠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동 내역사업 예산에서 집행됨.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수요포럼'은 정책자문위원, 정치외교 전문가, 북한인권단체, 언론사 정치부장, 경제·법조·교육계 주요 인사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수요일[부처님오신날(5월 15일)과 장관 외부행사(5월 22일, 6월 19일) 제외], 총 14차례에 걸쳐 주로 특정 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일부 회차는 조찬 비용 외에 호텔 임차료, 전문가 사례비가 포함되어 회당 집행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기도 하였음.

< '8.15 통일 독트린' 수립을 위한 '수요포럼' 계획(안) >

날짜	대상	날짜	대상	날짜	대상
3.13.	정책자문위원(시니어급)	4.3.	언론사 정치부장	4.24.	통일 원로
3.20.	탈북민	4.11.	4대 연구원장	5.1.	국회 외통위 여야 간사단
3.27.	북한인권 단체	4.17.	청년	5.8.	…

자료: 통일부

< '8.15 통일 독트린' 수립을 위한 '수요포럼'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차수	날짜	외부 주요 참석자	장소	집행 금액
제1차	3.13. (수)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김○호(정책자문위원장, 국방대 부총장), 김○수(서강대 명예교수), 서○구(前 대통령실 비서관), 이○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훈(前 통일연구원장)	코리아나 호텔	2,194[주1)]
제2차	3.20. (수)	▪ 정치·외교분야 주요 학회장 : 조○순(한국정치학회장), 마○윤(한국국제정치학회장), 김○호(한국정치사상학회장), 박○호(한국정당학회장), 조○현(차기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	달개비	1,330[주2)]
제3차	3.27. (수)	▪ 외교안보 주요 원로 : 김○우((사)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하○선(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최○석(이화여대 명예교수), 유○열(고려대 명예교수), 김○한(前 국가안보실장)	코리아나 호텔	2,845
제4차	4.3. (수)	▪ 전직 언론인 : 김○기(조선일보), 박○균(동아일보), 박○희(중앙일보), 이○희(서울신문), 오○석(연합뉴스)	코리아나 호텔	2,127
제5차	4.12. (금)	▪ 북한학 전문가 : 박○철(대전대 객원교수), 고○환(동국대 명예교수), 동○승(굿파머스 사무총장), 이○현(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현(북한연구학회 회장)	코리아나 호텔	2,280
제6차	4.17. (수)	▪ 외교안보 전문가 : 이○조(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한○섭(국방대 명예교수), 이○종(성균관대 특임교수), 강○영(한국외대 교수), 안○현(서울시립대 교수)	코리아나 호텔	2,104
제7차	4.24. (수)	▪ 외교안보 전문가 : 남○욱(고려대 교수), 이○현(세종연구소 소장), 전○성(서울대 교수), 박○휘(이화여대 교수), 성○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코리아나 호텔	2,280
제8차	5.1. (수)	▪ 정치 원로 : 유○수(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정○철(대한민국헌정회 회장), 황○여(법무법인 황앤씨 대표변호사), 이○제(이○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코리아나 호텔	1,849
제9차	5.8. (수)	▪ 경제6단체 부회장단 : 김○범(한국경제인협회), 박○준(대한상공회의소), 이○호(한국무역협회), 정○모(중소기업중앙회), 이○근(한국경영자총협회), 이○준(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리아나 호텔	1,480
제10차	5.16. (목)	▪ 법조계 인사 : 문○남(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안○호(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김○훈(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지○우(한국헌법학회 회장), 송○호(한동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코리아나 호텔	2,104
제11차	5.29. (수)	▪ 교육계 단체장 등 : 여○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직무대행), 오○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 이○원(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이○봉(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권○희(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코리아나 호텔	1,480

차수	날짜	외부 주요 참석자	장소	집행 금액
제12차	6.5. (수)	▪ 인문·사회 전문가 : 윤○중(한신대 명예교수), 함○희(이화여대 교수), 이○우(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김○섭(연세대 교수), 박○희(이화여대 교수)	코리아나 호텔	2,131
제13차	6.12. (수)	▪ 통일·북한 관련 대학 총장·부총장 : 정○렬(국민대), 김○미(이화여대), 이○규(고려대), 정○철(한양대), 윤○웅(동국대), 양○진(북대)	코리아나 호텔	1,480
제14차	6.26. (수)	▪ 외교안보 전문가 : 김○현(중앙대 명예교수), 진○수(세종硏 일본연구센터장), 이○남(고려대 교수), 신○식(서울대 교수), 신○철(前 국방부 차관)	코리아나 호텔	2,131
	계			27,815 (평균 1,986.8)

주 1) 임차료 70만원, 간담회 49만 4천원, **사례비 100만원**
주 2) 간담회 33만원, **사례비 100만원**
자료: 통일부

또한, 통일부 장관 주재 만찬 모임 “통일이 있는 저녁”은 4월부터 7월까지 당초 12회를 계획하였다가 제13차까지 진행되어 총 885만원(평균 68만원)이 집행됨.

< ‘통일이 있는 저녁’ 계획(안) >

날짜	대상	날짜	대상	날짜	대상
4.9.	북한인권 전문가	5.2	남북관계발전委 위원	6.10.	과학기술/IT 전문가
4.16.	통일정책/남북대화 전문가	5.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전문가	6.13.	문화/예술 전문가
4.25.	인도지원/보건의료 전문가	5.16.	북한경제/교류협력 전문가	6.20.	청년/신진학자
4.29.	통일미래기획委 위원장단	5.20.	유관기관/단체 인사	7.4.	여성전문가

자료: 통일부

< ‘8.15 통일 독트린’ 수립을 위한 ‘통일이 있는 저녁’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차수	날짜	외부 주요 참석자	장소	집행액
제1차	4.9. (화)	▪ 북한인권 전문가 : 김○주(탈북민 작가), 김○훈((사)북한인권 이사장), 손○주(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순(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제○호(중앙대 교수)	달개비	464

차수	날짜	외부 주요 참석자	장소	집행액
제2차	4.16. (화)	▪ 통일정책 및 남북대화 전문가 : 이○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박○원(한국경총 명예회장), 홍○호(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문○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달개비	539
제3차	4.25. (목)	▪ 인도지원·보건의료 전문가 : 곽○광(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권○란(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창(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김○윤(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등	달개비	554
제4차	**4.29. (월)**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단 : 이○훈(위원장), 차○현(정치군사 분과), 홍○직(경제 분과), 현○애(사회문화 분과), 원○천(인권인도 분과), 김○천(국제협력 분과)**	**아리연**	**2,280**
제5차	5.2. (목)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 이○옥(성균관대 교수), 신○대(북한대학원대 교수), 왕○택(서강대 대우교수), 김○엽(북한대학원대 교수)	달개비	515
제6차	5.13 (월)	▪ 북한이탈주민 및 정착지원 전문가 : 김○민(자유북한방송 대표), 박○선(북한이탈주민학회 회장), 김○남(경기서부하나센터 센터장), 모○홍(한양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김○혁(방송인, 前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달개비	581
제7차	5.16. (목)	▪ 북한경제, 교류협력 전문가 : 조○식(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원장), 권○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근(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이○준(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달개비	603
제8차	5.20. (월)	▪ 유관기관·단체 인사 : 권○철(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유○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조○환(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홍○표((사)시대정신 상임이사), 도○윤(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박○기(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달개비	596
제9차	5.30. (목)	▪ 유관기관·단체 인사 : 이○우(자유민주아카데미 원장), 김○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환(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이○관(대구광역시 대외협력특보), 송태호(지식인연대 대표)	달개비	509
제10차	6.10. (월)	▪ 과학기술/ IT 전문가 : 이○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배(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용(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이○전(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김○선(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외교안보단)	달개비	489
제11차	6.13. (목)	▪ 문화·예술 전문가 : 김○운(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설○아(탈북민 작가), 김○곤(성악가), 최○석(프로젝트 렌트 대표), 하○희(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	달개비	450
제12차	6.20. (목)	▪ 청년/ 신진학자 : 권○현(연세대 정치학 박사과정), 김○연(산업은행 선임연구원), 이○효(숭실평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황○희(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박○규(한반도청년미래포럼 대표), 유○재(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초빙교수), 유○연(가톨릭대 국제학부 재학), 김○혁(북한연구소 연구원), 전○린(한반도정책컨설서스 대표), 김○((재)통일과 나눔 프로그램 매니저)	H라운지	689
제13차	7.4. (목)	▪ 여성 전문가 : 오○숙(前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김○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권○영(민주평통자문회의 여성부의장), 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김○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달개비	582
	계			**8,851 (평균 680.8)**

자료: 통일부

조찬모임 '수요포럼'과 만찬모임 '통일이 있는 저녁'의 구체적 집행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바, 조찬모임의 경우 총 14차례 중 11차례[14]는 사례비(20만원/인)가 별도 지급되었고,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호텔[15]에서 개최되어 임차료가 집행됨.

반면, 만찬모임의 경우에는 총 13차례 중 한 차례(제4차)만 사례비가 지급되고 임차료가 대부분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바, 집행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또한 외교안보 원로 및 전직 장·차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와의 오찬에도 위원회 예산을 활용하였는데, 반기문 전 총장 오찬(4.15)에는 약 293만원, 전직 장·차관 모임(5.13 등)에도 200만원 이상을 집행하였음.

< '외교안보 원로와의 오찬' 등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날짜	외부 주요 참석자	장소	집행액
4.8. (월)	▪ 외교안보 원로 오찬 모임 : 이○우(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 라○일(동국대 석좌교수), 김○준(단국대 석좌교수)	한국 프레스센터	972
4.15. (월)	▪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오찬 모임 : 반기문 전 총장, 반기문 재단 관계자 3명 배석	롯데호텔 서울	2,931
5.13 (월)	▪ 前 통일부장관(정○현, 홍○표) 오찬 모임	롯데호텔 서울	2,311
6.3. (월)	▪ 前 외교부장관(송○순, 유○환, 윤○세) 오찬 모임	롯데호텔 서울	1,361

자료: 통일부

14) 제9차, 제11차 및 제13차 '수요포럼'의 경우, 사례비 지급 없음.

15)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23.5.) p. 222에 따르면,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으로 명시하고 있음.

청년층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부처 청년보좌역, 통일부 2030 자문단, 외교안보 부처 청년인턴 등과도 간담회를 진행함.

< '청년층 의견 수렴'을 위한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날짜	외부 주요 참석자	장소	집행액
4.24. (수)	▪ 청년보좌역 대상 의견수렴 (정부부처 청년보좌역, 12명)	남북관계관리단 회의장	872
5.16. (목)	▪ 청년층 의견수렴 (통일부 2030 자문단, 14명)	HJ비즈니스 센터	1,153
6.10. (월)	▪ 청년층 의견수렴 (외교안보 부처 청년인턴, 42명)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1,576

자료: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통일부장관 직속의 자문기구임을 감안하더라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만이 참석·주재하였음에도 그 경비를 내내역사업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및 1.5트랙 운영'으로 집행한 것은 해당 사업의 본래 취지(위원회 정책 자문)와의 정합성이 부족한 집행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이러한 집행방식은 「국가재정법」 제45조[16]가 규정한 예산 집행의 목적성 원칙과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집행 근거와 사업 간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예산(안) 편성지침 및 집행지침을 준수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6)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세목 조정 및 용역비 집행 관리 강화 필요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세목 조정이 이루어졌음.

< 2024년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주요 세목별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세목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대비)
일반수용비(210-01)	213	△27	186	171	80.3
임차료(210-07)	93	△10	83	52	55.9
일반용역비(210-14)	214	48	262	251	117.3
사업추진비(240-01)	51	-	51	46	90.2

자료: 통일부

예컨대, 10월 추진된 지역순회 공론화 용역비(5,000만원)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수용비·공공요금 및 임차료에서 4,800만원을 전용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수용비 등이 불용된 반면, 일반용역비는 초과 집행(117.3%)되었음.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한 사전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함.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지역순회 공론화’ 용역을 위한 세목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10.4.)	통일정책추진 (1031-300)	210-01	27	통일정책추진 (1031-300)	210-14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지역순회 행사** 관련 **용역비** 집행
		210-02	11			
		210-07	10			

자료: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 통일전략 수립 및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므로,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역할을 분담하고, 위원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① 위원회 예산이 장관의 일반 업무추진성 경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② '수요포럼'과 같은 장관 주재 간담회는 일반행정경비 또는 별도 정책사업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구조를 정비하며, ③ 세목 간 조정이 없도록 연초 사업계획 수립 시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④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식 및 예산 운영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자료]

<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시행 2024. 2. 28.] [**통일부훈령** 제680호, 2024. 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미래 전략·구상의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사항
2. 통일미래 전략·구상의 이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과제 발굴·연구에 관한 사항
4. 통일미래 전략·구상의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미래 전략·구상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관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복수의 분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등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통일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부 통일기획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안건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보관 및 배포
3.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 또는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2024년도 '8.15 통일독트린' 수립 이전, 의견수렴 및 공론화 추진을 위한 집행 >

(단위: 천원)

날짜	외부 주요 참석자	장소	집행액	비고
3.13. (수)	▪ 제1차 수요포럼(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김○호(정책자문위원장, 국방대 부총장), 김○수(서강대 명예교수), 서○구(前 대통령실 비서관), 이○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훈(前 통일연구원장)	코리아나 호텔	2,194	
3.20. (수)	▪ 제2차 수요포럼(정치·외교분야 주요 학회장) : 조○순(한국정치학회장), 마○윤(한국국제정치학회장), 김○호(한국정치사상학회장), 박○호(한국정당학회장), 조○현(차기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	달개비	1,330	
3.22. (금)	▪ 한국정치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	연세대	13,800	
3.27. (수)	▪ 제3차 수요포럼(외교안보 주요 원로) : 김○우((사)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하○선(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최○석(이화여대 명예교수), 유○열(고려대 명예교수), 김○한(前 국가안보실장)	코리아나 호텔	2,845	
4.3. (수)	▪ 제4차 수요포럼(전직 언론인, '94년 당시 소속 기준) : 김○기(조선일보), 박○균(동아일보), 박○희(중앙일보), 이○희(서울신문), 오○석(연합뉴스)	코리아나 호텔	2,127	
4.8. (월)	▪ 외교안보 원로 오찬 모임 : 이○우(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 라○일(동국대 석좌교수), 김○준(단국대 석좌교수)	한국 프레스 센터	972	
4.9. (화)	▪ 제1차 통일이 있는 저녁(북한인권 전문가) : 김○주(탈북민 작가), 김○훈((사)북한인권 이사장), 손○주(북한인권 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순(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제○호(중앙대 교수)	달개비	464	
4.12. (금)	▪ 제5차 수요포럼(북한학 전문가) : 박○철(대전대 객원교수), 고○환(동국대 명예교수), 동○승(굿파머스 사무총장), 이○현(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현(북한연구학회 회장)	코리아나 호텔	2,280	
4.15. (월)	▪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오찬 모임 : 반기문 전 총장, 반기문 재단 관계자 3명 배석	롯데호텔 서울	2,931	
4.16. (화)	▪ 제2차 통일이 있는 저녁(통일정책 및 남북대화 전문가) : 이○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박○원(한국경총 명예회장), 홍○호(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문○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달개비	539	
4.17. (수)	▪ 제6차 수요포럼(외교안보 전문가) : 이○조(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한○섭(국방대 명예교수), 이○종(성균관대 특임교수), 강○영(한국외대 교수), 안○현(서울시립대 교수)	코리아나 호텔	2,104	
4.19. (금)	▪ 2024 한국국제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프레스 센터	12,600	
4.24. (수)	▪ 제7차 수요포럼(외교안보 전문가) : 남○욱(고려대 교수), 이○현(세종연구소 소장), 전○성(서울대 교수), 박○휘(이화여대 교수), 성○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코리아나 호텔	2,280	
4.24. (수)	▪ 청년보좌역 대상 의견수렴 (정부부처 청년보좌역, 12명)	남북관계관리단 회의장	872	

날짜	외부 주요 참석자	장소	집행액	비고
4.25. (목)	▪ 제3차 통일이 있는 저녁(인도지원·보건의료 전문가) : 곽○광(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권○란(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창(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김○윤(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등	달개비	554	
4.29. (월)	▪ 제4차 통일이 있는 저녁(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단) : 이○훈(위원장), 차○현(정치군사 분과), 홍○직(경제 분과), 현○애(사회문화 분과), 원○천(인권인도 분과), 김○천(국제협력 분과)	아리연	2,280	
5.1. (수)	▪ 제8차 수요포럼(정치 원로) : 유○수(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정○철(대한민국헌정회 회장), 황○여(법무법인 황앤씨 대표변호사), 이○제(이○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코리아나 호텔	1,849	
5.2. (목)	**▪ 제5차 통일이 있는 저녁(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 이○옥(성균관대 교수), 신○대(북한대학원대 교수), 왕○택(서강대 대우교수), 김○엽(북한대학원대 교수)**	**달개비**	**515**	**※**
5.8. (수)	▪ 제9차 수요포럼(경제6단체_부회장단) : 김○범(한국경제인협회), 박○준(대한상공회의소), 이○호(한국무역협회), 정○모(중소기업중앙회), 이○근(한국경영자총협회), 이○준(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리아나 호텔	1,480	
5.10 (금)	▪ 충청지역 전문가 간담회 : 평통 위원, 대학 교수 등 11명	대전	6,284	
5.13 (월)	▪ 前 통일부장관(정○현, 홍○표) 오찬 모임	롯데호텔 서울	2,311	
5.13 (월)	▪ 제6차 통일이 있는 저녁(북한이탈주민 및 정착지원 전문가) : 김○민(자유북한방송 대표), 박○선(북한이탈주민학회 회장), 김○남(경기서부하나센터 센터장), 모○흥(한양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김○혁(방송인, 前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달개비	581	
5.14 (화)	▪ 통일연구원 통일 대토론회	프레스 센터	20,000	
5.16. (목)	▪ 제10차 수요포럼(법조계 인사) : 문○남(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안○호(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김○훈(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지○우(한국헌법학회 회장), 송○호(한동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코리아나 호텔	2,104	
5.16. (목)	▪ 제7차 통일이 있는 저녁(북한경제, 교류협력 전문가) : 조○식(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원장), 권○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근(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이○준(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달개비	603	
5.16. (목)	▪ 청년층 의견수렴(통일부 2030 자문단, 14명)	HJ비즈니스센터	1,153	
5.20. (월)	▪ 제8차 통일이 있는 저녁(유관기관·단체 인사) : 권○철(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유○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조○환(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홍○표((사)시대정신 상임이사), 도○윤(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박○기(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달개비	596	
5.27 (월)	▪ 전라지역 전문가 간담회 : 평통 위원, 대학 교수 등 13명	광주	8,193	
5.29. (수)	▪ 제11차 수요포럼(교육계 단체장 등) : 여○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직무대행), 오○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 이○원(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이○봉(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권○희(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코리아나 호텔	1,480	
5.30. (목)	▪ 제9차 통일이 있는 저녁(유관기관·단체 인사) : 이○우(자유민주아카데미 원장), 김○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환(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이○관(대구광역시 대외협력특보), 송○호(지식인연대 대표)	달개비	509	
5.31 (금)	▪ 경상지역 전문가 간담회 : 평통 위원, 대학 교수 등 14명	대구	6,888	
6.3. (월)	▪ 前 외교부장관(송○순, 유○환, 윤○세) 오찬 모임	롯데호텔 서울	1,361	

날짜	외부 주요 참석자	장소	집행액	비고
6.5. (수)	▪ 제12차 수요포럼(인문·사회 전문가) : 윤○중(한신대 명예교수), 함○희(이화여대 교수), 이○우(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김○섭(연세대 교수), 박○희(이화여대 교수)	코리아나 호텔	2,131	
6.10. (월)	▪ 청년층 의견수렴(외교안보 부처 청년인턴, 42명)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1,576	
6.10. (월)	▪ 제10차 통일이 있는 저녁(과학기술/ IT 전문가) : 이○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배(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용(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이○전(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김○선(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외교안보단)	달개비	489	
6.12. (수)	▪ 제13차 수요포럼(통일북한 관련 대학 총장·부총장) : 정○렬(국민대), 김○미(이화여대) 이○규(고려대), 정○철(한양대), 윤○웅(동국대), 양○진(북대)	코리아나 호텔	1,480	
6.13. (목)	▪ 제11차 통일이 있는 저녁(문화·예술 전문가) : 김○운(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설○아(탈북민 작가), 김○곤(성악가), 최○석(프로젝트 렌트 대표), 하○희(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	달개비	450	
6.20. (목)	▪ 제12차 통일이 있는 저녁(청년/ 신진학자) : 권○현(연세대 정치학 박사과정), 김○연(산업은행 선임연구원), 이○효(숭실평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황○희(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박○규(한반도청년미래포럼 대표), 유○재(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초빙교수), 유○연(가톨릭대 국제학부 재학), 김○혁(북한연구소 연구원), 전○린(한반도정책컨센서스 대표), 김○((재)통일과 나눔 프로그램 매니저)	H라운지	689	
6.24 (월)	▪ 경기지역 전문가 간담회 : 평통 위원, 대학 교수 등 14명	수원	7,207	
6.26. (수)	▪ 제14차 수요포럼(외교안보 전문가) : 김○현(중앙대 명예교수), 진○수(세종硏 일본연구센터장), 이○남(고려대 교수), 신○식(서울대 교수), 신○철(前 국방부 차관)	코리아나 호텔	2,131	
6.27. (목)	▪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강릉	10,000	
6.28.(금) ~ 6.29.(토)	**▪ 청년들이 그리는 통일미래 캠프**	**연천**	**49,000**	**※**
7.2. (화)	▪ 북한대학원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국제세미나	북한대학원대	78,600	
7.4. (목)	▪ 제13차 통일이 있는 저녁(여성 전문가) : 오○숙(前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김○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권○영(민주평통자문회의 여성부의장), 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김○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달개비	582	
7.10. (수)	▪ 통일과 헌법가치 세미나	프레스센터	15,000	
7.12 (금)	▪ 강원지역 전문가 간담회 : 평통 위원, 대학 교수 등 13명	춘천	6,777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 (A)		**소계**	**49,515**	**※**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B)		**소계**	**232,676**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회의 (C)[주2)]		**소계**	**46,103**	
(A+B+C)		**총계**	**328,294**	

주 1) 비고란 ※는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에서 집행을 의미함.
2) p. 52, 표 < '8.15 통일독트린' 수립 이전,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집행 내역 > 참조
자료: 통일부

2)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은 통일정책 홍보 및 의견수렴, 지역사회 통일관련 서비스 종합지원 및 민간-정부 간 소통·협력 거점 마련, 통일문화행사, 국민적 합의 형성,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등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01억 4,300만원 중 93억 8,4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5,9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0,144	10,144	-	±26 △1.5	10,143	9,384	-	759	92.5	92.5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에 21억 3,700만원, 통일$^{+}$센터 설치·운영에 47억 1,700만원, 통일문화진흥에 9억 4,400만원,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형성에 4억 6,300만원,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에 11억 2,3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국내통일기반조성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내통일기반조성	10,144	10,144	±26 △1.5	10,143	9,384	759
·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2,639	2,639	△131.5	2,508	2,137	371
· 통일+센터 설치·운영	4,885	4,885	-	4,885	4,717	168
· 통일문화진흥	894	894	130	1,024	944	80
·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500	500	-	500	463	37
· 통일인식 · 북한이해 제고	1,226	1,226	-	1,226	1,123	103

자료: 통일부

□ 사업예산 집행관리 내실화 필요

2024년도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은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제외한 4개 내역사업 모두 집행률이 90%를 넘었으나, 내내역사업 기준으로 초과집행 및 불용이 나타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국내통일기반조성’의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명	사업 내용(내내역사업)	예산액	집행액	불용	집행률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통일정책 홍보사업 운영	1,298 (1,168)	955	342 (213)	73.6 (81.8)
	뉴미디어 소통 강화	289	206	83	71.3
	공보기능 강화	112	79	33	70.5
	인터넷 통일방송 운영	940	897	43	95.4
	소 계	**2,639 (2,509)**	**2,137**	**502 (372)**	**81.0 (85.2)**
통일문화진흥	통일문화행사 운영	631	571	60	90.5
	통일문화 콘텐츠 창작활성화	263 (393)	373	110초과 (20)	141.8
	소 계	**894 (1,024)**	**944**	**50초과 (80)**	**105.6**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24신규)	국민대상 합의 형성	393	358	35	91.1
	오피니언 리더 대상 합의 형성	77	57	20	74.0
	청년 대상 합의 형성	30	48	18 초과	160.0
	소 계	**500**	**463**	**37**	**92.6**
통일인식·북한 이해 제고 (’24신규)	구술채록 연구용역	100	86	14	86.0
	탈북민 토크콘서트 개최	361	330	31	91.4
	통일인식 제고 콘텐츠 제작·확산	765	707	58	92.4
	소 계	**1,226**	**1,123**	**103**	**91.6**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인천통일+센터 운영	379	372	7	98.2
	지역센터 설치·운영	4,200	4,050	150	96.4
	센터 총괄·기획	306	295	11	96.4
	소 계	**4,885**	**4,717**	**168**	**96.6**
	합 계	**10,144**	**9,384**	**759**	**92.5**

주: 5개 내역사업 중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는 대변인실(홍보담당관실), ‘통일문화진흥’은 대변인실(홍보담당관실) 및 통일협력국(협력기획과) 공동 소관, 나머지 3개 내역사업은 통일협력국 소관임.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의 집행률은 85.2%인데, 세부 집행 내용을 보면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됨.

내내역사업 '통일정책 홍보 사업 운영' 중 '매체 활용 등 홍보'에 SNS 홍보비 등으로 2억 9,200만원 편성하였다가 1억 4,900만원 집행(집행률 51%)하였고, '정책홍보 위탁'에 편성한 정책광고 영상 제작비 1억 3,000만원을 다른 내역사업 '통일문화진흥'으로 조정하는 등 당초 계획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됨.

< 내내역사업 '통일정책 홍보사업 운영' 예산(계획)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불용사유 등)
통일정책 홍보사업 운영	홈페이지 운영	255	223	32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매체 활용 등 홍보	292	149	143	집행잔액을 포함한 2억원으로 '24.12월 중순 정책 광고 송출을 계획하였으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취소
	정책홍보 위탁	635 (→ 505)	479	26	-'SNS 홍보물 제작' 용역 계약 낙찰차액 -'정책광고 영상 제작비' 1.3억은 내역사업 '통일문화진흥'으로 조정하여 집행
	정책홍보 컨설팅	116	104	12	용역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계		1,298 (→ 1,168)	955	213	

자료: 통일부

내내역사업 '공보 기능 강화'의 경우에도 정책설명 간담회, 출입기자단 워크숍 등으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7,900만원 집행(집행률 70.5%)하고 3,300만원이 불용됨.

< 내내역사업 ‘공보기능 강화’ 예산(계획)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불용사유 등)
공보 기능 강화	112	79	33	’24.12.11.~12.간 출입기자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취소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당초 12월 중순경 유튜브·지하철 전광판 등을 이용한 ‘정책 광고 송출’에 집행 잔액 5,700만원을 포함한 2억원을, 12월 11~12일간 ‘2024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숍’ 개최를 위해 3,30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12월 3일 발생한 계엄사태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정책 광고 송출’은 연중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이를 연도 말에 집중하여 계획·집행한 것은 계획 수립의 부실 또는 소극적 집행관리로 해석될 수 있음.

내역사업 ‘통일문화진흥’의 ‘통일문화 콘텐츠 창작 활성화’에 당초 2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억 3,000만원을 조정받은 예산현액 3억 9,300만원 중 3억 7,3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1억 1,000만원 초과 집행(집행률 141.8%)한 반면, 일부 항목에서는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등 계획과 실제 집행 간 불일치가 확인되고,

내역사업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2024년 신규)의 3개 사업 중 ‘국민 대상’ 및 ‘오피니언 리더 대상’ 사업에서 각각 3,500만원, 2,000만원이 불

용된 반면, ‘청년 대상’ 사업에서는 예산대비 1,800만원이 초과 집행된 바, 내내역사업 간 계획 및 예산 배분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내역사업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2024년 신규)에서는, 탈북민 구술 채록 용역 결과 책자 발간이 2025년으로 지연되어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불용된 바, 이 역시 집행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했음을 시사함.

이와 같은 각 내역사업의 계획 변경, 세목 조정, 연말 집중집행 등은 국회의 예산 심의 취지와 정부 예산 집행지침 범위 안에서의 통제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 추가 점검이 필요함.

통일부는 향후 연내 집행 가능성과 외부 변수에 따른 리스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역사업 간 세부항목 배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 변경·불용을 최소화하며,

연중 중간 집행실적 모니터링과 결과 평가를 통해 국민의 통일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5억 9,700만원 중 24억 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8,9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595	2,595	-	1.5	2,597	2,408	189	92.8	92.7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에 3억 7,300만원,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에 16억 1,400만원,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에 4억 2,1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제통일기반조성	2,595	2,595	1.5	2,597	2,408	189
·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	447	447	0.7	448	373	75
·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1,720	1,720	0.8	1,721	1,614	107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428	428	-	428	421	7

□ 예산 집행의 일관성 제고 및 주요 협력국 확대 필요

내역사업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는 미국, 독일 등 주요 협력국과의 고위급·실무급 대화 및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한반도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외교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에 편성된 4억 4,700만원 중 3억 7,300만원을 집행됨(집행률 83.4%).

고위급 주요국 협력대화는 예산 대비 초과 집행되었으나, 실무급 주요국 협력대화는 불용되었고, 한국과 독일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서 일부 불용이 발생하여 총 7,400만원이 불용됨.

< 내역사업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 예산 및 집행 >

(단위: 백만원, %)

사업 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주요국 협력대화 -고위급	152	178	117.1
주요국 협력대화 -실무급	78	-	0.0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회의 운영	217	195	89.9
계	**447**	**373**	**83.4**

자료: 통일부

이에 대해 통일부는 실무급 주요국 협력대화를 위한 출장은 국제한반도포럼(GKF) 국외세미나(6월 일본, 11월 미국) 계기에 국장급 대화로 대체 추진됨으로써 소요경비(국외여비)가 전액 불용되었고, 2024년도에 한독통일자

문위원회가 부산(4.30.-5.1.)에서 열림에 따라 관련 국외여비 일부[17]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임.

이와 함께 통일부는 미국, 독일과의 고위급 대화를 통해 대북정책 공조, 북한인권 이슈, 통일담론 확산 등에서 실질적 외교적 성과를 도출하였고,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통해 독일 통일의 경험 공유 및 한반도 통일정책의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한·미·일 3자회의, 독일 통일기념식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통일·대북정책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고위급 출장에서 초과 집행하면서도 실무급 출장은 불용한 점,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서의 일부 불용, 그리고 미국·독일 양국 중심 협력구도에 따른 대상국의 다양성이 부족한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통일부는 향후 직급(고위급/실무급)에 따른 예산 집행의 태도를 달리 하지 않도록 주의함과 아울러, 기존 협력국 외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 중심으로 협력국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정책 파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17) 독일 개최시, 공무원 출장에 소요되는 국외여비

□ **단독 응찰 반복에 따른 수의계약 구조개선 필요**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은 국제회의, 포럼, 연구용역 등 주요 사업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입찰 시 단독 응찰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내역사업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의 ‘국제회의 및 통일공공외교’에서 추진한 국제한반도포럼(GKF), 글로벌 한반도통일청년리더 활동 지원, 해외 연구기관 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짐.

국제한반도포럼(GKF)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 선정 및 섭외, 주제 선정, 국내외 세미나 개최 등 통일·안보 관련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국내 연구기관 1곳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2024년의 경우 조달청 입찰에 ‘○○대학교 산학협력단/(주)△아이엔엠’이 컨소시엄으로 단독 응찰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제3항 등에 따라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음.

‘글로벌 한반도통일청년리더 활동지원’ 및 ‘해외 연구기관 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또한, 조달청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였고 재공고까지 실시하였으나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단독 응찰로 인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됨.

< 내역사업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의 수의계약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 내용	예산액	계약액	수의계약 사유
2024 한반도국제포럼(GKF) 대행기관 선정	788	771	○○대 산학협력단 단독 응찰
글로벌 한반도통일청년리더 활동 지원	65	64	○○대 산학협력단 단독 응찰
해외 연구기관 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	125	117	○○대 산학협력단 단독 응찰
해외여론주도층 통일공공외교 활동 지원	70	64	(사)××××연구원 단독 응찰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 영문웹저널 운영	176 (528)	173 (518)	(재)□□□□연구원 단독 응찰 (3년 장기계약)주)

주: 장기계약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3항에 따라, 장비·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계약으로 분류되어 장기계약 형태로 체결·운영

자료: 통일부

동 사업에서의 일반용역비(210-14) 집행은 경쟁입찰 절차를 따랐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특정 기관에 용역이 집중되는 결과가 반복됨.

이와 같은 계약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18]에 근거하고 있어 법령 위반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기관이 반복적으로 단독 응찰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쟁 및 공정성을 저해하고 연구생태계의 다양성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실제로, 일부 사업은 재공고까지 실시했음에도 타 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입찰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한계가 나타남.

향후 통일부는 과업 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컨소시엄 구성 지원 등 실질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또한, 반복적 단독 응찰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일정 횟수 이상 단독 응찰 시 과업 분할 발주 또는 외부추천을 받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긴급 수의계약 및 단기 행사 위주의 운영 개선 필요

내내역사업 ‘국제회의 및 통일공공외교’에서 추진한 ‘해외여론주도층·글로벌 한반도통일청년리더 활동 지원’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확산과 미래세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외국인 여론주도층과 청년 리더를 대상으로 통일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였음.

2024년에 ‘해외여론주도층 통일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은 (사)××××연구원에서, ‘글로벌 한반도통일청년리더 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각각 위탁 운영하였으며, 외국인 전문가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학술교류, 현장견학, 세미나, 네트워킹 등 다양한 공론화 행사가 추진됨.

< 내내역사업 ‘국제회의 및 통일공공외교’의 긴급 용역 >

(단위: 백만원)

계약명	예산액	계약액	수탁기관	계약 유형	수의계약 사유
해외여론주도층 통일공공외교 활동 지원사업(긴급) 위탁 운영	70	64	(사)×××× 연구원	수의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글로벌 한반도통일청년리더 활동 지원 위탁용역(긴급)	65	64	○○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자료: 통일부

2024년에는 사업 추진 일정의 촉박함, 외국인 청년의 방학 중 본국 귀국 등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긴급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기관이 선정되었는데, 두 용역사업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통일여론 확산과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당초 목적 달성 여부와는 별론으로, 그 집행과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해외여론주도층 통일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은 2024년 최초로 용역 계약 형태로 시행되었는데,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해외 전문가 섭외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긴급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였으며,

‘글로벌 한반도통일청년리더 활동 지원’ 사업 또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단일응찰로 유찰되어 「국가계약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결과, 외부 민간·지역기관의 참여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고 사업 추진상 확보되었어야 할 경쟁 및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외국인 청년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단기 행사에 치중함에 따라 참가

자 DB 구축, 연례 포럼, 멘토링 등 참가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장기적 네트워크 구축, 후속 협력사업 연계 등 사업의 지속성과 정책 환류 체계가 부재하여 국제적 파급력이 제한된 것으로 보여짐.

향후 통일부는 사업 일정을 여유있게 확보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긴급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확대하여 다양한 기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참가자 사후관리(DB 구축, 연례 포럼, 멘토링 등) 강화를 통해 장기적 네트워크 구축, 후속 협력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및 정책 환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과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평가 및 환류 제도 마련 필요**

내역사업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은 해외 북한·통일학 연구자의 역량 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① 펠로우십, ② 해외 정책·학술 연구지원, ③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의 3개 사업으로 구성됨.

이 중 ‘펠로우십’ 및 ‘정책·학술 연구지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용역으로 수행하였는데, 3년간 계약금액은 총 12억 880만원이고 연도별 집행액 등은 다음 표와 같음.

< 2022-2024,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예산 및 집행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예산(편성)액	555	555	230
집행액	489.4	489.4	230
사업 현황	- 펠로우십 7인 - 해외 정책·학술 연구지원 7건	- 펠로우십 6인 - 해외 정책·학술 연구지원 6건	- 펠로우십 6인

주: 계약기간(3년: 2022.1.10.~2024.12.31.): 1,665(발주금액) → 1,208(계약금액)
자료: 통일부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은 통일부가 기타보전금(310-14)으로 직접 편성·집행하였으며, 2024년의 경우 1인당 연 1,800만원 기준으로 총 7명(3명은 2024년 1학기에 종료)에 학자금, 체재비, 항공료 등을 지원함.[19)]

그런데 동 사업은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국립통일교육원 사업(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 등)과의 중복성이 제기되어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었음.[20]

즉, 202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동 내역사업이 3개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단계적 폐지 결정으로 인하여 '해외 정책·학술연구 지원'은 2024년 폐지되었고,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2024년까지 장기계속 위탁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여 계약만료 이후에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였으며, '석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2024년도 신규 선발이 중단되고 2023년에 선발된 장학생까지만 지원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였음.

동 사업은 총 19명의 해외 연구자 펠로우십 등을 통해 북한·통일학 분야 국제연구 협력기반 조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3년 간의 논문 게재 수 등 추적 가능한 정량지표가 부족하였고, 그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사업 방향 조정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미흡하였다는 점 등도 단계적 폐지의 한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21]

---

19) 동 사업에 편성된 기타보전금(310-04)은 '석박사 학위과정'과 관련된 예산으로, 석사과정 2년(박사과정 3년)간 학기당 1인에게 학자금 및 6개월 체제비 1,800만원, 항공임과 초기 정착비 등을 통일부가 직접 지원.

< 2024년도 '석박사학위 과정', 기타보전금(310-04)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 천원)

2024년 편성액(A)	집행액(B)						집행잔액 (A-B)
	항공료	학자금	생활비	보험료	기타비용	합계	
198,000	251	57,111	132,000	649	667	190,678	7,322

주: 편성액 산출내역 : 1억 2,600만원('24년 1학기, 1,800만원 × 7명) + 7,200만원('24년 2학기, 1,800만원 × 4명)
자료: 통일부

20) 동 사업은 예결산 검토 과정에서의 국회 지적사항 혹은 타부처(교육부, 외교부 등) 사업과의 중복 보다는, 2024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부내 다른 사업(국립통일교육원, 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사업)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정부 건전재정 기조를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됨.

향후 통일부는 유사 목적의 학술·교류사업 추진 시,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해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정 종료 이후 사업 참여자들의 관련 분야 취업 상황이나 활동 등을 반영한 사후평가 도입을 통해 사업 결과의 지속적 환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기존의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1)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동 사업을 운영하는 중 위탁운영 업체(경남대)를 통해 자체적인 활동 운영평가 및 점검,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수료자 세미나 개최 등 사후 관리를 진행해왔으며, 사업 참여 연구자들이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개편(2026년 예정) 이후 게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참고자료] < 2022-2024,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사업 현황 >

사업 연도	구분		이름/연구책임자	국적	비 고
2022	펠로우십		Osamu Koike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이론연구부
			Peter Ward	영국	비엔나대 박사 수료
			Taichiro Yoshino	일본	아사히신문 미디어 디자인 센터 버디컬 미디어 편집장('18~)
			Christopher Green	영국	네덜란드 레이던대 교수
			Junya Nishino	일본	게이오대 교수
			Hemant Dubey	인도	인도 자와하랄네루대 박사
			Manon Prud'homme	프랑스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중국·한국·일본학센터
	해외 정책·학술 연구 지원 사업	학술 연구 지원	Kayla Orta	미국	연구기관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연구그룹(게이오대)
			정지용	중국	연구기관(푸단대학교)
			김상국	독일	연구그룹(베를린 자유대)
			Sharon Squassoni	미국	연구자 단독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Nicola Casarini	이탈리아	연구자 단독 (Chian Mai University)
		학술세미나 지원		스웨덴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2023	펠로우십		Chen Hao	중국	버지니아대 역사학 박사수료
			Yeung Man Fung	중국(홍콩)	담강대 국제관계학 박사수료
			Andrey Kovsh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동양학(한국학) 석박사/국제관계학 박사 수료
			Bianca Patrice Trifoi	미국	조지워싱턴대 역사학 박사 수료
			Quan Lingxian	중국	서울대 법대(헌법) 석박사
			Tahara Ryo	일본	와세다대 석사(국제관계)/서울대 외교학 박사 수료
	해외 정책·학술 연구 지원 사업	학술 연구 지원	Steven Denney	오스트리아	연구기관 (ECNK, University of Vienna)
			Zadeh-Cummings, Nazanin	호주	연구기관 (Deakin Univeresity)
			Geetha Govindasamy	말레이시아	연구그룹 (University of Malaya)
			김애화	중국	연구그룹 (천진사범대)
			김연호	미국	연구자 단독(GeorgeWashington University)
			리 난	중국	연구자 단독(중국사회과학원)
2024	펠로우십		Pan, Binbin	중국	아주대 정치외교(박사)
			Kim, Yeonhee	미국	하와이대 정치학(박사)
			Liao, Muchun	중국	킹스컬리지 런던대 정치학(박사과정생)
			Yang, Xiangfeng	중국(홍콩)	서던 캘리포니아대 정치학&국제관계(박사) /홍콩 랑난대학 조교수
			Horiyama, Akiko	일본	마이니치신문 외신부 기자
			Miyamoto, Satoru	일본	일본 고베대 법학박사 /세이가쿠인대 정치과학·경제학부 교수

자료: 통일부

3. 북한정세분석(1500 프로그램)

가. 개 요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1500)은 북한정세분석 체계구축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적시성과 실효성 있는 정세분석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역량 강화’, ‘북한자료센터 운영’ 등 2개의 단위사업과 정세분석 역량 강화,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북한자료센터 운영,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도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12,204	13,998	13,998	13,998	10,632	19,205
□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1533 단위사업)	5,901	4,159	4,159	4,159	3,963	5,376
○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302)	348	-	-	-	-	-
○ 북한 경제·사회 심층조사(301)	-	-	-	-	-	340
○ 정세분석 역량 강화(307)	1,764	2,282	2,282	2,282	2,091	2,251
○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502)	3,789	1,877	1,877	1,877	1,872	2,785
□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 단위사업)	6,303	9,839	9,839	9,839	6,669	13,829
○ 북한자료센터 운영(308)	1,281	1,011	1,011	1,011	1,005	892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310)	5,022	8,828	8,828	8,828	5,664	12,937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은 국내외 북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공개정보관리실 및 정보상황실 운영, 북한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정리·분석 등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2억 8,200만원 중 91.6%인 20억 9,1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 5,000만원, 집행잔액 14,100만원 등 19,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282	2,282	-	±3	2,282	2,091	191	91.6	91.6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정보상황실 운영’, ‘위성정보센터 운영’,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사업이 있음.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에 5,800만원, ‘공개정보관리실 운영’에 2억 9,400만원, ‘정보상황실 운영’에 8억 6,300만원, ‘위성정보센터 운영’에 4억 6,400만원,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에 2억 2,900만원,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에 1억 8,3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정세분석 역량 강화	2,282	2,282	±3	2,282	2,091	191
·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100	100	±1	100	58	42
·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298	298	-	298	294	4
· 정보상황실 운영	880	880	±2	880	863	17
· 위성정보센터 운영	557	557	-	557	464	93
·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240	240	-	240	229	11
·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207	207	-	207	183	24

자료: 통일부

2)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1533-502)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사업은 북한정보 자료수집 확대 및 정보제공의 다양성 필요에 따라 1차 사업은 내부 분석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은 내부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대국민포털 개편사업으로 진행됨. 내부적으로 북한정보 관련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체계를 구축하며, 「북한정보포털」 개편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북한정보서비스를 확충함. 2024년도에는 본예산 18억 7,700만원이었으며, 18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이 불용됨.

< 2024년도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877	1,877	-	-	1,877	1,872	-	5	99.7	99.7

자료: 통일부

2024년 주요 사업추진 내용은 △북한정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임.

< 2024년 예산안 상세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안 상세 편성내역	비목	상세 집행내역	불용액
① **AI·빅데이터 유지관리 : 1,775** -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관리용역비 (210-15)	1,770	5
② **기타운영(감리비 등 기타) : 102** - 국내 데이터 거버넌스 등 : 102 * 각종 수수료(조달수수료 등) 92백만원 * 업무추진비 10백만원	일반수용비 (210-01) 사업추진비 (240-01)	102	-
합 계		1,872	5

자료: 통일부

□ 북한정보 포털의 자료 등록 및 업데이트 구조 개선 필요

통일부는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사업으로 북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정보분석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정보포털(www.nkinfo.unikorea.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흩어진 북한정보를 빅데이터로 모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해당 포털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북한 관련 정보를 주제별로 구성하여 문서자료, 통계자료, 영상자료 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 등록 및 업데이트는 분야별 담당 분석관이 직접 수집·선별하여 수작업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정보 수집에 있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AI 기반 웹 크롤링(Web crawling) 기술[22]이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 북한정보포털 내 메뉴 구성 및 자료 등록 업데이트 구조 >

구 성		등록주기	업무담당
북한 이해	△정치	「북한 이해」 책자 발간에 맞춰 업데이트	각과 담당분석관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북한 동향	△동향	매일	각과 담당분석관

22)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로서, 사람이 특정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일일이 확인해 복사해 오지 않아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여러 데이터를 가져와 정리해 주는 기술을 의미함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 동향	계기 시	
	△주간·월간 동향	매주 및 매월	
	△대외동향	계기 시	
	△TV 프로그램 편성표	매일	
	△국내외 매체동향	매일	웹크롤링
북한 테마	△용어 △인물 △통계	계기 시	
전문자료	△간행물	계기 시	자료관리팀
북한 지도		-	국토부 V월드와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자료: 통일부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정보포털이 일반 인터넷 사이트와 차별되는 핵심적 특징은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공인된 자료만을 게시한다는 것이고, 통일부 분석관을 중심으로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여타 다른 사이트의 북한 관련 정보보다 정보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 경우 통일부 분석관을 통한 정보 등록은 한정된 분석 인원으로 인하여 정보의 업데이트 속도가 현저히 저하시킬 뿐 아니라, 북한 관련 동향의 시의성 확보나 다량의 정보 누적에 있어서도 물리적 제약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인공지능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이라는 사업의 취지와는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또한, AI 웹크롤링 기반 정보 수집은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웹사이트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주기적인 크롤링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정보들을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색, 요약 및 정리하는 것과 큰 차이점이 없는 실정임.

한편, 북한정보포털 중 북한 이해 메뉴는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하는「북한이해」책자 개정에 맞춰 현행화하고 있어「북한 이해」책자 개정에도 불구하고 내용 변동이 없는 부분은 포털의 해당 부분도 수정되지 않는 구조로되어 있음.

이와 같이 일부 내용이 책자 개정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거에 작성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유를 포털에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포털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임.

< 북한정보포털 '북한이해' 중 북한의 통일방안 대남전략 >

민주기지론

남조선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광복 직후인 1945년에 '민주기지론'이란 형태로 처음 제시되었다. 이것은 북한 지역의 혁명역량을 먼저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민주기지론'을 기본적인 대남혁명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광복 직후 여러 면에서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에 비해 우세했던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조선 혁명론

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

북한은 1970년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남조선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공식 채택했다. 이는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공산화 통일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 아래 우선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이후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는 ‘단계적 혁명론’이다.

또한 북한은 남조선 혁명을 완성하는 실천 요소로서 북한체제의 혁명역량, 남조선 혁명역량, 그리고 국제적 혁명역량 강화 등의 ‘3대 혁명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은 대내적으로 남조선 혁명 수행을 위한 혁명기지로서의 북한의 능력과 역할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정치사상적 무장강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통한 경제역량 강화,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군사역량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대남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 내부의 모순을 최대한 첨예화하고 지하당 조직의 확대, 다양한 형태의 통일전선 형성 등으로 사회혼란을 유도해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나. 민족공조론

북한은 2001년 1월 개최한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해 해결해 나가자.”고 제의하는 등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를 통일운동의 핵심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민족공조론’은 탈냉전 이후 대외적 고립과 경제위기 등의 심화로 체제 유지가 최우선 과제로 되면서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이에 대한 강조는 우리 사회 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동시에 우리의 대북지원이 민족의 상부상조 전통에 의한 것이라는 대주민 선전논리로 활용되어 왔다.

핵무력 기반 통일론

북한은 2021년 1월 당규약을 개정,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에 더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 군사적 위협들을 제거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2022년 9월 제정한 「핵무력정책법」과 2023년 9월 개정 헌법에 '핵무력을 통한 영토완정'을 규정함으로써 '핵무력 기반 통일론'도 법제화하였다.

(2024.8월 작성)

자료: 북한정보포털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운영할 경우 시의성과 정확성이 핵심인 정보포털로서 제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분석인력을 확충하여 신속성 및 정확성 등을 향상시킬 것인지 아니

면 AI 기술 활용을 고도화함으로써 분석 속도 제고 및 정보 제공 범위 확대 등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봄.

AI 기술도 단순 크롤링 중심이 아닌 데이터 정제[23]·요약·분류 기능을 포함한 고도화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정보 수집과 등록의 자동화, 수집 정보의 정확성 검증, 분야 간 통합검색 및 연계 기능 강화, 메뉴 체계의 전문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북한정보포털이 국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 운영체계를 지속 점검하면서 현행화해 나가는 한편, 아울러 AI 기술 고도화를 포함하여 운영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23) 데이터정제란 데이터베이스의 불완전 데이터에 대한 검출・이동・정정 등의 작업.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정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들어온 이종(異種)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함.

3)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308)

북한자료센터 운영사업은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관리하여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북한정세분석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0억 1,100만원 중 99.4%인 10억 5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100만원 및 사업 낙찰차액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자료센터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011	1,011	-	±5	1,011	1,005	6	99.4	99.4

자료: 통일부

2024년 주요 사업추진 내용은 북한자료 디지털화, 파본 북한자료 복원·수리, 통일·북한 관련 원문 DB 구축 등이 있고, 센터 소장 도서·영상 등 자료 지원과 센터 내 견학 및 촬영 지원을 추진하였음.

< 2024년도 북한자료센터 운영 사업 추진 실적 >

사업 내용	추진 실적
북한자료 디지털화 사업	'경제연구' 등 5,112권 421,280면
파본 북한자료 복원 및 수리 사업	복원 : '두보시선' 등 22권 6,270면 수리 : '조선말사전' 등 28권
통일 및 북한관련 원문 DB 구축 및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통일부 발행도서 18종 2,014면 원문 DB화
북한 전자자료 구입 사업	'건재공업' 등 전자자료 2,485점

자료: 통일부

4)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서초)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하기 위한 신축 사업으로, 고양시 대화동 2706에 24.12.16일 착공하였음.

2024년도 예산액 88억 2,800만원 중 64.2%인 56억 6,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시공업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달청 심의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31억 6,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감리비 집행잔액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8,828	8,828	-	±0.2	8,828	5,664	3,160	4	64.2	64.2

자료: 통일부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통일부는 ’22년~’26년까지 총사업비 484억원을 투입하여 북한자료센터를 신축·이전함으로써 장서확충·열람공간 확대를 통해 북한연구자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 제고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계획임.

<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개요 >

o 목 적 :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하여 통일·북한 전문·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o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6 o 규 모 : 부지 4,120㎡(1,246평), 건축연면적 8,463㎡(2,557평), 총사업비 484억원

자료: 통일부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통일부는 2023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사이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12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가 2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5년 11월에 건립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고양시의 건립부지 변경 요청[24]으로 실시설계를 재실시함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가 8개월 순연되고,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등 후속 일정도 각각 1~2개월 가량 지체됨에 따라 2024년 12월에야 비로소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선정함.[25]

24) 고양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22. 9월과 ’23. 6월 두 차례에 걸쳐 통일부와 계약한 고양시 대화동 소재 당초 부지에 대한 변경을 요청함. 부지변경 요청 사유로는 첫째, 당초 부지에 인접한 곳이 국토교통부 사업인 K-UAM 수도권 2단계 실증노선 및 버티포트 구축지역으로 최종 확정(’23. 5월) 됨에 따라 인접 부지개발에 따른 소음과 안전문제 발생우려를 제기하였고, 둘째, 고양시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계약한 부지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25) 공사업체 및 감리업체 선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공사분야	계약금액	계약기간
공사	건축	12,008	24.12.11 ~ 26.11. 5
	전기	1,493	24.12.13 ~ 26.11. 5

<건립 단계별 추진일정 지체 현황>

구분	실시설계 (재설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 협의	공사업체 공모	공사
2023년 예산편성 당시	'23.6.~'23.10. (5개월)	'23.9.~'23.10. (1개월)	'23.9.~'23.10. (1개월)	'23.10.~'23.11. (2개월)	'23.12.~'25.11. (23개월)
2024년 추진실적	'23.12.~'24.6. (7개월)	'24.6.~'24.8. (3개월)	'24.7.~'24.8. (2개월)	'24.9.~'24.12. (3개월)	'24.12.~'26.11. (23개월)
지체기간	고양시의 부지변경 요청('23.11)으로 재설계 등 1년여간 순연 ('24.12.16 착공)				

※ 통일부

이와 같이 당초 계획보다 시공사의 선정이 13개월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 실제로 수행 가능한 공기가 부족하여 2024년 공사비(37억 7,600만원)와 감리비(3억 7,300만원) 중 약 76%에 해당하는 31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통일부가 건립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2024년도 사업비를 과다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임.

<2024년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세목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통일정보자료 센터 건립	8,828	8,828	-	±0.2	8,828	5,664	3,160	4
- 건설보상비 (410-00)	4,662	4,662	-	-	4,662	4,662	-	-
- 공사비 (420-03)	3.776	3.776	-	0.2	3.776	956	2,820	-
- 감리비 (420-04)	373	373	-	△0.2	373	31	338	4
- 시설부대비 (420-05)	17	17	-	-	17	15	2	-
합 계	8,828	8,828	-	±0.2	8,828	5,664	3,160	4

※ 통일부

	통신	895	24.12.11 ~ 26.11. 5
	소방	1,006	24.12.11 ~ 26.11. 5
감리	건설사업관리	2,243	24.12.12 ~ 26.11. 5
	전기감리	348	24.12.17 ~ 26.11. 5
	재해예방	19	24.12.16 ~ 26.11.30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통일부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사업을 각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추어 관리함으로써 향후 준공 및 개관 일정이 더 이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동 센터가 북한연구자 및 국민들로부터 용이하게 이용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동 센터의 개관 및 운영에 맞추어 현행 자료 관리체계를 개방적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26]

26) 2025년 7월 14일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자료센터의 자료 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접근이 매우 제약되는 특수자료 비율이 70%에 달하는 현 자료 관리 체계의 폐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자료 관리 주체도 통일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통일부가 관장하는데 동의한 바 있음.

4. 인도적 문제해결(2100 프로그램)

가. 개 요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이산가족, 납북피해자 문제, 북한인권개선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및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등 총 3개의 단위사업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도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6,048	13,167	13,167	13,168	12,143	21,174
□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2133 단위사업)	1,125	1,326	1,326	1,333	1,270	1,490
○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302)	412	504	504	504	479	504
○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306)	311	406	406	413	396	601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505)	402	416	416	416	395	385
□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2135 단위사업)	3,521	10,422	10,422	10,416	9,474	18,205
○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302)	2,407	5,794	5,794	5,782	5,452	12,442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303)	717	860	860	856	840	964
○ 북한인권재단 운영(304)	-	475	475	475	-	475
○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305)	-	164	164	154	79	131
○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306)	-	2,749	2,749	2,769	2,766	3,813
○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501)	397	380	380	380	336	380
□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2137 단위사업)	1,402	1,419	1,419	1,419	1,399	1,479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301)	1,402	1,419	1,419	1,419	1,399	1,479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2133-302)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사업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이산가족 초청 위로행사를 운영하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홍보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산가족교류단체 지원 사업비 지원 및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를 진행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5억 400만원 중 4억 7,900만원이 집행되고, 2,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504	504	-	-0.5	504	479	25	95	95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로는 이산가족교류단체 지원에 8,200만원, 이산가족 초청행사 및 지원 사업에 3억 100만원,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에 9,6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504	504	-0.5	504	479	25
· 이산가족교류지원단체 지원	82	82	-	82	82	-
· 이산가족 초청행사 및 위로사업	322	322	-0.5	322	301	21
·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100	100	-	100	96	4

자료: 통일부

2)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고 납북피해자의 복지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4억 1,300만원 중 3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9%)되었으며, 1,7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06	406	-	+7	413	396	17	97.5	95.9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1억 8,500만원,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1억 6800만원(납북자보상심의위 운영 등 7,700만원, 귀환 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용역 1,500만원, 납북자·억류자 문제 공감대 확산 7,600만원),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3,300만원,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에 9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406	406	+7	413	311	17
·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185	185	-	185	185	-
·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150	150	+25	175	168	7
·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52	52	-19	33	33	-
·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19	19	-	19	9	10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송환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세부사업 '납북피해자문제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실적 >

(단위: 백만원, %)

사업내용	예산계획	집행실적	집행률
1. 전후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185**	**185**	**100.0**
2.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150**	**168**	**112.0**
납북피해자 정착금, 보상금 등	64	74	115.6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위원회 운영 등	9	3	33.3
귀환납북자 사회적응 지원 용역	15	15	100.0
납북자·억류자 공감대 확산	62	76	122.6
3.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52**	**33**	**63.5**
미국·유엔 방문 등 국제협력	42	27	64.3
한일 협력채널 구축·운영	10	6	60.0
4.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19**	**9**	**47.4**
북한주민 사체 수습·안치 및 인도	15	7	46.7
북한주민 송환 및 사체 인도 관련 간담회	4	2	50.0
계	**406**	**396**	**97.5**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 중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은 인권인도실(이산가족과)에서, 나머지 3개 내역사업은 통일부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 4억 600만원 중 3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5%)되어 집행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일부 내역사업에서 집행 부적정·계획 변경 반복 등의 문제가 확인됨.

내역사업 ‘전후납북자 가족단체 지원’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27]에 근거하여 해당 단체[28]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해당 단체에는 2012년부터 매년 1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29]이 지원되고 있으며, 2024년 보조금은 1억 8,500만원임.

---

27)「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단체)
①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
⑤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전문개정 2011. 4. 28.]

28) 해당 단체 개요
○ 설립일 : 2012.8.7. (「전후납북자법」 제29조에 따라 법정단체 등록)
○ 조직·규모: 최○○ 이사장(1952년생,) 및 이사 5명, 회원 400여명, 전국 5개 지부(△서울 △경기·인천 △강원도 △충청·전라도 △경상도) 운영
○ 주요활동 : 납북피해자 권익증진 및 생활지원, 국내외 홍보 활동 등
○ 국고보조금 : 1.85억원(2025년)
- 예산은 △‘12~’14년 100백만원, △15~’18년 150백만원, △‘19년~현재 185백만원 지원
○ 대표(이사장) 관련 사항
: 1967.6.5. 백령도 인근에서 조업 중 납북된 풍복호 선장 최원모(1910년생)의 차남
모친은 ‘02.4월 제4차 이산가족상봉에서 재북가족인 언니 2명과 상봉

29) 2012-2014년 1억원, 2015-2018년 1억 5,000만원, 2019년 이후 1억 8,500만원

□ 잦은 보조금 집행계획 변경 및 내부 회원에 사례비 지급의 부적정

해당 단체의 2024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통일부가 당초 계획 및 승인한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전후납북자 가족단체의 국고보조금 예산(승인)액 및 집행액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납북피해가족 위로 및 화합 도모	**50,340**	**57,521**	**114.3**
- 납북피해자 명절 선물	35,000	36,450	104.1
- 납북피해자 경조사 지원	2,600	647	24.9
- 납북피해자 위로 간담회 등	8,420	17,345	206.0
- 귀환납북자 위로 간담회	1,920	516	26.9
- 납북자 무사귀환 기원 위령제	2,400	2,563	106.8
○ 납북피해자 권익증대 활동	**10,900**	**7,714**	**70.8**
- 납북자문제 토론회	1,800	0	0.0
- 납북자문제 국제 활동	7,800	1,617	20.7
- 납북피해자 권익증대 활동	1,000	5,877	587.7
- 단체 소식지 및 홍보	300	220	73.3
○ 납북피해자 의료비 및 생계 지원	**80,000**	**61,420**	**76.8**
- 의료비 지원	10,000	3,600	36.0
- 생계비 지원	70,000	57,820	82.6
○ 단체 운영지원	**43,760**	**58,308**	**133.2**
- 사무실 운영비	4,100	11,366	277.2
- 이사회	1,460	960	65.8
- 연석회의	2,880	5,896	204.7
- 공공요금	1,120	1,278	114.1
- 정기총회	2,500	3,937	157.5
- 인건비	31,700	34,872	110.0
계	**185,000**	**184,963**	**100.0**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당초 예산(승인)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큰 사업에 대하여

‘납북피해자 위로간담회 등’(집행률 206%)의 경우, 이사장·임원 선출 및 법 개정 관련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지방에 거주하는 납북피해가족과의 간담회 횟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3년 12회 → ’24년 32회)하였고,

‘납북피해자 권익증대 활동’(집행률 587.7%)의 경우, 법 개정 및 권익증대 대외 활동(전문가 면담, 관계 기관 행사 참석)이 증가하고, 납북자와 피해가족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언론 인터뷰 활동 증가로 당초 예산대비 집행액이 증가하였으며,

‘사무실 운영비’(집행률 277.2%)의 경우, 사무실 비품 소진으로 구매 증가, 새로 선출된 임원(이사 및 고문) 명함 제작 및 법무사 처리 비용, 노후된 사무실 집기와 가구(의자) 변경 등으로 집행액이 증가하였고,

‘연석회의’(집행률 204.7%)의 경우에도 전년도보다 연석회의를 1회 추가 개최(’23년 2회 → ‘24년 3회)함에 따른 집행액 증가이며,

‘인건비’(집행률 110%)의 경우 2023년부터 근무한 소속 직원(사무국장)의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 초과 근무로 인한 수당 지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통일부(납북자대책팀)가 보조단체에 통보한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

사업 안에서는 교부결정액의 20% 범위에서 자체 조정하여 집행 가능하며, 불가피하게 교부결정액의 20% 범위 이상 변경할 경우 등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도록 하였음.

해당 단체는 2024년 초에 통일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에서 총 5회에 걸친 변경신청을 통해 일반수용비, 위로행사비 등 특정 항목에 몰아 지출하는 등 변경 집행하였음.[30]

< 해당 단체의 보조금 예산변경 승인(2024.12.) 내역 >

(단위: 천원)

2024.12.11.(4차 변경승인)			2024.12.23(5차 변경승인)		
구 분	금액	주요 변경내용	구 분	금액	주요 변경내용
일반수용비 (210-01)	1,900	- 연말 위로물품 및 사무실 운영비 등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증액 - 연말 예정된 국외출장 취소로 인한 취소수수료 등 여비 증액 - 납북자 가족 위로행사 및 위로 간담회 등 지방 출장 증가로 인한 사업추진비 증액 - 납북자 가족 위로행사·위문 수요 등에 충당하기 위한 기타운영비 감액	일반수용비 (210-01)	661	- 연석회의 사례비 지급 및 보조금 정산 회계검증 수수료 지급, 사무실 운영 등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증액 - 집행 마감으로 인한 불용액을 일반수용비로 변경
국내여비 (220-01)	610		보수 (110-01)	△428	
국외여비 (220-02)	1,650		국내여비 (220-01)	△100	
사업추진비 (240-01)	1,200		국외여비 (220-02)	△33	
보수 (110-01)	△600		사업추진비 (240-01)	△100	
임차료 (210-07)	△40				
기타운영비 (210-16)	△4,720				
계	±5,360		계	±661	

주: '주요 변경내용'은 보조단체가 통일부에 승인요청 시 기재한 변경내용임.
자료: 통일부

30) 2024년 8월 6일 660만원, 9월 26일 530만원, 10월 16일에 1,716만원을 각각 보수, 일반수용비 등으로 변경집행을 요청하였고, 특히 12월에 승인 요청한 세부내역을 보면, 12월 11일 536만원, 12월 23일 66만원 등임.

12월에만 2차례 변경 승인을 요청한 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도말에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의 잔액을 일반수용비 등 집행이 용이한 항목으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통일부는 이를 승인(통보일: 12.11., 12.23.)하였음.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해당 단체가 새로운 이사장 및 임원 선출(2024. 5.)로 인해 신규 임원진이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및 행사 등이 증가하여 하반기에 사업 변경이 잦았다고 설명함.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사업계획을 반복적으로 변경하여 최종 집행 내역이 최초 계획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과 그 승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됨.

즉,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될 경우 그 사업의 당초 목적 및 내용에서 멀어지고, 누적된 사업계획 변경의 효과가 신규사업 수준에까지 이를 소지가 있음.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9조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 변경 사유의 명확한 입증과 감독기관의 실질적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바, 통일부가 "집행마감으로 인한 불용액을 일반수용비로 변경"을 사업변경의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것은 단순히 서면 절차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또한, 해당 단체는 이사회· 총회 및 연석회의 개최 시, 회원에 사례비를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단체 임원 및 고문, 회원에 한하여 실제 총회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사례비는 내부 회원이 아니라 외부 인사(외부 전문가, 강사, 심사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회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자부담으로 해야 함. 즉, 총회 등은 단체의 운영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사례비는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임.

□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생계지원비 등 지급 부적정

통일부는 2024년 1월, 해당 단체에 '보조금 지침'을 통보하면서 기타운영비(210-16)에서 의료지원비와 생계지원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즉, 통일부는 지침에서 의료지원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 1회 지급" 등을, 생계지원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연 2회, 1회 10만원씩 지급. 다만, 집행 잔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이라고 명시하였음.

그런데, 의료지원비의 경우 해당 단체의 정관 제9장[31]에 그 지급 기준과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만, 생계지원비의 경우에는 정관에도 그 지급 근거가 없음.

---

31) 해당 단체의 「정관」 제9장 의료비 지원 <개정 2021. 4. 5.>
제39조(적용범위) 본회의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 적용한다.
제40조(의료지원비 지급기준 및 지급액) 의료지원비는 당해 국가보조금 예산액 책정에 따라 처리하되, 1인 1회 지급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사항을 기준으로 개인의 형편을 참고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50만원이상 초과할 수 없다.)
1. (1인1회만 지급)
암·치매 판정으로 6개월 이상 치료시 - 50만원
2. (만75세 이상 - 년 1회 지급)
병원 입원시 - 20만원(동일병명 중복지급 불가)
3. (만75세 이하 - 2년 1회 지급)
10일 이상 입원시 - 30만원(동일병명 중복지급 불가)
10일 미만 입원시 - 20만원(동일병명 중복지급 불가)

한편, 상위 법령에 근거없이 보조단체의 정관만을 근거로 하여 보조금으로써 해당 단체 회원에게 의료지원비, 생계지원비 같은 복지성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의 교부 결정 내용과 그 지급 목적(예: 사업 수행 경비, 정책연구, 행사진행 등) 외 사용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비록 관련 법률 제29조제4항에서 해당 단체의 사업수행 내용 중 하나로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단체 정관 또는 실무부서의 지침으로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상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복지비 성격의 보조금 집행은 위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32]

따라서 해당 단체 회원에 의료지원비, 생계지원비 등 복지적 성격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후 이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32) 이는 유사 보조단체(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에도 없는 항목임.

□ 한시기구 ‘납북자대책팀’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조치 여부 등 종합적 검토 필요

통일부는 2023년 9월 직제 개편을 통해 장관 직속의 한시조직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33]하고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전담하도록 하였음.

이는 직제개정 당시 재임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종래 이산가족과가 수행하던 ‘특수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지원 기능을 분리하여 이관한 결과임.

그러나 납북자 및 국군포로는 본질적으로 생이별 상태에 놓인 ‘남북 이산가족’으로 볼 수 있으며, 자유로운 접촉이나 생사 확인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별도 조직(납북자대책팀)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의 지속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실제 2024년도 납북자대책팀의 주요 사업은 2012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소수자(6명)에 집중된 반면, 전체 국군포로 및 전후납북자 가족 등 절대 다

---

3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3(납북자대책팀장)
① 장관 밑에 납북자대책팀을 둔다.
② 납북자대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납북자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2.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3.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조
4. 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5. 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6.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주민의 접촉·왕래 및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7.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8. 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단체 지원
9. 납북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정·개정
10. 납북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11.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본조신설 2023. 9. 8.]

수는 사업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34]

한편, 국외출장 등을 통한 성과로 제시된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이미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외교적 노력의 성과이며, 납북자대책팀 신설에 따른 직접적인 사업 결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가 단기간에 급부상하거나 위기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전담조직 운영으로 신속한 집행, 혁신적 시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동 사안은 그 성격이 '가족의 분리와 단절'이라는 점에서 이산가족 정책의 연장선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제기될 수 있음.

< 조직 유형별 특성 비교 >

구분	한시조직(납북자대책팀) 유지	정규조직(이산가족과) 통합
집중성·신속성	단일 이슈에 대한 조직 역량 집중, 신속한 의사결정 용이	이산가족 업무와 병행 시 우선순위·자원 배분에서 상대적 분산 우려
혁신성·유연성	시범사업 추진, 대외 홍보력 강화	표준화된 정책 지속, 기존 실무 관행 중심적 운영
연계성·효율성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조직 해산 시 성과 단절 우려	정책적 연속성 확보, 대상 관리 효율성 제고
예산·민원 대응	한시 예산·인력 편성, 종료 시 민원 소관 모호 가능성	장기 예산·인력 확보, 민원 연속적 대응 용이
정책 대표성	소수 현안(최근 억류자 등)에 집중, 대다수 국군포로·일반 납북자 소외 경향	모든 이산가족(일반·특수) 포괄, 대표성 강화
협력 및 외교성과	상징성 부각, 단기 위기대응 유리	안정적 대내외 협력, 지속적 정책교섭 채널 유지

34) 1953년 7월 정전협정 당시 국군실종자 수는 약 8만 2천명으로 추정되나, 포로교환을 통해 귀환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현황〉 국군포로, 검색일 2025. 7.17. 10시 기준). 또한, 이산가족정보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는 13만 4,427명임(2025. 4월말 현재)이고, 생존 남한 이산가족 수는 3만 6,099명임.

따라서 납북자대책팀의 존속기한(2026년 9월)이 도래함을 고려하여 북한억류 소수 납북자에 초점을 둔 한시조직으로서의 전담조직을 계속 운영할지, 이를 정부 조직 정책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단순 정규조직화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 정책의 연속성 및 체계적·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정규조직과 통합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직진단 및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봄.

3)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2133-505)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은 이산가족 교류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4억 1,600만원 중 3억 9,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0%)되었고, 2,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16	416	-	-	416	395	21	95.0	95.0

자료: 통일부

4)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사업은 북한인권 정책 수립·추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국제사회 논의를 지원하고, 북한인권 실상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57억 9,400만원이고, 예산현액 57억 8,200만원 중 94.3%인 54억 5,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8,700만원은 불용(1억 4,300만원 이월)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5,794	5,794	-	△12	5,782	5,452	187	94.1	94.3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로 '북한인권 개선 정책기획 조정' 사업에 5,400만원,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사업에 8억 9,100만원,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사업에 6,300만원, '국립 북한인권센터 건립'에 44억 4,4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5,794	5,794	△12	5,782	5,452	187
·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	54	54	-	36	36	-
·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1,029	1,029	12	1,041	891	150
·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82	82	△19	63	63	-
· 국립 북한인권센터 건립	4,629	4,629	△5	4,624	4,444	37

자료: 통일부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편성예산 57억 9,400만원 중 54억 5,200만원이 집행됨(집행률 94.1%).

< 세부사업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	정책개발 및 전문가 의견수렴	33	26	78.8
	유관기관 정책 협의	10	18	180.0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10	9	90.0
	소계	**54**	**54**	**100.0**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민관협력 강화	194	135	69.6
	주요국 정책협의 및 국제회의 참석	69	44	63.8
	북한인권 국제대화	767	711	92.7
	소계	**1,029**	**891**	**86.6**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북한인권 정책 Q&A 자료 개발	12	-	0.0
	북한인권 참고자료 콘텐츠 개발	40	57	142.5
	미디어 매체활용 홍보	30	5	16.7
	소계	**82**	**63**	**76.8**
국립북한인권 센터 건립 (‘24년~’26년 총사업비 25,927)	토지매입	4,082	4,082	100.0
	설계비	498	318	63.9
	감리비	39	39	100.0
	일반수용비 등	10	5	50.0
	소계	**4,629**	**4,444**	**96.0**
	계	**5,794**	**5,452**	**94.1**

자료: 통일부

□ 예산 편성 내실화 및 집행 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필요

동 세부사업의 전체 집행률(94.1%)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내역사업별 집행을 보면, 일부 사업에서 불용 및 이월, 빈번한 내역변경 및 세목 전용, 연도말 집중 집행 등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간 괴리가 확인됨.

내역사업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은 3개의 내내역사업(북한인권 민관협력 강화, 주요국 정책협의 및 국제회의 참석, 북한인권 국제대화)으로 구성되고,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 10억 2,900만원 중 8억 9,100만원이 집행(집행률 86.6%)되었음.

동 내역사업에 편성된 국외여비는 당초 '주요국 정책협의 및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편성(3,780만원)하였을 뿐 '북한인권 국제대화' 추진을 위한 통일부 소속 공무원 여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

「국가재정법」 제34조[35]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2023. 9. 국회제출)에 따르면, 통일부는 2024년에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국내 1회, 국외 2회 개최할 것을 예정하여 용역비(10억 6,700만원)를 편성하였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3억원이 감액된 7억 6,700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 국회에서 심의절차가 진행되는 시기에도 공무원 출장을 위한 국외여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36]

---

35)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설명서
3. ~ 16. (생략)

36) 「북한인권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통일부가 제출한 <2024년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

즉, 당초 2024년도 예산에는 ‘북한인권 국제대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총 7억 6,700만원 중 행사 위탁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 7억 6,400만원[37], 조달수수료 및 사례비(210-01) 220만원, 전문가 간담회를 위한 사업추진비(240-01) 81만원 등을 편성하면서도 직원 출장을 위한 국외여비(220-02)를 편성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24년에 ‘북한인권 국제대화’ 해외 개최를 위한 직원 여비 마련을 위해 임차료(210-07)에서 1,700만원을 자체전용하였고, 다른 세부사업 ‘이산가족문제 해결’,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서도 전용하게 된 결과, 동 내역사업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에 편성된 국외여비(3,780만원)보다 2,421만원 초과한 6,200만원을 집행하게 된 것임.

< 내역사업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의 국외여비(220-02) 편성 및 집행 >

(단위: 천원)

구분	예산편성(계획)		집행내역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내용	집행액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국외여비 (220-02)	주요국 정책협의 및 국제회의 참석	37,799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 (3.17.~21., 담당 사무관 외 2명)	9,353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참석 (4.14.~18., 담당 과장 외 1명)	9,944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1차,7월) (7.20..~26., 담당 실장 외 3명)	**18,337 (당초 미편성)**
			북한 제4차 UPR 참석 정부대표단 참가 (10.17.~20., 담당 과장 외 1명)	5,966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2차, 10월) (10.28.~29., 담당 국장 외 3명)	**18,404 (당초 미편성)**
	계	**37,799**		**62,004**

자료: 통일부

황>(2024.8., p.11)의 문구로 미루어 볼 때, 2023년까지 국내에서 추진한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2024년부터 해외에서도 개최하기로 정책을 변경한 것이 자체전용 및 국외여비 초과 집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

’24년부터는「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국내 개최에서 해외 2회 개최로 확대,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담론 확산 도모
- 미국 워싱턴D.C.에서「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개최(’24.7.22.~23.),「2024 북한인권보고서」소개 등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 주요 참석자: △데이먼 윌슨(NED 회장), △존 햄리(CSIS 소장), △마이클 커비(前 COI 위원장), △줄리 터너(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유지태(북한인권홍보대사) 등

37) 정부가 제출한 10억 6,700만원 중 국회가 3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당초 국내 1회, 국외 2회 개최계획을 국내 1회를 개최하지 않고 국외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함.

통일부는 ‘2024년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2024년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美 NED 및 CSIS와 협업 사업을 추진하였고, UN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38] 수검을 계기로 10월 28-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문제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분야를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NGO와 논의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 것으로 설명함.[39]

그러나 향후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 출장을 위한 여비 등은 예산(안) 편성 시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임.[40]

또한, **내역사업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은 2024년 편성 예산 8,200만원 중 6,300만원을 집행(집행률 76.8%)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북한인권 참고자료 콘텐츠 개발’은 당초 예산보다 1,700만원 초과 집행(142.5%)된 반면, ‘미디어 매체활용 홍보’의 집행률은 16.7%에 그쳤고, ‘북한인권 정책 Q&A자료 개발’은 전액 집행되지 아니함.

---

38) 2024년 11월 유엔 인권이사회 주관으로 실시된 ‘북한 제4차 UPR’에는 86개국이 총 294개 권고를 북한에 제시했으며, 우리 정부도 억류 국민의 석방 촉구, 이산가족 문제 해결, 강제북송 탈북민 인권보호, 북한의 군사화에 따른 인권침해 중단 등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음. 북한에 권고한 주요 내용은 정치범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및 고문 중단, 강제노동·아동노동 근절, 표현의 자유 보장,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었음. 북한은 이 중 143개 권고를 수용, 7개는 부분 수용했으나, 144개 권고(정치범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중단, 국제 인권기구 협력 등)는 거부하거나 “noted”(사실상 거부)로 답변하였는데,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 이행, 강제북송 탈북민 보호,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등 핵심 권고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힘.

39) 통일부는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 관련 문안을 외교부에 전달하고 ‘북한인권 국제대화’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활동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함.

40)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당초 편성한 용역비 내에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등 용역사업 진행단계에서 용역비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를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비 내에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를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편성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2025회계연도 국제회의 예산에는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실제로는 600만원 초과한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요금(600만원), 국내여비(100만원), 사업추진비(300만원) 및 일반연구비(3,000만원)를 일반용역비(210-14) 등으로 세목조정 및 자체전용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인권안보 영어 온라인 강의 제작' 등에 총 4,520만원을 집행한 바, 이는 편성 예산(3,000만원)보다 1,520만원 초과 집행(집행률 150.7%)한 것임.

< 내역사업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의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편성(각목)		집행 내역		
			사업 내용	집행액	세부 집행내역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210-01	12,000	북한인권-안보-통일 설명자료 제작	7,400	- 설명자료 제작 - 리플릿 제작 - 영문번역 사례비
	210-02	6,000			
	210-14	30,000	북한인권안보 영어 온라인 강의	48,300	- 제작 용역 계약 - 기술평가 사례비 - 강사료 지급 - 설문조사 답례
	220-01	960			
	240-01	3,000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 등	2,700	- 인쇄물 제작
	260-01	30,000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약칭 '북한인권 로드맵') 홍보영상 제작	4,400	- 홍보영상 제작
	계	**81,960**		**62,800**	

주: 일반연구비(260-01) 전액을 일반용역비 등으로 세목조정
자료: 통일부

< 내역사업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의 일반용역비(210-14) 집행내역 >

(단위: 천원)

계획(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30,000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약칭 '북한인권 로드맵') 홍보영상 제작	4,400	150.7%
		북한인권안보 영어 온라인 영상 강의 제작	40,800	
		계	**45,200**	

자료: 통일부

□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필요

동 세부사업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전체에서 2024년도 예산 내역변경, 세목조정 및 자체전용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세부사업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의 보조사업평가 용역비(2,000만원)로 내역변경된 반면, 다른 세부사업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2133-302),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에서 자체전용으로 출장여비 410만원을 확보하였음.

이와 같이 행사경비, 숙박비, 간담회비 등 다양한 용도로 변경집행이 반복되었으며, 특히 4분기인 10월에 3회, 2,830만원, 11월에 4회, 3,840만원, 12월에 2회, 580만원이 변경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사업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의 변경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4.4.22.)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14	20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2135-306)	210-14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보조사업) 평가 용역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4.8.5.)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2135-303)	220-02	3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20-02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국외출장자 숙박비 통합 결제분 이전
세목조정 ('24.10.8.)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07	0.3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14	세계여아의 날(10.11.) 계기 토론회(10.10.) 경비 충당
세목조정 ('24.10.18.)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02 210-07	6 5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14	'한미일 북한인권 공동행사' 비용 충당
자체전용 ('24.10.29.)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07	17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20-02	북한인권 국제대화 (제네바) 행사 공무국외출장비 확보
자체전용 ('24.11.7.)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2133-302)	220-01	0.5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20-02	북한 제4차 UPR 정부대표단 참가 공무국외출장비 확보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2133-306)	220-02	3.6			
자체전용 ('24.11.13.)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60-01	30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14	'세계여아의 날' 계기 토론회(10.10.) 비용 (15)
						북한인권안보 영어 온라인 강의 제작 (15)
세목조정 ('24.11.26.)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20-01	0.1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20-02	국외출장 숙박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4.11.27.)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07	4.2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14	북한여성 인권 관련 토크콘서트(12.18.) 행사 비용 충당
내역변경 ('24.12.9.)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2135-303)	240-01	0.8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40-01	북한인권 정책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4.12.24.)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14	5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01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조달수수료 납부

자료: 통일부

아울러, 기본경비에서도 내역변경이 있었던 바, 다른 실·국 또는 세부사업에서 인권인도실 사업 추진을 위해 4분기에 변경집행된 부분만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타 세부사업에서 '인권인도실'로의 내역변경 등 >

(단위: 백만원)

날짜	-에서 (타 세부사업명-세목)		금액	인권인도실로	사유
내역변경 '24.10.14.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20-02**	**12**	**220-02**	**'한미일 북한인권 행사' 국외출장여비 부족 (7011-257)**
자체전용 '24.11.7.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2133-302)	220-01	0.5	220-02	북한 제4차 UPR 정부대표단 참가 공무국외출장비 확보 (2135-302)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	220-02	3.6		
내역변경 '24.11.25.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40-02**	**0.8**	**240-02**	**북한인권 전문가 등 업무협의 간담회비 부족분 충당 (7011-257)**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7011-258)	**240-02**	**1.1**		
내역변경 '24.12.9.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2135-303)	240-01	0.8	240-01	북한인권 정책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비 부족분 (2135-302)

자료: 통일부

통일부(인권인도실)는 다른 세부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2024년 10월 '한미일 북한인권 행사'에 공동 소요된 국외여비를 통합 결제하거나, 타 실·국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활용한 소액 전용이므로, 이러한 내역변경 등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함.

이와 같은 통일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빈번한 내역변경, 전용 및 세목조정은 당초 사업 목적과 계획을 훼손시켜 예산 편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고, 특히 타 세부사업 또는 세목 간 이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미흡함을 보여줌.

특히 여비 항목(220)의 경우 내역사업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에서 국외여비를 2,425만원 초과 집행하였고, 기본경비(7011-257)에서도 반복적인 전용을 통해 당초 편성된 예산액(3,498만원) 보다 1,000만원 가량을 초과 집행한 점은 문제도 볼 수 있음.[41]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국제기구와의 연계 행사, 초청행사 등의 집행 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예산(안) 편성시 반영함으로써 분기별·행사별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1) **< 인권인도실 기본경비(7011-257) 중 국외여비(220-02) 계획 및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액		실제 집행내역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7011-257)	이산가족교류 추진 관리 지원	10,351	국립북한인권센터 유사시설 벤치마킹	2,542 (4,761)
	북한이탈주민 사후관리	11,192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7,977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협력	13,436	한미일 북한인권행사	28,171 (1,423)
계		**34,979**		**38,690 (6,184)**

주: 실제 집행내역에서 ( )부분은 기본경비 외 집행을 의미
자료: 통일부

5)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은 「북한인권법」 제13조[42]에 따라 북한주민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및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기록하고,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수집·연구·보존·발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8억 6,000만원이고 예산현액 8억 5,600만원 중 98.1%인 8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860	860	-	±74	856	840	16	97.6	98.1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5억 4,200만원,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사업에 1,300만원, '조사결과 활용' 사업에 2억 8,4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860	860	±74	856	840	16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612	612	△53	559	543	16
·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34	34	△21	13	13	-
· 조사결과 활용	214	214	+70	284	284	

자료: 통일부

42) 「북한인권법」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 세부사업은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조사결과 활용’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에 8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8억 3,900만원 집행하여 전체 집행률은 97.6%임.

< 세부사업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사업 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탈북민 실태조사(답례품, 여비, 연구용역 등)	90	66	73.3
	분야별 인권실태 평가(회의 준비, 평가회의 등)	6	3	50.0
	조사관 심리상담 및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연구용역 등)	23	5	21.7
	유관기관 업무협의(준비물품, 장소임차, 간담회 등)	8	2	25.0
	자문단 운영(자문 사례비, 간담회 등)	14	3	21.4
	지원인원 인건비(보수, 4대보험 등)	118	108	91.5
	심층조사 및 연구(연구용역)	15	0	0
	기록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실 임차, 공공요금, 관리용역비 등)	338	355	105.0
	소 계	**612**	**542**	**88.6**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자료수집	12	6	50.0
	인권기록 및 북한인권 관련 해외사례 정보수집	22	7	31.8
	소 계	**34**	**13**	**38.2**
조사결과 활용	자료발간(자문 사례비, 인쇄비, 간담회 등)	20	18	90.0
	공개보고서 발간(한글판 국문판 발간비)	170	245	144.1
	설명회 개최(국내외 설명회, 임차, 여비 등)	24	21	87.5
	소 계	**214**	**284**	**132.7**
	합 계	**860**	**839**	**97.6**

자료: 통일부

□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내역사업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은 편성예산 6억 1,200만원 중 5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8.6%이지만, 탈북민 실태조사 등 내내역사업별로 편성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전액 미집행되기도 함.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는 '탈북민 실태조사'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이중 6,6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탈북민 수 감소로 인해 당초 계획된 조사대상(550명)보다 축소된 228명을 조사하여 사례비 등이 덜 집행되었고,[43]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6,000만원 중 '북한인권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용역(1건)만 집행(2,000만원)하고 나머지는 다른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비 등으로 집행하였음.

또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조사관에 대한 유니폼 구입을 위하여 세목조정을 실시하여 피복비(210-03) 300만원을 집행한 바, 이에 대하여 기록센터는 원만한 실태조사 수행 및 센터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변경 집행한 것임.

내역사업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는 북한인권 관련 자료수집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 3,400만원 중 1,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8.2%에 불과함.

특히 편성된 일반수용비(210-01) 1,600만원 중 다른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1,300만원을 사용하여 실집행은 260만원에 불과하였고,

43) 다만, 탈북민 수 '22년 58명, '23년 163명, '24년 25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

국외여비(220-02)도 동 내역사업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에서 585만원, 다른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에서 1,413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 북한인권기록센터의 2024년도 국외출장 내역 >

(단위: 천원)

출장명	국외출장 내역			
	출장지	출장자	집행액주)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참석 및 「2024 북한인권보고서」 설명회	미국 (워싱턴DC,뉴욕)	국장 1명 과장 1명 5급 1명	o 항공운임료 11,862 o 여비(일비,식비,숙박) 4,336	16,198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참석 * 인권인도실 합동출장	스위스 (제네바)	6급 1명	o 항공운임료 3,457 o 여비(일비,식비,숙박) 319	3,776
계				19,974

주: 미국 출장(1,620만원)은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에서 207만원, ‘조사결과 활용’에서 1,413만원 각각 집행, 스위스 출장은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에서만 약 378만원 집행.
자료: 통일부

기록센터는 유관부서(인권인도실, 통일협력국)와 공동으로 국외 출장을 진행하면서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설명하지만, 동 내역사업의 임차료와 여비의 경우, 2021년도 이후 편성대비 집행이 매우 저조하여 그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안) 편성의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내역사업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의 임차료 및 여비 편성 및 집행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임차료	5	-	5	2	5	3	5	-
국내여비	2	-	-	-	-	-	0.2	-
국외여비	15	-	13	-	13	13	9	6

자료: 통일부

즉, 이와 같은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 사업 집행은 당초 사업 계획의 현실성 부족, 수요 예측 미흡으로 인한 과다 편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반복되는 사업 미집행과 이로 인한 불용은 향후 예산 편성의 신뢰성 저하 및 재정운영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영상 보고서' 제작 부적정 등**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북한인권보고서 영상보고서를 제작하는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동 사업에 편성된 2억 1,400만원에서 7,000만원 초과된 2억 8,400만원이 집행됨(집행률 132.7%).

기록센터는 2023년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첫 공개 발간[44]한 이후, 동 보고서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층을 고려, 기존의 책자형 종합보고서(국문, 영문) 외에 리플릿 형태의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를 제작하게 된 것으로 설명함.

< 2024 북한인권보고서 종류 등 >

종류	내용
종합보고서(국문, 영문)	국내외 전문가·학계·기관 대상
요약보고서(국문, 영문)	일반 국민 대상, 종합보고서의 주요 증언 수록
영상보고서	유튜브 및 SNS 활용, 젊은 세대 접근 및 국내외 공론화 목적

자료: 통일부

44) 북한인권센터는 2023년에도 발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전용 및 세목조정 등을 통해 총 1억 4,1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음.

즉,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대내외 이해 제고를 목표로 내용과 형식을 개편하고 정부 보고서로서의 전문성·엄밀성 제고를 위해 집필·감수 등에 있어서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특히 영문판의 경우 9차례에 걸친 감수를 시행하여 집행액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함.

<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편성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조사결과 활용	자료발간 (자문 사례비, 인쇄비, 간담회 등)	20	18	90.0
	공개보고서 발간 (국문판, 영문판 발간비)	170	245	144.1
	설명회 개최 (국내외 설명회, 임차, 여비 등)	24	21	87.5
	계	**214**	**284**	**132.7**

자료: 통일부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리플릿 형태의 요약보고서 및 영상보고서 제작 외에도 종합보고서 또한 당초 계획했던 부수(국문 2,500부, 영문 1,500부)보다 각각 1,500부 및 500부를 추가 발간함.

<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종합보고서	국문판 2,500부	59	국문판 4,000부	발간	55
					감수	12
					발송	9
					소계	**76**
		영문판 (감수・번역) 1,500부	82	영문판 2,000부	발간	55
					감수·번역	30
					발송	15
					소계	**100**
	요약	-	-	**리플릿 형태 (국문4,000, 영문3,000)**		**27**
	영상	-	-	**영상보고서**		**55**
		소계	**141**	**소 계**		**258**
비대상 기본경비 (7018-264)		-	-	종합보고서 영문판 발송비		4
		계	**141**	**계**		**262**

자료: 통일부

기록센터가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위해 세목조정 등 변경집행한 내역을 보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4년 4월에 영상보고서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 5,500만원을 용역비로 세목조정한 후 8월에 보고서 발간을 위해 다시 일반수용비로 4,000만원 자체전용하였고,

9월 이후 기록센터 운영에 부족한 일반수용비 마련을 위해 임차료와 국내여비 등을 세목조정 또는 자체전용하였으며, 10월말에는 일반수용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하나원 기본경비(7018-206)에서 기록센터 기본경비(7018-264)로 1,000만원을 내역변경하여 영문보고서 발송비로 400만원을 집행함.

< '2024 북한인권보고서' 관련, 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4.4.23.)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일반수용비 (210-01)	55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일반용역 (210-14)	'북한인권 영상보고서' 제작비 충당
자체전용 ('24.8.23.)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일반연구비 (260-01)	40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일반수용비 (210-01)	보고서 발간 관련 부족분 등 충당
세목조정 ('24.9.26.)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임차비 (210-07)	7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일반수용비 (210-01)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4.10.21.)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임차비 (210-07)	2.8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일반수용비 (210-01)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4.10.24.)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국내여비 (220-02)	6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일반수용비 (210-01)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4.10.31.)	총액인건비 대상 하나원 기본경비 (7018-206)	특근매식비 (210-05)	10	총액인건비 비대상 북한인권기록센터 기본경비 (7018-264)	일반수용비 (210-01)	기본경비 부족분 충당 (영문판 발송비 4백만원 포함)

자료: 통일부

기록센터는 국회의 예산 심사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한 영상보고서 발간을 위해 빈번한 세목조정과 전용을 시행한 바, 향후 이러한 변경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필요한 사업비를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북한인권보고서의 자료 수집이 대부분 탈북민 인터뷰 및 심층 면접에 의존하고 증언 내용에 큰 차별성이 없어 매년 발간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보고서 발간과 관련하여 발간 주기 등을 재검토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6) 북한인권재단 운영(2135-304)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4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75	475	-	-	475	-	475	-	-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 4억 7,500만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예산 세부 편성내역 및 합계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재단 사무실 설치	▪ 설치공사비(인테리어, 전기·소방·설비 등) 365 ▪ 설계 및 감리·부대비 10	375	-	-
사무실 임대·관리비	▪ 2개월분 사무실 임대·관리비 100	100	-	-
합계		475	-	-

자료: 통일부

□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 개선 필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3월 3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45]에 근거, 법 시행일에 맞추어 출범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법 제12조[46]에 따른 재단이사 구성이 완료되지 못해 2025년 7월 현재까지 설립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475	475	-	475	-	-	-	475
2022	475	475	-	475	-	-	-	475
2023	475	475	-	475	-	-	-	475
2024	475	475	-	475	-	-	-	475
2025	475	475	-	-	-	-	-	-

자료: 통일부(2025. 6. 30. 기준)

45) 「북한인권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46)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로 인하여 2016년 예비비 46억 7,600만원, 2017년 117억 5,500만원, 2018년 108억 5,800만원, 2019년 8억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4억 7,500만원 등 편성된 출연금 전액이 불용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정책개발, 국내외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핵심 조직으로 그 설립이 의무사항인 만큼, 관련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되어 그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47]을 기울이는 한편, 재단 출범 이후에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공간 확보, 운영계획 등 제반 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봄.

47) 참고로,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이사 추천 협조 요청 공문을 총 14차례 발송한 바 있으며,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에 따라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할 경우 재단 출범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임.

< 재단 이사추천 관련 통일부 공문발송(총 14회) >

2016년 4회(8.11, 10.5, 11.4, 12.15), 2017년 1회(8.24) 2018년 3회(3.2, 4.19, 11.9), 2019년 1회(8.28), 2020년 1회(3.27), 2022년 1회(7.25), 2023년 1회(8.30.), 2024년 2회(7.31, 11.18.).

7)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2135-305)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은 인도지원 정책개발 및 인도지원 민관 국제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정책 소통 및 유관기관 간 인도지원 협력 체계 구축·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 1억 6,400만원 중 이·전용액 1,200만원을 제외한 7,900만원이 집행되고, 7,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64	164	-	△10	154	79	75	48.2	51.3

자료: 통일부

< 2024년도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164	164	△10.2	153.8	79	74.8
· 인도지원 정책개발	22	22	△0.2	21.8	19	2.8
·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	142	142	△10	132	60	72

자료: 통일부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은 2024년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인도지원 정책개발’ 및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도 편성예산 1억 6,400만원 중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58.5%)됨.

< 세부사업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인도지원 정책개발	정책자문 및 유관기관 등 협의	22	19	86.4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	민관정책협의회	20	3	15.0
	인도협력 전략세미나 운영	69	37	53.6
	국제기구 협력	53	20	37.7
	소계	142	60	42.3
	계	164	79	48.2

자료: 통일부

□ 당초 편성 목적 외 소송경비 집행 부적정

내역사업 ‘인도지원 정책개발’은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의 체계화 및 인도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자문, 전문가 간담회,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2024년도 예산 2,200만원 중 1,900만원이 집행됨(집행률 86.4%).

< 내역사업 '인도지원 정책개발'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사업내용	예산(편성)액	집행액	비고
인도지원 정책개발 (정책자문 및 유관기관 등 협의)	자문 사례비 및 회의자료 제작 등	10	3	전문가 자문
	자료번역비 등	5	-	
	민간단체 의견수렴 출장 등	1	-	
	전문가 간담회	3	3	
	유관기관 간담회	3	2	
	기타 사업 관리	-	11	
	계	22	19	

자료: 통일부

당초 예산에는 전문가 자문과 정책협의에 필요한 사례비 및 회의자료 제작 비용, 우편요금 및 국내 여비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에서는 유관기관 협의 또는 자료발송 관련 우편요금, 국내 출장 여비는 전액 불용되었고, 예상하지 못한 남북협력기금 교부결정 취소청구 소송(2024년 11월 제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으로 1,100만원이 집행됨.

< '기타 사업 관리'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소송 유형	사건 번호	원고	피고	소제기일	사건개요	진행 현황	변호사 비용
행정	2024누 68493	(사)OOOOO	통일부장관	'24.11.21.	남북협력기금 교부결정 취소청구	2심 진행중	11

자료: 통일부

결국 동 내역사업의 집행률은 86.4%이지만, 당초 계획된 정책자문 및 협의를 위해 집행된 금액은 800만원(집행률 36.4%)에 불과함.

통일부는 예상치 못한 소송(남북협력기금 교부결정 취소청구)에 대응하여 해당 소송을 과거 정책사업의 연장선으로 보아 '인도지원 정책개발' 사업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하였다는 입장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소송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의 목적 적합성 저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즉, 정책자문 및 전문가 간담회 등 본래의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기관운영의 경상적 경비(법무 대응 비용)를 정책개발 사업비에서 지출함으로써 사업비와 경상비의 구분 사용 원칙을 약화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음.

향후에는 불가피한 소송 대응과 같은 돌발 상황은 법무대응 경비 등 해당 목적 및 비도(費途)로 편성·운영되는 예산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운영이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봄.

□ 집행 부진 부적정 및 실제 추진 가능한 대안의 적극적 발굴 필요 등

내역사업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은 정부가 민간단체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여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편성예산 1억 4,200만원 중 6,0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42.3%임.

< 내역사업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의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사업내용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	민관정책 협의회	참석 사례비 및 회의자료 제작 등	10	-	
		민간단체 의견수렴 출장 등	2	-	
		민간단체 방문	2	-	
		민간협의체 간담회	6	3	
		소계	**20**	**3**	**15.0**
	인도협력 전략세미나 운영	발제통역 사례비 및 자료 제작 등	23	13	
		회의장 및 장비 임차료	14	4	
		행사 용역	30	20	
		전문가 간담회	2	-	
		소계	**69**	**37**	**53.6**
	국제기구 협력	국제기구 업무협의 출장	13	-	
		국제포럼 운영	40	20	
		소계	**53**	**20**	**37.7**
	계		**142**	**60**	**42.3**

자료: 통일부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민관정책협의회는 15.0%, 인도협력 전략세미나 운영은 53.6%, 국제기구 협력 37.7% 등으로 저조하였고, 연도말 불용이 예상된 사업비는 다른 세부사업 '납북피해자문제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의 보상금으로 전용되었음.

< 세부사업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의 전용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4.10.25.)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2135-302)	일반수용비 (210-01)	10	납북피해자문제해결 및 인도적송환업무지원 (2133-306)	기타보전금 (310-04)	납북자 피해위로금 지급 부족분 충당
		공공요금 (210-02)	0.2			

자료: 통일부

통일부(인도지원과)는 동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로 북한의 국경 봉쇄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해 대면 행사를 축소하고, 국제기구와의 실무면담을 화상으로 대체함으로써 국외출장 경비 등을 절감한 것에 따른 것으로 설명함.

그러나 이는 통일부가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내외 정세 및 인도지원 여건에 대한 현실성 있는 수요 예측과 계획을 미흡하게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통일부 자체평가 결과에서도 북한 내 유엔기구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부로부터의 인도지원 접근이 제한되는 등 북한 내 실질적 인도주의 활동 여건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평가됨.[48]

그럼에도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기조 위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와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임.

통일부가 이러한 기조와 노력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예산의 집행 부진 및 변경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 시 대내외 정세 및 인도적 지원 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제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사업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봄.

48) 동 세부사업은 통일부 자체평가(2024년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보고, 2025.2.)에서도, “북한의 국경 봉쇄 및 외부 지원 거부 등에 따라 유엔기구의 복귀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등 북한 내 인도주의 활동 재개를 위한 실질적 여건 미비”로 ‘부진’으로 평가받은 바, 단순히 행사를 축소하기보다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창의적 방안(디지털 인도협력 등)을 모색하여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8)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은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사업(인력양성, 문화행사, 공론화 등)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통일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통일 교육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27억 4,900만원이고, 예산현액 27억 6,900만원 중 99.9%인 27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고, 3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749	2,749	-	20	2,769	2,766	3	100.6	99.9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에 18억 5,000만원,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 확산' 사업에 9억 1,6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2,749	2,749	20	2,769	2,766	3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1,830	1,830	20	1,850	1,850	-
·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 확산	919	919	-	919	916	3

자료: 통일부

9)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2135-501)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각종 정보 및 북한인권 침해 사건을 기록·보존하기 위해 DB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북한인권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3억 8,000만원 중 88.4%인 3억 3,6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80	380	-	-	380	336	44	88.4	88.4

자료: 통일부

10)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2137-301)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사업은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0. 9. 27. 시행)에 근거하여 6.25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납북피해자에 대한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14억 1,900만원 중 13억 9,900만원이 집행되고 2,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419	1,419	-	-	1,419	1,399	20	98.6	98.6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에 1억원, 기념관 운영에 12억 9,9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2024년도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1,419	1,419	-	1,419	1,399	20
·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100	100	-	100	100	-
· 기념관 운영	1,319	1,319	-	1,319	1,299	20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건립된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및 ‘기념관 운영’의 두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예산은 총 14억 1,900만원으로 이 중 1억원은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12억 9,900만원은 기념관 운영 경비로 집행됨(집행률 98.6%).

< 내역사업 ‘기념관 운영’ 편성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기념관 운영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3	683	97.2
	기념관 콘텐츠 개발 및 연구	222	222	100.0
	기념관 홈페이지 운영	22	22	100.0
	기념관 시설 유지관리	166	166	100.0
	기타 기념관 운영 관리	206	206	100.0
	계	**1,319**	**1,299**	**93.2**

자료: 통일부

□ 기념관 운영 예산의 연례적 세목조정 등 변경집행 부적정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약 1,900만원(상용임금 700만원, 고용부담금 1,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 및 신규 채용 사이에 발생한 공백기간으로 인한 집행 잔액임.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의 집행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집행률 100%)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집행을 보면 일반수용비(210-01) 및 시설장비유지비(210-09)가 초과 집행되었음.

기념관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에 편성된 1억 5,600만원 중 3,200만원을 두 차례 세목조정하여 특별전시 개편 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300만원, 전시관 온수탱크 시설 보수(600만원) 및 노후 차량 수리(30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900만원을 집행함.

< 2024년도 내역사업 ‘기념관 운영’의 세목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1023)	납북자기념관 운영 (2137-301)	210-02	29	납북자기념관 운영 (2137-301)	210-01	특별전시 개편 관련 홍보물 제작(2,300만원)
					210-09	전시관 온수탱크 시설 보수(600만원)
세목조정 (20241225)	납북자기념관 운영 (2137-301)	210-02	3	납북자기념관 운영 (2137-301)	210-09	노후 차량 수리 (300만원)

자료: 통일부

최근 3년간의 공공요금 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기념관은 매년 공공요금을 일반수용비 등 다른 항목으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 2021~2024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예산편성 및 집행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공공요금 및 제세	156	91	156	114	156	120	156	123

자료: 통일부

< 2021년도 이후, '기념관 운영'의 예산조정 및 불용 사유 >

2021	조정	**△기념관 MI 및 기념품 제작(25백만원) △시설점검(안내표식, 프로젝터 수리) 비용(6백만원) 등을 위해 31백만원**
	불용	△공무직 근로자 퇴직 등 사유로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불용액 발생(52백만원) △코로나로 인한 공공요금 잔액 발생(34백만원) △기타 집행잔액(7백만원)
2022	조정	**△기념관 관람 환경 개선(15백만원) △교육도서 발간, 포스터 제작, 관람시설 개선(28.6백만원) △전시영상 제작 등(8백만원) △전기요금 지급 등(2.1백만원)**
	불용	△공무직 근로자 결원 등 사유로 인건비(39백만원) 및 고용부담금(18백만원) 불용액 발생 △기념관 주차장 설치 공사 조달계약 낙찰차액(4백만원)
2023	조정	**△기념관 홍보물 제작(15백만원) △기념관 전광판 및 장애인 주차장 보수(15백만원) △기념관 홍보 리플렛 및 전시 컨텐츠 자료 추가 인쇄(4.6백만원)**
	불용	△공무직 근로자 결원 등 사유로 인건비(20백만원) 및 고용부담금(19백만원) 불용액 발생 △무형자산(30백만원) 및 공공요금 잔액(2백만원)
2024	조정	**△특별전시 개편 관련 홍보물 제작(23백만원) △전시관 온수탱크 시설 보수(6백만원) △기념관 노후 차량 수리(3백만원)**
	불용	△공무직 근로자 결원 등 사유로 인건비(7백만원) 및 고용부담금(12백만원) 불용액 △공공요금 잔액(1백만원)

자료: 통일부

이에 대하여 기념관은, 2021년 이후 일반수용비와 시설유지비는 매년 부족한 반면, 공공요금, 인건비 등[49]은 불용되고 있는바, 4분기에 공공요금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세목조정 후 전시·교육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노후화된 기념관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세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기념관은 일반수용비와 시설유지비의 경우 원부자재 등 물가 상승에도 예산액이 매년 동일하거나 감액되어 전시기획 또는 노후된 시설 보수·공사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최대수요 전력으로 관리하여 기본요금이 낮아져 있으나, 변동상황 발생 시에는 기본요금이 상승하는 점과 전기·수도·상하수도의 단가 또한 변동 가능성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기념관 운영 예산의 항목별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공공요금에서의 세목조정이 반복되는 것은, 본래 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할 때 지양할 필요가 있음.

향후에는 세목 간 불용 및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실집행 실적 등을 반영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는 물론 기념관 본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49) 고용부담금의 불용액이 큰 이유는 기념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근무자들의 나이가 만 60세가 되면서 고용부담금 중 국민연금이 면제되어 상용임금에 비해 고용부담금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였음.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2300 프로그램)

가. 개 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교육 강화, 자립·자활 기반 확충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행정지원 등 2개의 단위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74,960	83,897	83,897	84,220	74,014	80,782
□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2331 단위사업)	54,140	52,838	52,838	53,161	52,705	52,609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300)	15,930	15,987	15,987	16,310	15,857	16,945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302)	37,061	36,273	36,273	36,273	36,273	35,086
○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500)	1,149	578	578	578	575	578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2337 단위사업)	20,820	31,059	31,059	31,059	21,309	28,173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301)	10,086	18,757	18,757	18,757	10,704	16,413
○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302)	10,734	12,302	12,302	12,302	10,605	11,760

자료: 통일부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집행액은 740억 1,400만원으로, 2024년 통일부 일반회계에서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1,000억원을 제외한 집행액 1,986억 5,700만원의 37.3%에 해당하는 금액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사용되고 있음.

각 세부사업별 결산 지출액 비중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49.0%,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1.4%,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14.5%,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4.3%,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이 0.8% 순이며, 대부분의 예산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등으로 집행되고 있음.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정부·지자체·민간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체계적인 정착지원 제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59억 8,700만원 중 99.2%인 158억 5,7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5,987	15,987	-	323	16,310	15,857	453	99.2	97.2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에 4억 84,000만원, ‘탈북 청소년학교 지원’에 45억 8,000만원,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에 32억 1,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75억 2,800만원,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에 1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5,987	15,987	323	16,310	15,857	453
·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160	160	328	488	484	4
· 탈북 청소년학교 지원	4,827	4,827	0	4,827	4,508	319
·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3,337	3,337	0	3,337	3,213	124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7,528	7,528	0	7,528	7,528	0
·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135	135	△5	130	124	6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체계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지 차원[50]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라 함)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 차원에서는 남북하나재단 및 지역적응센터가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음.

50) 거주지 차원에서는 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 지역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구성 >

구 분	항 목	내 용
정착금	기본금	▸ 1인세대 1,500만원, 2인세대 2,400만원, 3인세대 3,150만원, 4인세대 3,900만원, 5인세대 4,650만원, 6인세대 5,400만원, 7인세대 이상 6,150만원
	지방거주 장려금	▸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800만원 ▸ 장애가산금: 1,540만원(중증), 360만원(경증) ▸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1개월 80만원(최대 9개월)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13세 미만 아동): 세대당 400만원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50만원 ▸ '무연고청소년가산금'(월 20만원, 18세~24세)
주거	주택알선	▸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1,600만원, 2인~4인 세대 2,000만원, 5인 이상 세대 2,300만원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취업장려금	▸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새출발 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근속시, 200만원/6월(6백만원限)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적립 목적: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 등 - 지원 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4년) - 약정 금액: 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사회 보장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최초 5년간 특례규정(가구원 산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 등) 적용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근로무능력), 2종 자격 의료혜택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규정 적용
교육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입학(제3국 출생자녀 정원내 특례입학)
	학비지원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 사립대 50% 보조 (탈북민 자녀 포함)
상담	-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자료: 통일부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함)에서는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12주간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서는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2주간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동안 통일부 및 남북하나재단을 비롯한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취업지원, 사회보장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게 됨.

□ 예산에 없던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전용을 통한 추진

통일부는 2024년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동 사업은 관련 예산이 사전에 미편성되어 있던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 사업 등에서 전용 및 세목조정 등을 통해 총 5억 3,401만원 예산을 마련하여 집행하였음.

< 2024년도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사업 전용 등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3.15.)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2337-302)	210-01	70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14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비용 충당
		210-07	30			
전용 (2024.4.19.)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2337-302)	210-01	56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14	
		210-07	55			
		210-14	12			
		210-15	27			
전용 (2024.7.26.)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2337-302)	210-01	3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01	
			52		210-14	
세목조정 (2024.4.18.)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01	15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14	
		210-07	4			
		210-16	1			
세목조정 (2024.7.4.)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14	9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07	
세목조정 (2024.7.5.)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14	2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01	

자료: 통일부

동 행사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진행하였으며, 그 소요경비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세부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내역사업에서 3억 5,434만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그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등(1억 2,400만원)[51], 지정기부금(4,629만원)에서 1억 7,029만원,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부터 937만원이 각각 마련된 것으로 파악됨.

< 2024년도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집행 내역 >

단위: (원)

내역사업명	세목	집행금액(원)	세부내역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 · 조정	210-01 (일반수용비)	4,092,160	- 기념식 행사대행용역 조달 수수료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건립
	210-07 (임차료)	9,077,210	- 시민참여행사 장소 임차
	210-14 (일반용역비)	341,170,500	- 기념식 행사대행 용역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건립
	소계	**354,339,870**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350-02 (사업출연금)	102,570,000	- 시민참여행사 행사대행 용역
		1,430,000	- 시민참여행사 사후원가정산 용역
		10,000,000	- 시민참여행사 부스 운영
		9,077,210	- 시민참여행사 장소 임차
		935,300	- 시민참여행사 다과 구입
	지정기부금	43,210,000	- 시민참여행사 행사대행 용역
		3,080,000	- 시민참여행사 청소 및 물품대여
	소계	**170,302,510**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공모사업	320-01 (민간경상보조)	5,220,000	- 북한이탈주민 예술단(평양예술인협회) 공연
		4,150,000	- 북한이탈주민 작가 기획 전시
합계		**534,012,380**	

자료: 통일부

51) 해당 사업 결산에 대한 검토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부분 참조.

2024년 5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52]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매년 7월 14일)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함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같은 해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임.

해당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최초의 정부 주관 공식 행사로서, 기념식, 사례 발표, 문화공연, 대국민 홍보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통일부는 동 행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 확산과 정착 지원정책의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설명함.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개요 >

①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 ▪ 일시·장소 : 2024.7.14.(월) 10시, 서울 종로구(영빈관)
- ▪ 행사컨셉
- - (자유) ‘자유를 향한 용기’를 기리고, 기념일 제정의 의미 조명
- - (희망)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 격려, 꿈을 향해 도전하는 탈북민 응원
- - (통일미래) 연대·화합을 통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염원
- ▪ 참석자 : 200~300여 명
- - 탈북민 단체 및 직능별 대표, 성공정착 탈북민, 정착지원 종사자, 유관기관 등

②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 계기 시민참여 문화행사
- ▪ 기간·장소: 7.14.(일), 서울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
- ▪ 주요프로그램
- - 탈북 문화예술인들이 참가하는 연극공연, 음악회 및 미술작품 전시회
- - 정착지원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정착지원 프로그램 소개
- - 탈북민 창업가, 소상공인 상품 전시회, 정착 성공사례 발표
- - 탈북민 봉사단체 등 탈북민 지역사회 통합사례 발표, 커뮤니티 소개

자료: 통일부

52) 대통령령 제34519호, 2024. 5. 21., 일부개정, 시행 2024. 5. 21.

그러나 본 사업(“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정부 공식행사로 추진할 계획이 없었다고 할 것인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과 정책적 상징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 추진 여부 및 예산 집행에 관하여 국회의 예산 심사 및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봄.[53]

한편, 2024년 5월 21일 기념일 규정 개정 후 7월 14일에 동 행사를 개최한 상황을 감안하면 행사 준비기간 또한 촉박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경우 행사의 기획·운영 전반에 걸쳐 그 체계적 수행이 이루어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53) 2024년 12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통일부는 동 행사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에는 4억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음.

<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행사 사업 예산안 >

(단위: 천원)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예산	집행내역	예산	산출내역
354,333	○ **일반수용비(210-01) : 4,092**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경비 : 4,092 ○ **임차료(210-07) : 9,077** • 북한이탈주민의 날 부대행사 장소 임차 : 9,077 ○ **일반용역비(210-14) : 341,170**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 341,170	450,000	○ **일반수용비(210-01) : 20,000** 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20,000) • 기념행사 초청장, 리플릿, 기타 인쇄물 제작 : 10×1식×500명=5,000 •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 및 게시 : 10×1식×500명=5,000 • 기념행사 기념품 제작 : 20×1식×500명=10,000 ○ **임차료(210-07) : 20,000** 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20,000)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장소 임차 : 20,000×1식=20,000 ○ **일반용역비(210-14) : 410,000** 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410,000)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 260,000×1식=260,000 •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문화행사 : 150,000원×1식=150,000

자료: 통일부(2024년도는 실집행 내역 참조)

따라서 향후 통일부는 본 사업과 같이 대외적 파급력과 정책적 의미가 큰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국회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2)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2331-500)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별 맞춤형, 생애 주기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입국 시부터 초기 정착지원과 이후 거주지 정착지원 등 전 과정에 걸친 현황과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5억 7,600만원이 감소한 5억 7,800만원이 되었고 이 중 99.5%인 5억 7,5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인 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578	578	-	-	578	575	-	3	99.5	99.5

자료: 통일부

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2337-301)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의지 제고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착기본금,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187억 5,700만원 가운데 57.1%인 107억 400만원이 집행되고, 80억 5,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8,757	18,757	-	-	18,757	10,704	8,053	57.1	57.1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로는 정착기본금 20억 5,800만원, 주거지원금 47억 600만원, 정착장려금 32억 7,100만원으로 주로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18,757	18,757	-	18,757	10,704	8,053
· 정착기본금	4,145	4,145	-	4,145	2,058	2,087
· 주거지원금	8,813	8,813	-	8,813	4,706	4,107
· 정착장려금	4,707	4,707	-	4,707	3,271	1,436
· 보로금	937	937	-	937	564	373
· (정착)가산금	149	149	-	149	105	44
· 고용지원금	6	6	-	6	0	6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동 세부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2023년부터 탈북민 입국인원이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입국인원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입국인원 및 입소·수료인원 >

(단위: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입국인원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236
입소인원	1,391	1,209	1,034	1,049	404	73	59	176	254
수료인원	1,311	1,221	987	1,210	538	87	50	144	242

자료: 통일부

□ 반복적인 집행률 저조 및 예산 편성의 합리성 제고 필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시설보호단계로 입국 후 국가정보원에서 보호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2개월의 임시보호조치를 거친 후 보호가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 입소하여 12주간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됨. 하나원 퇴소 후 주거알선, 각종 정착 및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동 사업에서 지급하는 정착금 등 각종 지원금은 이 시기에 지급받게 되는 것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187억 5,700만 원 중 107억 4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57.1%로 미흡한 상황임.

<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5년 예산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21	33,865	33,865	-	△1,655	-	32,210	14,823 [14,823]	43.8	46.0	-	17,387
2022	28,005	28,005	-	-	-	28,005	10,268 [10,268]	36.7	36.7	-	17,737
2023	20,981	20,981	-	-	-	20,981	10,086 [10,086]	48.1	48.1	-	10,895
2024	18,757	18,757	-	-	-	18,757	10,704 [10,704]	57.1	57.1	-	8,053
2025	16,413	16,413	-	-	-	-	-	-	-	-	-

자료: 통일부

이는 전년도(48.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의 집행률로 평가되며, 동 사업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집행

이 부진한 항목임을 감안할 때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해당 사업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초기 정착금, 주거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목적을 가지며, 기본적으로 입국 인원 수에 직접 연동된 수요 기반 예산 항목으로, 2024년도 입국 인원은 총 236명으로 전년도(196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에도 예산 집행률은 60% 미만 수준에 머물렀음. 이것은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예산 편성 시 예측하였던 5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

<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

(단위: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입국인원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236	38

자료: 통일부(2025년 3월말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본질적으로 외부정세와 북한 내부 변수에 따라 크게 좌우되어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통일부는 입국 인원 추계에 기반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잉 추계 또는 상향 편성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북한의 정치적 폐쇄성과 국경 통제 정책이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단기간 내 급격한 입국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편성 방식처럼 탈북민 수요를 과도하게 상정한 예산 책정은 반복적인 불용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2025년도 예산은 164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액 편성되었으나, 연례적인 집행률 흐름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및 향후 추이를 적정하게 산정함으로써 예산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에는 입국 추이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중장기 전망에 기반한 수요 중심의 예산 설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3년간 분기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보로금	가산금	고용지원금
'22.1분기	86	677	1,283	0	55	22
'22.2분기	77	738	1,943	156	50	15
'22.3분기	54	701	1,500	304	47	10
'22.4분기	99	1,056	1,325	20	45	5
'23.1분기	159	899	1,326	0	43	4
'23.2분기	93	546	1,219	233	42	2
'23.3분기	390	1,388	1,264	29	39	1
'23.4분기	253	1,033	924	164	34	1
'24.1분기	533	1,056	566	117	31	0
'24.2분기	345	1,081	1,012	47	27	0
'24.3분기	537	1,111	565	71	27	0
'24.4분기	643	1,458	1,128	329	20	0

자료: 통일부

다만, 통일부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기간이 2년(2023년과 2024년) 밖에 되지 않아 입국 추이의 구조적 변화에 입각한 정밀한 새로운 추계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인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임.

4)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고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중 3억 2,300만원 전용을 포함한 예산현액 119억 7,900만원 가운데 88.5%인 106억 500만원이 집행되고, 13억 7,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2,302	12,302		-323	11,979	10,605	-	1,374	86.2	88.5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하나원 교육훈련’은 13억 8,200만원, ‘제2하나원 교육훈련’은 6억 9,500만원, ‘하나원 시설운영’은 66억 9,000만원, ‘제2하나원 시설운영’은 18억 3,8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2,302	12,302	△323	11,979	10,605	-	1,374
· 하나원 교육훈련	1,988	1,988	△428	1,560	1,382	-	179
· 제2하나원 교육훈련	897	897	△96	801	695	-	105
· 하나원 시설운영	7,459	7,459	90	7,549	6,690	-	859
· 제2하나원 시설운영	1,958	1,958	111	2,069	1,838	-	231

자료: 통일부

□ 하나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현실화 필요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교육 및 사회적응을 담당하는 주요 시설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그런데 2024년도 하나원의 전기요금 집행 과정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하나원 교육훈련 사업의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에서 세목 조정을 통해 약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충당한 것으로 확인됨.

<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세목 조정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2020	871	-	871	718	153	
2021	916	-	916	692	224	
2022	861	-	861	655	206	
2023	706	51	757	757	-	전기요금 단가 인상으로 부족분 세목조정
2024	665	60	725	725		전기요금 부족분 세목조정

자료: 통일부

통일부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이 7차례에 걸쳐 누적 약 60%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여 당초 편성된 범위 내에서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통일부는 2025년도 예산을 2024년도 집행액을 고려하여 7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여전히 최근 전기요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전기요금과 같은 필수 공공요금의 경우, 가격 변동과 집행 실적을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세목 조정을 통해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은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계획성을 저해할 수 있는바, 향후에는 실제 집행 내역 및 단가 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사전에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2331-302)

1) 결산 개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54]'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및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임.

< 2024년도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예산	증감	예산현액			
총 계(A+B)	39,798	830	40,628	36,638	3,990	90.2
정부예산(A)	39,098	-	39,098	35,897	3,201	91.8
1. 사업비	27,766	-	27,766	24,952	2,814	89.9
가.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3,947	915	4,862	4,798	64	98.7
나. 자립·자활지원	4,510	△167	4,343	4,289	54	98.8
다. 교육개발 및 지원	2,948	△91	2,857	2,833	24	99.2
라.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1,911	△16	1,895	1,884	11	99.4
마.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2,641	△5	2,636	2,602	34	98.7
바. 정착금 지급	11,809	△636	11,173	8,546	2,627	76.5
2. 인건비	9,278	-	9,278	9,016	262	97.2
3. 경상비	1,611	-	1,611	1,589	22	98.7
4. 예비비	444	-	444	440	104	76.5
기부금(B)	700	830	1,530	741	789	93.9

자료: 통일부

주1) 2024년도 정부예산(39,098백만원) = 출연금 36,273백만원 + 결산잉여금 2,825백만원

주2) 예비비 444백만원은 경영평가성과금 충당 비용

5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재단이 아닌 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재단이 대외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재단은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칭 사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내부 사용지침을 제정하고, 「상표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업무표장 등록을 거쳐 별칭을 사용하고 있음.

2010년 3월 26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남북하나재단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년 9월 27일에 설립됨. 이후 6차에 걸친 조직 개편을 거쳐 2025년 6월 현재는 2실 4부 1팀(정원 172명, 현원 182명)으로 운영 중임.

남북하나재단의 2024년 수입·지출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16억 3,200만원 중 366억 7,700만원이 집행되어 정부출연금 7억 1,500만원, 결산잉여금 24억 4,800만원과 기타수입 10억 300만원 및 기부금 집행잔액 7억 8,900만원을 합하여 총 49억 5,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수입·지출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내역	출연금예산	소계	39,658	444	40,102	35,936	4,166
		정부출연금	36,273	-	36,273	35,558	715
		결산잉여금	2,382	444	2,826	378	2,448
		기타 수입[55]	1,003	-	1,003	-	1,003
	기부금		700	830	1,530	741	789
	계		40,358	1,274	41,632	36,677	4,955

자료: 통일부

55) 출연금 환입 594백만원, 이자수입 384백만원, 기타수입 25백만원

2) 사업별 검토

2024년 남북하나재단의 사업비(예산현액 기준)는 277억 6,600만원으로, 이 중 89.9%인 249억 5,200만원이 집행되고, 28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사업별	예산액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27,766	-	27,766	24,952	2,814	89.9
1.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3,947	915	4,862	4,798	64	98.7
2. 자립·자활지원	4,510	△167	4,343	4,289	54	98.8
3. 교육개발 및 지원	2,948	△91	2,857	2,833	24	99.2
4.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1,911	△16	1,895	1,884	11	99.4
5.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2,641	25	2,636	2,602	34	98.7
6. 정착금 지급	11,809	△636	11,173	8,546	2,627	76.5

자료: 통일부

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47억 9,800만원, 자립·자활지원 사업에 42억 8,900만원, 교육개발 및 지원 사업에 28억 3,300만원,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사업에 18억 8,400만원,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사업에 26억 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정착금 지급 사업에 85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음.

사업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정착금 지급 40.2%,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17.5%, 자립·자활 지원 15.6%, 교육개발 및 지원 10.3%,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9.5%,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6.8% 순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정착을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학업기회 부여와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산금, 교육지원금 및 정착자산형성 단위사업으로 구성됨.

동 프로그램은 2024년도 예산현액 111억 7,200만원 중 85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고, 26억 2,6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4년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24년 예산			집행액 (D)	불용액 (C-D)	집행률 (%,D/C)
프로그램 (사업코드)	단위사업 (사업코드)	당초예산 (A)	예산조정 (B)	예산현액 (C) (C=A+B)			
정착금 지급 (6)	합계	11,808	△636	11,172	8,546	2,626	76.5
	가산금 (6-1)	440	-	440	346	94	78.6
	교육지원금 (6-2)	4,984	-	4,984	4,366	618	87.6
	정착자산 형성 (6-3)	6,384	△636	5,748	3,834	1,914	66.7

자료: 남북하나재단

최근 3년간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 99.5%, 2023년 83.6% 및 2024년 72.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이는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 예산의 95.5%(당초예산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지원금 단위사업과 정착자산형성 단위사업의 집행률이 크게 하

락(교육지원금 단위사업: ’22년 113.2%→’24년 87.6%, 정착자산형성 단위사업: ’22년 91.8%→’24년 60.0%)하였기 때문임.

<최근 3년간 정착금 프로그램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22년			2023년			2024년		
프로그램 (사업코드)	단위사업 (사업코드)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정착금 지급 (6)	합계	13,385	13,319	99.5	13,385	11,184	83.6	11,809	8,546	72.4
	가산금 (6-1)	522	548	105.0	522	417	79.9	440	346	78.6
	교육지원금 (6-2)	4,516	5,112	113.2	4,516	4,715	104.4	4,984	4,366	87.6
	정착자산 형성 (6-3)	8,347	7,659	91.8	8,347	6,052	72.5	6,385	3,834	60.0

자료: 남북하나재단

이에 대해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인원 감소[56] 등의 영향으로 2024년 예산편성 시 교육지원금 지원대상자를 1,8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2024년 실제 지원대상자가 1,540명에 머물렀고, 정착자산형성 사업은 2024년 예산편성 시 신규가입자를 671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신규가입자가 112명에 그침으로써 집행률이 미흡한 수준에 그쳤는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57] 및 같은 법 시행령[58]이 개정되어 교육지원금과 정착자산형성 단위사업 지급 대상자를 확

56)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입국인원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236

57) 법률 제20484호(시행 2025. 4.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함.

58) 대통령령 제35255호(시행 2025. 2.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대하여 향후 집행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함.

< 2025년 지원 대상자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교육 지원금	만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 중 고졸 이상 학력인정을 받은지 5년 이내 대학 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제3국 및 남한 출생)로 대학 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 대상 확대(자녀 포함) 및 제한기준(연령, 학력인정 기간) 삭제
정착자산 형성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 중에서 거주지 전입 6개월 이후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거주지 보호기간(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미도과자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 중에서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자 * 거주지보호기간(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제한 기준 삭제

자료: 남북하나재단

그러나, 2025년 5월말 기준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 집행률은 24.3%로, 2024년 5월말 집행률 23.9% 대비 0.4%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정착자산형성 단위사업은 오히려 2024년 5월말 집행률(30.4%) 보다 5.9% 하락한 집행률(24.5%)을 보이고 있음.

<정착금 및 교육지원금 사업 2024년 5월말 대비 2025년 5월말 집행률 비교>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24년 5월말 기준			2025년 5월말 기준		
프로그램 (사업코드)	단위사업 (사업코드)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정착금 지급 (6)	합계	11,809	2,820	23.9	9,733	2,365	24.3
	가산금 (6-1)	440	113	25.8	430	88	20.5
	교육지원금 (6-2)	4,984	767	15.4	4,657	1,203	25.8
	정착자산 형성 (6-3)	6,384	1,939	30.4	4,646	1,140	24.5

자료: 남북하나재단

령 및 대통령령 제35476호(시행 2025. 4.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을 말함.

또한, 정착자산형성 단위사업은 제도개선 이후 증가하던 신규 가입자 수[59]가 다시 감소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남북하나재단 측의 설명과 달리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단순히 대상자 확대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금 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들(예: 신규 가입을 지체시키는 요인, 실질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불만족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새로운 정책 대상자들에게 제도개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동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9) 2025년 1월 4명, 2월 14명, 3월 56명, 4월 30명, 5월 20명

□ 예산 미편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존 사업 예산 감액 등 부적정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단위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력 제고와 주민통합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소통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0억 8,500만원 중 10억 8,100만원이 집행되었고, 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단위사업 결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사업코드)	2024년 예산			집행액 (D)	집행잔액 (C-D)	집행률
	당초예산 (A)	예산조정 (B)	예산현액(C) (C=A+B)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4-1)	1,107	△22	1,086	1,081	5	99.6

자료: 남북하나재단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단위사업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4년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당초예산	예산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정기간행물 기획 및 운영	452	△66	386	386
	홍보콘텐츠 발굴 및 확산	348	62	410	407
	공익광고 및 프로그램 공동기획	78	△77	1	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230	59	289	287
합계		1,108	△22	1,086	1,081

자료: 남북하나재단

정부는 2024년 5월 2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남북하나재단은 이에 근거하여 2024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60]를 개최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에서 1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당초 예산	예산 조정	예산 현액	집행액	주요집행내역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230	59	289	287	o 사회통합교육 운영 6 - 강사파견 및 지원 5 - 교육 운영비 1 o 착한봉사단 운영 122 - 봉사단 활동 지원 72 - 컨설팅 및 평가 용역 22 - 워크숍 및 연합봉사 22 - 백서 제작 6 o 남북청년 통합역량강화 45 - 남북청년 통합프로그램 22 - 청년 소모임 활동 지원 12 - 6.25 전사자 유해발굴 프로그램 11 **o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 114** - 시민참여 행사용역 104 - 행사장 대관 및 운영비 10

자료: 남북하나재단

그런데 당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 관련 경비가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60)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 개요

목적	• 남북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야외 공간에서 문화예술 공연, 체험행사 등을 통해 기념일 홍보 및 탈북민 인식 개선의 계기 마련
주최	• 통일부, 서울시
주관	• 남북하나재단
행사일자 및 장소	• 2024.7.14.(일) 10:00~18:00,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어울림 광장)
참여인원	• 남북 주민 4천여명
주요 행사내용	• (공 연) △공식 기념행사 생중계 △탈북민 예술가 공연 △통일토크쇼, 스트릿댄스 △스토리 패션쇼 폐막 공연 등 • (전시 및 체험) △사진전 △탈북민 생산품 전시(영농, 창업자) △북한 음식 모형 전시 △북한 음식 체험전 △북한 생필품 전시 △정착지원 정책 홍보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 (공 헌) △탈북민 전문직 종사자 재능기부(의료, 캐리커쳐, 네일아트)

이에 따라 남북하나재단은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단위사업내 홍보 콘텐츠 발굴 및 확산 등 3개 세부사업에서 기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였음.

<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 비용 조달 현황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감액조정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홍보콘텐츠 발굴 및 확산	△11
		공익광고 및 프로그램 공동기획	△49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54
합계			△114

자료: 남북하나재단

여기에 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비가 다른 단위사업으로부터 추가로 집행되었는데, 대외협력사업 단위사업에서 240만원, 일자리 창출 및 자립촉진 단위사업에서 760만원이 집행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 비용으로 남북하나재단이 집행한 금액은 총 1억 2,400만원임.

< 타 단위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 비용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집행액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대외협력사업	국내협력	2.4
자립·자활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및 자립촉진	창업지원	7.6
합계			10

자료: 남북하나재단

이에 대하여 재단은 2024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전이었으며,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여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비용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행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발생한 새로운 사업의 비용을 이미 국회가 심의·의결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축소하여 충당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함.[61)]

아울러 회계연도가 절반 가량 남은 시점에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 편성된 사업비 예산을 축소하여 충당할 경우 기 편성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움.[62)]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내 세세부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사회통합교육 운영**	**50**	**6**	**12%**
		착한봉사단 운영	90	122	136%
		남북청년 통합역량강화사업 운영	**90**	**45**	**50%**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	0	114	-
합계			230	287	125%

자료: 남북하나재단

따라서 남북하나재단은 향후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61)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은 2024년 12월 20일에 공포·시행되었음.

62) 실제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내 '사회통합교육 운영' 세세부사업은 예산 편성액 대비 12%만 집행되었고, '남북청년 통합역량강화사업 운영' 세세부사업은 50%만이 집행되어 이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음.

□ 당초 사업목적에서 벗어난 예산 집행 부적정

남북하나재단의 예산편성 구조는 먼저 사업비, 인건비, 경상비, 예비비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은 다시 초기정착 및 생활 안전 지원 프로그램 및 그 하위사업(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등으로 세분됨.

< 남북하나재단 예산편성 구조 >

항목	프로그램·단위사업
사업비	**1.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1-1. 지역사회통합지원
	1-2.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2. 자립·자활 지원
	2-1. 일자리 창출 및 자립촉진
	2-2. 취업지원 및 직업역량강화
	2-3. 일자리성공패키지지원
	3. 교육개발 및 지원
	3-1. 통일미래 인재육성
	3-2. 교육 및 적응지원
	4.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4-1.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4-2. 대외협력사업
	5.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5-1. 경영기획
	5-2. 정착실태 조사연구
	5-3. 정보화·정보보안
	6. 정착금 지급
	6-1. 가산금
	6-2. 교육지원금
	6-3. 정착자산형성

항목	프로그램·단위사업
인건비	**1. 인건비**
	1-1 연봉
	1-2 연봉외 급여
	1-3 퇴직적립금
	1-4 법적부담금
	1-5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상비	**1. 경상비**
	1-1 경상비
	1-1-1 기본운영비(세부사업)
	1-1-2 복리후생비(세부사업)
	1-1-3 여비(세부사업)
	1-1-4 업무추진비(세부사업)
	1-1-5 자산관리비(세부사업)
	1-1-6 자산취득비(세부사업)
	1-1-7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세부사업)
예비비	**1. 예비비**
-	-
-	-
-	-
-	-
-	-

2024년 남북하나재단은 '직무급 도입 관련 컨설팅 용역비[63]' 3,000만원

을 경상비(프로그램)-경상비(단위사업)-기본운영비(세부사업)-일반용역비(세세부사업)로 편성하였음.

< 2024년 직무급 도입 관련 컨설팅 용역비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 편성내역	예산액
프로그램 (사업코드)	단위사업 (사업코드)	세부사업 (사업코드)	세세부사업 (사업코드)		
경상비 (1)	경상비 (1-1)	기본운영비 (1-1-1)	일반용역비 (1-1-1-5)	직무급 도입 관련 컨설팅 용역	30

자료 : 남북하나재단

그런데, 남북하나재단은 '직무급 도입 관련 컨설팅 용역비'를 경상비 프로그램에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업비 항목인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프로그램 중 일반연구비 비목에서 4,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남북하나재단 직무체계 및 직무급 설계 용역 대금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집행내역	집행액
프로그램 (사업코드)	단위사업 (사업코드)	세부사업 (사업코드)	세세부사업 (사업코드)	비목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5)	정착실태 조사연구 (5-2.)	정착실태 조사연구 (5-2-1)	조사기반 응용연구 (5-2-1-2)	일반 연구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직무체계 및 직무급 설계 용역 대금 지급	40

자료 : 남북하나재단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남북하나재단은 기획연구 및 조사연구 프로그램 중 일반연구비 비목으로 정책연구과제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면서 그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분야 연구 용역'이라고 밝힌 바 있음.

63)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 용역은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수립하여 재단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의 운영 기반을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2024년 예산안 편성시 남북하나재단 설명자료 >

5-2	정착실태 조사연구

② 조사기반 응용연구

○ **(정책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분야 연구 용역**

-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 및 연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개선 및 지원사업 효과성 제고에 필요한 실용적 연구 실시

예산 산출내역	예산액 (단위: 천원)
① 정착실태 조사연구	381,500
나) 조사기반 응용연구 o **정책연구과제 : 35,000×2건 = 70,000** o 과제운영비(심사, 보고회) : 1,500×6회 = 9,000 o 총서 인쇄 : 3,000×2건 = 6,000 o 학술회의·전문가 포럼·세미나·간담회 등 : 20,000 o 웹DB・학술지 구독 : 4,000 o 국내여비 : 3,500	112,500

자료 : 남북하나재단

따라서 정책연구과제 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분야의 연구 용역' 용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남북하나재단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에서 벗어나 경상적 경비를 사업비 프로그램에서 집행함.

「국가재정법」은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예산집행을 통제하고 예산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에 벗어난 집행의 금지 원칙을 규정[64]하고 있는 바, 향후 남북하나재단은 출연금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임을 감안하여 그 세부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을 보다 한정적으로 설정·관리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64)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3) 사업 외 검토

□ 결산잉여금 축소를 위한 노력 등 필요

결산잉여금이란 정부출연금 등 예산집행 잔액, 출연금 환입액 및 이자수익 등의 합계액을 말하며, 그 규모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결산잉여금은 2022년 28억 600만원 대비 약 50%(14억원)가 증가한 42억 600만원에 달하였으며, 2024년 결산잉여금 중 정부출연금 등 예산집행 잔액의 비중이 76.1%를 차지함.

<최근 3년간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비중)
예산집행 잔액	1,588	2,198	3,201(76.1)
출연금 환입	701	552	594(14.1)
이자수익	201	302	385(9.2)
기타	316	15	26(0.6)
합계	**2,806**	**3,067**	**4,206(100.0)**

자료: 남북하나재단

최근 결산잉여금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정부출연금 등 예산집행 잔액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2022년 15억 8,800만원에 머물던 예산집행 잔액 규모가 2024년에는 32억 1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2.0배(16억 1,26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해당 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그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에 비례하여 남북하나재단의 사업수행이 효율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한편, 남북하나재단은 결산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예: 2024회계연도) 일부 금액은 차년도(2025회계연도) 예비비로 바로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차년도(2026회계연도) 수입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

이러한 수입 계상 방식은 결산잉여금이 발생 시점부터 실제 수입으로 계상되어 사용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이 유휴 상태로 남게 되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휴 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특히, 2024년 12월 20일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더라도 사실상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 25억 3,9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였고, 결과적으로 수령 금액 전액이 예산집행 잔액화되어 2024년 결산잉여금의 규모가 확대되는 주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짐.

<2024년 월별 정부출연금 수령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령일자	수령내역	송부자	수령금액
정부출연금	2024/02/06	2024년 1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2,265
	2024/02/29	2024년 2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4,209
	2024/03/12	2024년 3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4,409
	2024/04/18	2024년 4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3,265
	2024/05/22	2024년 5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3,809
	2024/06/19	2024년 6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3,809
	2024/07/25	2024년 7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2,176

구분	수령일자	수령내역	송부자	수령금액
	2024/08/23	2024년 8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2,539
	2024/09/23	2024년 9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2,539
	2024/10/22	2024년 10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2,176
	2024/11/26	2024년 11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2,539
	2024/12/20	2024년 12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2,539
합계				36,273

자료: 남북하나재단

따라서 향후 남북하나재단은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각 사업의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의 결산잉여금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회계연도말 정부출연금 교부 시 그 집행가능성을 살펴 교부액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6.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3000 프로그램)

가. 개 요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3000) 프로그램은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개성공단 사업지원’,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3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은 철도·도로 관련 출입시설 및 물류센터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임. ‘개성공단 사업지원’ 사업은 개성공단 중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성공단 기업 지원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하며 남북간 통행 발생시 원활한 통행 지원을 위한 남북전자출입 종합지원관리시스템 관리를 위한 사업임.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사업은 민간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기반 마련 등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이 중 ‘개성공단 사업지원’은 2020년까지 별도 프로그램이던 ‘개성공단 지원’(3200) 프로그램이 2021년부터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3000) 프로그램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3000)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4,391	4,399	4,399	4,319	3,733	4,556
□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3031 단위사업)	2,961	3,417	3,417	3,337	2,994	3,521
○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300)	2,961	3,417	3,417	3,337	2,994	3,521
□ 개성공단 사업지원 (3032 단위사업)	747	733	733	733	573	836
○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303)	458	453	453	453	297	563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 (506)	289	280	280	280	276	273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3036 단위사업)	683	249	249	249	166	199
○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312)	685	249	249	249	166	199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3031-300)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은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및 물류센터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이는 청사시설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용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의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남북 출입경 역량을 유지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특구 등 북한 내 남북협력지구로의 통행 재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관리가 요구됨.

2024년 예산액 34억 1,700만원 중 87.6%인 29억 9,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417	3,417	-	△80	3,337	2,994	343	87.6	89.7

자료: 통일부

2)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3032-303)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사업은 개성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개성공단 기업 지원 관련 후속조치와 경영정상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24년 예산액 4억 5,300만원 중 65.6%인 2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53	453	-	-	453	297	156	65.6	65.6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2억 800만원,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8,9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453	453	-	453	297	156
·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353	353	-	353	208	145
·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100	100	-	100	89	11

자료: 통일부

3)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3032-506)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 사업은 RFID 및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간 도로를 통한 통행·통관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남북간 통행 발생시 원활한 통행 지원을 위한 남북전자출입 종합지원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2023년도 예산액은 2억 8,000만원으로 이 중 98.6%인 2억 7,6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80	280	-	-	280	276	-	98.6	98.6

자료: 통일부

4)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3036-312)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민간의 정책과정 참여 및 소통 확대,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2억 4,900만원 중 1억 6,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6.7%임.

<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49	249	-	-	249	166	83	66.7	66.7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900만원,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9,7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249**	**249**	**-**	**249**	**166**	**83**
·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123	123	-	123	69	54
·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126	126	-	126	97	114

자료: 통일부

7. 남북회담(4000 프로그램)

가. 개 요

남북회담 프로그램은 남북대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면서 남북 간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인도 분야별 남북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북 간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한반도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2024년도 남북회담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2,290	2,355	2,355	2,355	2,152	2,312
1. 남북회담 추진 (4031 단위사업)	191	305	305	305	192	240
가. 남북회담 추진(300)	191	305	305	305	192	240
2.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4032 단위사업)	2,099	2,050	2,050	2,050	1,960	2,072
가.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302)	2,099	2,050	2,050	2,050	1,960	2,072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남북회담 추진(4031-300)

남북회담 추진 사업은 분야별 모의회담 개최, 회담역량 및 전문성 강화, 분야별 회담의제 개발 및 전문가·유관기관 의견 수렴, 전략수립 및 운영체계 개선 등을 통한 남북회담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3억 500만원 중 62.9%인 1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남북회담 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05	305	-	±5	305	192	113	62.9	62.9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분야별 회담 추진' 8,900만원, '남북회담 역량 강화' 2,600만원, '회담 운영 및 지원' 7,7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 남북회담 추진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남북회담 추진	305	305	±5	305	192	113
· 분야별 회담 추진	191	191	△5	186	89	97
· 남북회담 역량 강화	38	38	-	38	26	12
· 회담 운영 및 지원	76	76	5	81	77	4

자료: 통일부

2)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4032-302)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사업은 남북관계관리단이 관리하는 자유의 집과 전방사무소 등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남북회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남북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20억 5,000만원 중 95.6%인 19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도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50	2,050	-	-	2,050	1,960	90	95.6	95.6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인 '남북통신망 운영'의 예산액은 9억 7,700만원이며, 전액을 집행하였음. 남북통신망 간 통화는 2020년 이후 세 차례(2020. 6. 9. ~ 2021. 7. 26., 2021. 8. 10. ~ 2021. 10. 3., 2023. 4. 7. ~ 현재) 중단되었음. 남북통신망은 남북회담에 대비한 상시 중요시설로 보안 및 통신시설로서의 중요성과 지속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도통신망에 준해 KT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경비로서 관리용역비 9억 7,700만원을 전액 집행함.

< 2024년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2,050	2,050	-	2,050	1,960	90
· 남북통신망 운영	977	977	-	977	977	-
· 청사시설 관리	1,009	1,009	-	1,009	923	86
· 남북회담 영상회의실 운영	64	64	-	64	60	4

자료: 통일부

8. 통일교육(5000 프로그램)

가. 개 요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통일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교 및 사회의 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와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해 통일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도 주요 사업은 '통일교육 추진' 및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의 2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이버통일교육센터운영(정보화)', '국립통일교육원 시설 운영'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도 통일교육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22,336	22,861	22,861	23,948	22,818	23,967
□ 국립통일교육원 인건비(단위사업 5002)	5,075	5,691	5,691	6,765	6,334	6,936
○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100)	5,075	5,691	5,691	6,765	6,334	6,936
□ 국립통일교육원 기본경비(단위사업 5018)	1,233	1,397	1,397	1,410	1,278	1,422
○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200)	243	250	250	263	251	267
○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250)	990	1,147	1,147	1,147	1,027	1,155
□ 통일교육추진(단위사업 5031)	14,596	14,308	14,308	14,308	13,778	14,097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304)	4,873	5,695	5,695	5,265	5,095	2,490
○ 학교 통일교육 강화(308)	4,685	4,412	4,412	4,837	4,616	5,191
○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309)	4,530	3,717	3,717	3,722	3,586	3,644
○ 통일교육 자료개발(310)	-	-	-	-	-	2,288
○ 사이버통일교육센터운영(정보화)(507)	508	484	484	484	481	484
□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단위사업 5033)	1,433	1,465	1,465	1,465	1,428	1,512
○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308)	1,433	1,465	1,465	1,465	1,428	1,512

자료: 통일부

정부 통일교육 추진체계를 보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등을 연계하여 학교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을 주축으로 지자체, 지역통일교육센터, 민간단체, 통일관 등과 연계하여 사회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통일교육 추진체계 >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통일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적 차원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통일문제와 북한 관련 각종 자료를 발간·보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2억 6,500만원 중 50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1억 7,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5,695	5,695	-	△430	5,265	5,095	170	89.5	96.8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통일교육 원내과정', 'DMZ 통일걷기 지원', '통일교육 연구센터 운영',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통일교육 자료개발·보급',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 '통일교육 자료센터 운영' 등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4년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695	5,695	△430	5,265	5,095	170
·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342	342	△3	339	321	18
· 통일교육 원내과정	1,341	1,341	±88	1,341	1,305	36
· DMZ 통일걷기 지원	60	60	-	60	58	2
· 통일교육 연구센터 운영	175	175	±10	175	167	8
·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1,030	1,030	△427	603	587	16
· 통일교육 자료 개발·보급	2,007	2,007	±116	2,007	1,949	58
·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	684	684	-	684	652	32
· 통일교육 자료센터 운영	56	56	-	56	56	0

자료: 통일부

□ 국회 의결 내용과 다른 내역사업 신설 후 타 사업으로 내역변경 부적정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내역사업[65]은 대국민, 특히 2030세대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장견학 등 다양한 제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10억 3,000만원이었으나, 내역변경 4억 2,7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6억 300만원 중 5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고, 1,600만원은 불용되었음.

통일부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 내용과 달리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 아래에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내역사업을 신설하였는데, 2024년 1월 10일, 즉 회계년도 개시 약 10일 만에 동 내역사업('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연수 예산 4억 2,700만원을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세부사업으로 내역변경하였음.

<2024년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내역사업 신설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대상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정부안	국회증액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소계	-	1,030	-	△427	603	587	16
	일반인	-	603	-	-	603	587	16
	청소년	-	427	-	△427	-	-	-

자료: 통일부

65) 당초 통일부는 동 내역사업을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소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가 이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청소년 등의 낮아지는 통일의식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내역사업(현장견학 및 글로벌 교육)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우리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로운 내역사업을 신설하지 않고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운영'(5031-304) 세부사업 중 '통일교육 원내과정' 내역사업에 청소년과 일반국민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10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나, 통일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내용과 달리 '통일교육 원내과정' 내역사업 아래에 청소년과 일반국민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현장견학 프로그램 사업을 신설하지 아니하고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의 새로운 내역사업을 만든 것임.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4.1.10.)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31-304)	210-01	4	학교 통일교육 강화 (5031-308)	210-01	청소년 대상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사업 진행
		210-14	420		210-14	
		240-01	3		240-01	

자료: 통일부

통일부의 이러한 내역변경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먼저,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세부사업의 하위사업에는 이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내역사업이 존재하고 있었음.

<2024년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내역사업 실시 현황>

<table>
<tr><th>세부사업</th><th>내역사업</th><th>내역사업 내용</th></tr>
<tr><td>학교
통일교육
강화
(5031-308)</td><td>참여·체험형
프로그램</td><td>○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 2024년 실적: 제11회 청소년 평화·통일문화 경연대회 2개 부문 운영(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 학교통일 체험교육
- 2024년 실적
<table>
<tr><th colspan="2">대상</th><th>실제 참여인원</th></tr>
<tr><td rowspan="3">초·중·고 학생</td><td>1박 2일</td><td>63개교</td></tr>
<tr><td>당일</td><td>267개교</td></tr>
<tr><td>2박 3일</td><td>4개교</td></tr>
</table>
○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 2024년실적: 제13기 어린이 및 중학생 기자단 운영(초등 80명, 중등 20명)</td></tr>
</table>

자료: 통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운영’(5031-304) 세부사업에 청소년과 일반국민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현장견학 프로그램’(10억 3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청소년 등의 낮아지는 통일의식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내역사업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통일부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통일부 증액의견>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단위사업-세부사업)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증감액	수정의견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현장견학 및 글로벌 교육 (5031-304)	5,070	5,015	1,500	○ 동 사업(내역사업인 ‘현장견학 및 글로벌 교육’)은 낮아지는 청소년의 통일의식을 높이고, 한반도 자유민주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산 관련 청소년 및 국제사회 대상 통일교육을 15억원 증액 필요 - 청소년 일반국민 대상 체험형 현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10억 3,000만원 증액 필요 - 글로벌 통일교육 프로그램 확대 : 4억 7,000만원 증액 필요

자료: 통일부

이처럼 통일부의 증액의견이 국회에서 수용되었음에도 이를 추진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회계년도 개시 약 10일 만에 기존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세부사업으로 조정한 것은 통일부가 해당 예산을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었거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안을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66]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사람을

6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의미하므로 학교 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세부사업과 다른 정책대상(예: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추진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드는 행정적 노력과 부담을 회피하고 기존의 틀 안에서 안주하려는 소극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통일부는 신규 예산 편성시 새로운 정책대상 발굴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편성된 예산이 소극적·편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예산 소요에 대한 예측력 강화 등 필요

통일교육 자료개발 보급 내역사업은 통일문제와 북한에 관한 각종 자료를 발간·보급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북한관을 확립·제고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0억 700만원 중 19억 4,900만원이 집행되었고, 5,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통일교육 자료개발 보급 내역사업 목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통일교육 자료개발 보급	2,007	2,007	±116	2,007	1,949	58
- 일용임금(110-04)	3	3	-	3	3	-
- 일반수용비(210-01)	810	810	16	826	825	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	6	-	6	5	1
- 임차료(210-07)	3	3	-	3	-	3
- 일반용역비(210-14)	708	708	△116	592	583	9
- 국내여비(220-01)	6	6	-	6	4	2
- 사업추진비(240-01)	13	13	-	13	12	1
- 일반연구비(260-01)	455	455	100	555	515	40
- 고용부담금(320-09)	1	1	-	1	0.3	0.7
- 자산취득비(430-01)	2	2	-	2	2	-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4년 9월 30일 통일교육 그림동화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역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용역비 1억원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함.

<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4.9.30.)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31-304)	210-14	100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31-304)	260-01	통일교육 그림동화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 용역비 충당

자료: 통일부

이후 통일부는 2024년 9월 25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9월 30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고, 같은 해 11월 12일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 통일교육 그림동화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 용역 계약체결 경과 >

(단위 : 백만원)

구분	제안요청서 작성일	조달청 계약의뢰일	조달청 공고일	조달청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계약기간
일자	24.9.25.	24.9.30.	24.10.14.	24.11.12.	92백만원	24.11.12.~ 24.12.31.

자료: 통일부

전용사유에 대해 통일부는 2018년부터 매년 아동 대상 통일교육 그림동화를 개발하여 일반 도서 형태로 유치원, 초등연구학교 등 교육현장에 보급하고 있고, 2024년까지 총 7권의 그림동화 도서가 개발되었는데, 교사 등 교육현장에서 그림동화의 손쉬운 활용 및 체험형 콘텐츠 보급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으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통일교육 강화라는 정부 내 정책 방향이 설정됨에 따라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기획하게 되었고 2025년 통일교육주간'(매년 5월 넷째주)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이상과 같은 통일부 설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봄.

우선 통일부의 예산 수요예측 능력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교육현장에서 2024년까지 개발된 총 7권의 그림동화 도서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체험형 콘텐츠 보급에 대한 지속적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하였음.

이는 2025년 정부내 예산편성 과정(즉, 2024년 9월 이전) 중에 체험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을 통일부가 인지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통일교육 강화라는 정부 내 정책 방향을 미리 예견하지 못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후, 불과 수개월 후인 2024년 9월경에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수요를 예측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에 입각하여 선제적으로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고 집행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의지를 구현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통일부의 설명은 그 수요 예측 능력에 상당한 결함이 있었음을 보여줌.

다음으로 실감형 콘텐츠 개발의 시급성 및 「국가재정법」상 전용요

건[67]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2025년 통일교육주간’(매년 5월 넷째주)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통일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실감형 컨텐츠 개발 용역 사업의 사업기간(제안요청서 작성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이 채 90일이 걸리지 아니하였음.

이는 해당 용역비 예산을 국회 심의를 통해 정식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더라도 2025년 통일교육 주간인 2025년 5월 넷째주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통일부가 사업의 필요성만을 근거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용 요건인 '시급성'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규정인 만큼 향후 통일부는 사업 수요에 대한 예측력을 강화하고,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전용을 통한 집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67)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은 전국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가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8억 3,700만원 중 46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2억 2,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412	4,412	-	425	4,837	4,616	221	104.6	95.4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은 '초·중·고 학교통일교육 지원' 10억 4,600만원,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21억 600만원,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14억 6,400만원이 각각 집행됨.

< 2024년도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학교 통일교육 강화	4,412	4,412	425	4,837	4,616	221
·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	1,140	1,140	△2	1,138	1,046	92
·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2,153	2,153	-	2,153	2,106	47
·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1,119	1,119	427	1,546	1,464	82

자료: 통일부

□ 실소요가 없는 예산 편성 후 불용 부적정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 내역사업은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활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억 3,800만원 중 10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고, 9,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 내역사업 목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	1,140	1,140	△2	1,138	1,046	92
- 상용임금(110-03)	29	29	-	29	28	1
- 일반수용비(210-01)	483	483	-	483	463	2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	6	-	6	0.3	5.7
- 임차료(210-07)	9	9	-	9	2	7
- 복리후생비(210-12)	1	1	-	1	1	-
- 일반용역비(210-14)	20	20	-	20	-	20
- 국내여비(220-01)	153	153	△2	151	125	26
- 사업추진비(240-01)	10	10	-	10	9	1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	100	88	12
- 민간경상보조(320-01)	324	324	-	324	324	-
- 고용부담금(320-09)	5	5	-	5	5	-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

역비 2,000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하였음.

최근 3년간 해당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편성된 예산 2,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나, 2023년 및 2024년에는 전액 집행되지 아니함.

< 최근 3년간 일반용역비(210-14)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일반용역비(210-14)	20	20	20	0	20	0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23년부터는 학생, 교사가 URL 페이지에 접속하여 만족도 조사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예산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방식)을 개편함에 따라 일반용역비를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향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러나 예산 절감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불용한 것까지 예산 절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또한, 예산은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는 예산 수요 중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 동 내역사업 일반용역비처럼 사업수행방식이 변경되어 집행 수요가 사라진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고 할 것임.

더욱이 2025년 예산에도 동일하게 일반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통일부는 같은 사유를 들어 일반수용비로 조정하여 집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향후 통일부는 한정된 국가 예산이 집행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5031-309)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은 ① 사회통일교육 기관·단체 대상 통일교육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 통일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②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③ 2030세대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사회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7억 2,200만원 중 35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3,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717	3,717	-	5	3,722	3,586	-	136	96.5	96.2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14억 2,600만원,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에 20억 6,600만원,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에 9,4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3,717	3,717	5	3,722	3,586	-	136
· 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1,423	1,423	5	1,428	1,426	-	2
·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2,194	2,194	-	2,194	2,066	-	128
·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100	100	-	100	94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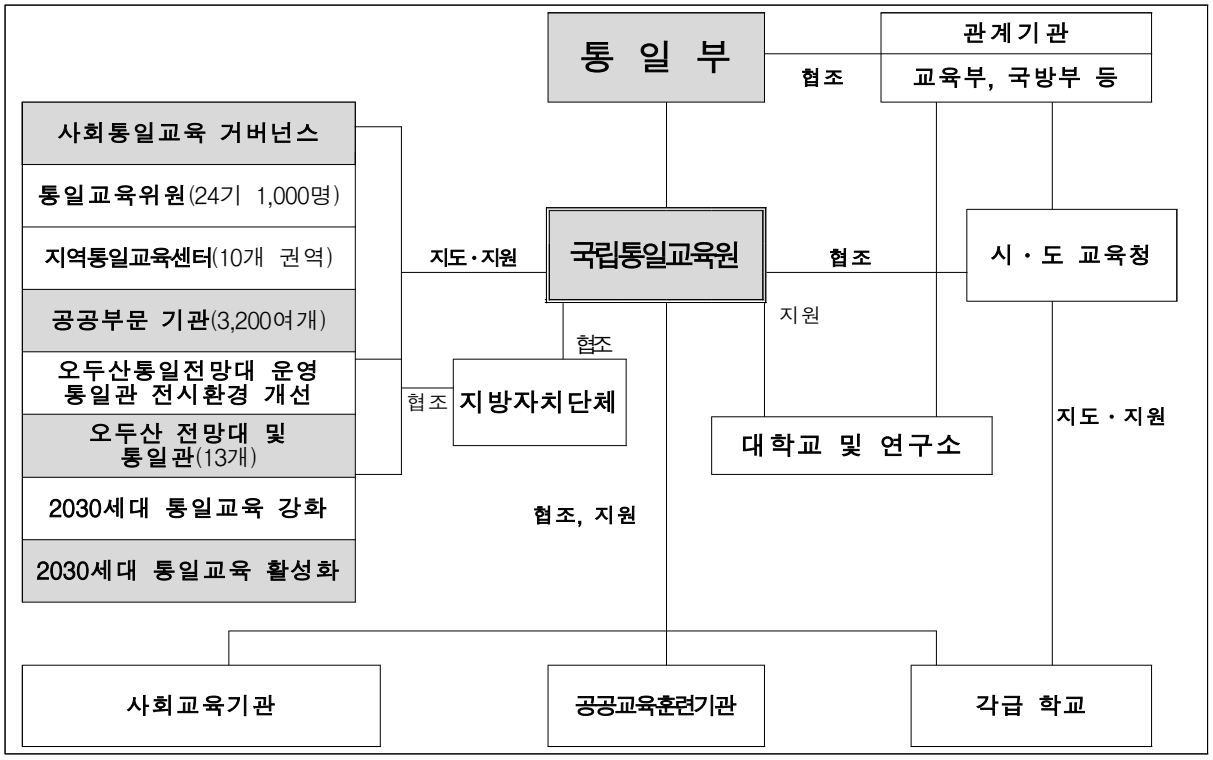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정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권역에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또한, 1987년부터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들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영역의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통일교육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통일부는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일교육·전시 공간으로 오두산통일전망대와 전국에 12개 통일관을 운영 중이며, 동 세부사업의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

< 사회통일교육 사업체계 >



자료: 통일부

4)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5031-507)

국립통일교육원 사이버통일교육센터사업은 공공, 교원, 일반국민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4억 8,400만원 중 4억 8,100만원이 집행되었고, 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84	484	-	-	484	481	3	99.4	99.4

자료: 통일부

5)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5033-308)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사업은 국립통일교육원 청사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노후한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시설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4억 6,500만원 중 14억 2,800만원이 집행되었고, 3,7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465	1,465	-	-	1,465	1,428	37	97.4	97.4

9. 통일행정지원(7000 프로그램)

가. 개 요

‘통일행정지원’ 프로그램은 통일부 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여건 조성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통일부 직원 인건비, 본부 및 소속기관 기본경비 등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4년도 예산현액 656억 6,500만원 중 595억 2,7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7%임.

< 2024년도 통일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61,330**	**66,562**	**66,562**	**65,665**	**59,527**	**63,337**
□ 인건비(7001 단위사업)	44,590	48,454	48,454	47,380	42,286	44,763
□ 본부 기본경비(7011 단위사업)	5,078	5,360	5,360	5,450	5,035	5,326
□ 소속기관 기본경비(7018 단위사업)	3,207	3,251	3,251	3,331	3,135	3,327
□ 통일업무 R&D(7031 단위사업)	292	271	271	271	263	438
□ 통일업무지원(7032 단위사업)	461	1,085	1,085	1,085	1,040	1,118
□ 대북활동지원(7033 단위사업)	1,386	1,882	1,882	1,882	1,572	1,992
□ 통일정보화(7034 단위사업)	1,914	1,837	1,837	1,837	1,815	1,955
□ 본부 전산운영(7035 단위사업)	4,404	4,422	4,422	4,429	4,381	4,418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기관운영 및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경비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7억 9,800만원 중 18억 1,9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101.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액은 8,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900만원임.

< 2024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798	1,798	80	58	1,936	1,819	29	101.1	94

자료: 통일부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파견관 행정비용 연례적 불용

통일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관련 국제사회 여론 형성 및 다자외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에 201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파견관을 지속적으로 파견해 왔음.

< 2020~2024년 파견 현황 >

직급	성명	파견기간	비고
서기관	강OO	2020.8.7.~2022.5.31.	
서기관	강OO	2020.6.1.~2022.8.31.	파견 연장

자료: 통일부

< 2020년~2024년 파견관 행정비용 예산 집행 현황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0	14	14	25	-	-	38	21	-	17
2021	21	21	-	-	-	21	20	-	1
2022	19	19	-	-	-	19	-	-	19
2023	18	18	-	-	-	18	-	-	18
2024	19	19	-	-	-	19	-	-	19

자료: 통일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파견관 행정비용[68]은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왔는바, 2022년도 코로나

68) 해외이전(340) 1,900만원
- 국제부담금(340-02): UNESCAP 파견관 행정비용

19 팬데믹의 여파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파견이 일시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도 파견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2022년 이후 매년 UNESCAP 파견관 행정비용 약 1,900만원을 그 편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하여 불용 처리되고 있음.

통일부는 동 사업은 대북제재·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등으로 북한 인력이 복귀하는 등 여건이 불비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23년, '24년 행정비용이 미집행되었으나, 향후 북한동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 재개를 고려 중이며 이 경우 파견관 파견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함.

이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의 협력 필요성과 파견 재개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에 그치는 것인 바, 사업 재개 결정 시 파견관 파견이 즉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 재개 가능성과 관련된 파견 추진 일정이나 인력 선발 계획, 국제기구와의 협의 상황 등 구체적인 재개 일정 또는 현실화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들은 결여된 채 필요성 등만에 입각하여 관련 예산만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목적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반복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합목적성과 집행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것임.

향후 통일부는 UNESCAP 파견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수립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낮거나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관련 행정비용 편성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국제기구 파견 사업은 외교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구조와 연계성이 필요한바,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실현 가능한 중장기 파견 전략과 연동된 예산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불용 예산의 반복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10, 7011-260)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10)는 통일협력국 신설(2023.9.8.)에 따라 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기본경비로, 2024년도 예산액 9,500만원 중 7,900만원 집행되고 1,600만원이 불용됨.

< 2024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95	95	-	-	95	79	16	83.2	83.2

자료: 통일부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60)는 통일협력 관련 정책 수립 및 통일인식 확산 사업 추진 등 통일협력국 소관 업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2억 6,700만원 중 1억 9,9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7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2024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67	267	-	±23 △38	229	199	30	75.0	86.9

자료: 통일부

□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기본경비 수요 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10)는 통일협력국 운영에 필요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특근매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비로, 2024년도에 9,500만원이 편성되어 7,900만원이 집행됨(집행률 83.2%).

이중 상용임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집행되었으나, 특근매식비와 기타운영비는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 2024년도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편성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세목별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7011-210)	상용임금(110-03)	56	56	100.0
	특근매식비(210-05)	21	8	38.1
	복리후생비(210-12)	1	1	100.0
	기타운영비(210-16)	6	4	66.7
	고용부담금(320-09)	11	10	90.9
	계	**95**	**79**	**83.2**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7011-260)	일반수용비(210-01)	94	44	46.8
	공공요금및제세(210-02)	6	1	16.7
	급식비(210-04)	2	2	100.0
	임차료(210-07)	17	9	52.9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3	-
	국내여비(220-01)	19	14	73.7
	국외업무여비(220-02)	69	56	81.2
	관서업무추진비(240-02)	34	27	79.4
	자산취득비(430-01)	26	23	88.5
	계	**267**	**199**	**74.5**

자료: 통일부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60)는 통일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책자문회의 운영 등 통일협력국 운영을 위한 경비로, 2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 1억 9,900만원이 집행됨(집행률 74.5%).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등 일부 세목의 집행률은 50% 내외로 저조하였고, 특히 시설장비유지비는 인천통일플러스센터 원상복구 비용 발생으로 인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2024년 7월 이관 확정 이후 일반수용비에서 자체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됨.

또한, 연도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이 정보분석국 또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내역변경되는 사례가 확인됨.

< 2024년도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60) 변경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4.11.1.)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7011-260)	240-02	2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40-02	예산국회 대비 등 관서업무추진비 부족액 충당
세목조정 (24.11.19)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7011-260)	210-01	23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7011-260)	210-09	인천통일플러스센터 원상복구 관련 시설장비유지비 부족액 충당
내역변경 (24.11.27.)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7011-260)	210-01	5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7011-258)	210-01	북한인물 동향 분석 관련 발간비용 등 일반수용비 부족액 충당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4.12.5.)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7011-260)	210-01	21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10-01	업무수첩 및 연하장 제작, 업무택시, 소송 및 법률자문 비용, '25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책자 인쇄비 등 일반 수용비 부족액 충당
		210-02	4			
		210-07	5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7011-260)	240-02	1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40-02	예산국회 대비 등 관서업무추진비 부족액 충당

자료: 통일부

통일협력국 기본경비의 전체적인 집행률 저조와 빈번한 세목조정 및 전용은 예산 편성과 집행이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시사함.

통일협력국 신설 이후 통일공감대 확산 등 사업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통일문화행사가 축소되었고, 주요국 출장 시 세미나 및 간담회 등 실무정책협의회 중심으로 사업을 간소화하면서 집행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인천통일플러스센터 이관 협의 지연으로 복구비가 발생하는 등 편성단계에서 수요 예측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음.

향후 통일협력국 기본경비는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실적과 사업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수요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세목조정 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주러시아 통일주재관 직위 복원 검토 필요[69]

통일주재관(이하 '통일관', Unification Attaché)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 외교부의 재외공관 파견 절차에 따라 주재국 공관에 배치되어 공관장의 통일 및 북한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그 주요 업무는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주재국 내 공감대 형성, 북한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현장 기반의 정책 반영 채널 역할 등임.

현재 독일, 미국, 중국 및 일본의 4개국에 통일관이 상주중이며, 주러시아 통일관은 직위 감축 대상에 해당되어 2025년 2월 임기 종료 후 폐지 예정인 상황임.[70]

< 주요국 통일관 현황 등 >

통일관 현황 (상주도시)	주요 활동	직위 설치 연도
독일(베를린)	독일통일 사례 조사 정부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확보	1990년 12월 (1999.8. 폐지되었다가 2012.8 재설치)
미국(워싱턴D.C.)	한-미 대북정책 공조 지원 미국 내 북한·한반도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등 네트워크 관리	1996년 8월
중국(베이징)	중-러 협력 동향 파악 북중 접경지역 주요 동향 파악 정부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확보	1996년 8월
일본(도쿄)	한-미-일 대북정책 공조 지원 납치자 문제 공조	1996년 8월
러시아(모스크바)	정부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확보 러-북 협력 동향 파악	2012년 8월 (2025.2. 파견 종료 및 폐지)

자료: 통일부

69) 통일주재관 관련 예산은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60) 중 국외여비(220-02)에 2024년도의 경우 '통일주재관 회의비' 600만원, 귀·부임 경비 3,950만원이 편성됨.

70) 외교부는 2022년 범정부 차원의 인력 효율화 방침에 따라,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관 인력에 대한 업무 수요 진단 결과를 반영, 주재관 감축 및 재배치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러 통일관을 포함한 9개 직위가 감축 대상에 포함됨.

러시아는 한반도 안보지형 변화 등 통일·대북정책 이행을 위한 핵심 파트너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이행, 북한 관련 결의안 채택 등 전략적 소통이 필요한 국가임.

최근에는 북러 간 군사·외교 협력 수준이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고, 러시아 내 북한 인력(근로자, 유학생 등)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주러 통일관의 정보 수집 및 정책적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주러 통일관 직위의 공백이 지속될 경우에는 북한 관련 현장 기반 정보의 공백이 발생하고, 러시아 내 우리 정부의 통일 관련 입장 전파 및 상호 정책대화 채널의 단절, 통일·대북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외교·정보당국 중심의 접근으로 통일부 시각에서의 접근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임.

러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남북관계에서의 전략적 위상, 최근 북·러 밀착 등 대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외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러시아 통일관 직위의 복원 및 상주 인력 재배치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3)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7011-258)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는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실태 파악·분석·평가 및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생산·배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경비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2억 8,700만원 중 2억 9,4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102.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200만원임.

< 2024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87	287	-	60 △51	296	294	2	102.4	99.3

자료: 통일부

□ 예산 미편성된 종료사업 잔여 물량에 대한 기본경비 활용 부적정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예산을 인건비, 기본경비 및 주요사업비로 구분하면서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본경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세부사업은 예산 구분 상 기본경비에 해당함.

통일부는 2024년 동 세부사업 예산 집행액 2억 9,400만원 중 7,800만원을 예산 구분 상 주요사업비에 해당하는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 소요경비로 집행하였음.[71)]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1533-302)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토대로 북한의 경제·사회·주민의식 관련 심층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 시작된 이래 2023년까지 추진되었으나 재정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2024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2023년에 종료된 사업임.[72)]

그런데 통일부는 2023년에 종료된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관련 경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동 세부사업에서 7,830만원,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 세부사업에서 1,57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9,400만원을 2024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71) 통일부는 2024년 동 세부사업 외에 국제통일기반조성 세부사업(1031-302)에서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관련 경비로 1,570만원을 집행하였음.

72) 연도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1,150	935	800	700	632	528	466	466	466	462	439	417	417	360	종료
집행액	799	739	680	638	597	493	429	447	421	449	414	397	376	348	

<2024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관련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량/횟수 등	집행 금액	예산과목
북한 경제사회 실태의 이해와 통일·대북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1회	20	7011-258-210-14
국문보고서 평가 사례비	전문가 1명	0.3	7011-258-210-0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보고서 감수 비용	기관 1회, 전문가 2명	9	7011-258-210-0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보고서 제작비	1,500부	20	7011-258-210-0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 리플릿 번역 사례비	전문가 3명	3	7011-258-210-0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리플릿 제작비	3,800부	7	7011-258-210-0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강의안 제작비	1회	18	7011-258-210-0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강의안 영문 번역 사례비	전문가 1명	1	7011-258-210-01
소계		78.3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보고서 설명자료 번역(일본어)	전문가 1명	0.7	1031-302-210-0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보고서 제작비(해외발송용)	500부	10	1031-302-210-0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보고서 해외 발송 대금	500부 배포	5	1031-302-210-01
소계		15.7	
합계		94	

자료: 통일부

세부적으로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의 이해와 통일·대북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 집행한 바 있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영문판) 제작비로 3,000만원 등을 2024년 예산으로 추가로 집행하였음.

< 2023년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등 발간 현황 >

(단위: 백만원)

발간물 명칭	수량	금액	예산과목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3,000부	60	1500-1533-302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국문 리플릿	5,200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 리플릿	3,000부		

자료: 통일부

이에 대해 통일부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홍보 관련 국내외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문보고서, 홍보물(리플릿, 강연자료)을 제작·발송하였고,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이 2023년에 종료되고 2024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고서의 홍보, 확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분석국 기본경비 등으로 추가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정부내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낮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사업의 필요성만으로 예산편성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관련 경비를 집행할 경우 정부 내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심의 과정도 형해화될 수밖에 없음.

또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경비와 같이 주요사업비성 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함.

따라서 통일부는 앞으로 기본경비의 성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주요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기본경비 등의 예산이 활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외업무여비 예산 연례적 조정 및 전용 부적정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중 국외업무여비는 북한 정세 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타 비목의 부족 재원으로 전용 또는 조정되었음.

< 2024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세목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287	287	-	60 △51	296	294	2
- 일반수용비(210-01)	178	178	-	24 △20	182	182	0.2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	3	-	10	14	13	0.6
- 급식비(210-04)	3	3	-	△1	3	3	-
- 임차료(210-07)	12	12	-	1	13	13	-
- 일반용역비(210-14)	-	-	-	20	20	20	0.3
- 국내여비(220-01)	12	12	-	5	16	16	-
- 국외업무여비(220-02)	15	15	-	△15	-	-	-
- 관서업무추진비(240-02)	35	35	-	△8	26	26	-
- 자산취득비(430-01)	29	29	-	△7	22	21	0.6
합 계	287	287	-	60 △51	296	294	2

자료: 통일부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00만원이 북한방송 위성 수신용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되었고, 450만원은 국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조정되었음.

<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4.9.13.)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7011-258)	220-02	10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7011-258)	210-02	북한방송 위성 수신용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4.10.8.)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7011-258)	220-02	4.5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7011-258)	220-01	국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자료: 통일부

그런데 동 세부사업 내 국외업무여비는 2022년 및 2023년에도 편성된 예산이 전액 타 사업의 재원이나 동 사업 다른 비목의 부족재원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및 2023년 국외업무여비(220-02)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편성	이·전용 등	이·전용등 내역
2022	16	16	(자체전용)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연구비 부족분 충당(16백만원)
2023	15	15	(세목조정) 국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15백만원)

자료: 통일부

이처럼 편성된 예산을 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타 사업의 부족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임.

통일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기본경비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비목별로 그 필요성 및 정확한 소요를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4) 정책연구개발(7031-300)

정책연구개발은 통일 및 북한문제 등과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소 등의 외부전문가에게 정책개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하여 통일·대북정책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2억 7,100만원 중 2억 6,3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97.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800만원임.

< 2024년도 정책연구개발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71	271	-	-	271	263	8	97.2	97.2

자료: 통일부

5) 통일업무지원(7032-303)

통일업무지원 사업은 정부혁신·창의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통일부 기록물 및 민간분야 통일사료 수집을 통해 통일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체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자료 제작 및 합동 절차연습을 시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의무 이행을 통한 안전보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며, 재난대응 태세 구축을 통해 유사시 정부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일경험 및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준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0억 8,500만원 중 10억 4,0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9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4,500만원임.

< 2024년도 통일업무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085	1,085	-	±24	1,085	1,040	45	95.9	95.9

자료: 통일부

Ⅲ. 2024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결산 개요

1. 남북협력기금 결산 총괄

가. 기금 총괄

2024년도 남북협력기금 수입·지출 결산액은 7,965억원(전년 6,629억원)으로 계획현액(1조 5,874억원) 대비 50.2%임.

수입금 7,965억원 중 6,064억원을 사업비·기금운영비·공자기금예수금상환 등에 지출하고, 1,901억원은 여유자금[73]으로 운용하였음.

< 수입·지출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	계획현액 (A)	실 적 (B)	달성률 (B/A)
수입	합 계	1,584,114	-	1,584,114	796,466	50.3
	자 체 수 입	43,638	-	43,638	13,105	30.0
	정부내부수입	1,456,476	-	1,456,476	620,000	42.6
	여유자금회수	84,000	-	84,000	163,361	194.5
지출	합 계	1,584,114	3,300	1,587,414	796,466	50.2
	사 업 비	872,235	3,300	875,535	32,987	3.8
	기금운영비	2,239	-	2,239	2,178	97.3
	공자기금원리금상환	596,209	-	596,209	571,211	95.8
	여유자금운용	113,431	-	113,431	190,091	167.6

자료: 통일부

73) 기금 여유자금이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을 의미한다. 여유자금은 운용기간에 따라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으로 분류된다. 단기자산은 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자산으로서 연중 사업에 집행될 "사업대기성 자금"과 연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 유동성 자금"의 용도로 활용된다. 중장기자산은 장래 지출수요에 대비하거나, 기금의 향후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1년 이상 운용되는 자산을 의미하며, 확정금리형, 채권형, 주식형, 대체투자 등의 자산군으로 구성된다.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2018. 10. 15. 기획재정부훈령 제396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가.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나. 수입 결산

2024년도 남북협력기금 수입총계는 7,965억원으로, 계획현액 1조 5,841억원 대비 50.3%임.

자체수입은 131억원(전년 132억원)으로 계획액 436억원 대비 30.0%이고,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은 주로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감소에 기인함.

정부내부수입은 6,200억원으로 계획액 1조 4,565억원 대비 42.6%이며, 여유자금회수는 1,634억원으로 계획액 840억원 대비 194.5%임.

< 수입 결산 세부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4당초계획	'24계획현액 (A)	실 적 (B)	달성률 (B/A)	비고
총 계	1,584,114	1,584,114	796,466	50.3	
자체수입	**43,638**	**43,638**	**13,105**	**30.0**	
○ 재산수입	6,502	6,502	4,706	72.4	
▪ 건물대여료	40	40	35	87.5	미래센터 임대료
▪ 기타민간이자수입	3,856	3,856	1,498	38.8	대출이자수입
▪ 기타재산수입	2,606	2,606	3,173	121.8	여유자금운용수입
○ 경상이전수입	11,399	11,399	2,237	19.6	
▪ 민간출연금	150	150	900	600.0	자발적 민간출연
▪ 기타경상이전수입	11,249	11,249	1,337	11.9	사업비 정산·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177	3,177	56	1.8	
▪ 기타잡수입	3,177	3,177	56	1.8	미래센터 연수비 등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2,560	22,560	6,106	27.1	
▪ 융자원금회수	22,560	22,560	6,106	27.1	대출원금 회수
정부내부수입	**1,456,476**	**1,456,476**	**620,000**	**42.6**	
○ 일반회계전입금	100,000	100,000	100,000	100	정부출연금
○ 공자기금예수금	1,356,476	1,356,476	520,000	38.3	경수로 차입금 상환
여유자금회수	**84,000**	**84,000**	**163,361**	**194.5**	운용기관예치원금회수

자료: 통일부

다. 지출 결산

2024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총계는 7,965억원으로 계획현액 1조 5,874억원 대비 50.2%임.

사업비 집행액은 330억원(전년 224억원)으로 계획현액 8,755억원 대비 3.8%이고, 기금운영비는 22억원으로 계획현액 22.4억원 대비 97.3%이며, 공자기금예수금원리금상환은 5,712억원으로 계획현액 5,962억원 대비 95.8%이고, 여유자금운용은 1,901억원으로 계획현액 1,134억원 대비 167.6%임.

< 지출 결산 세부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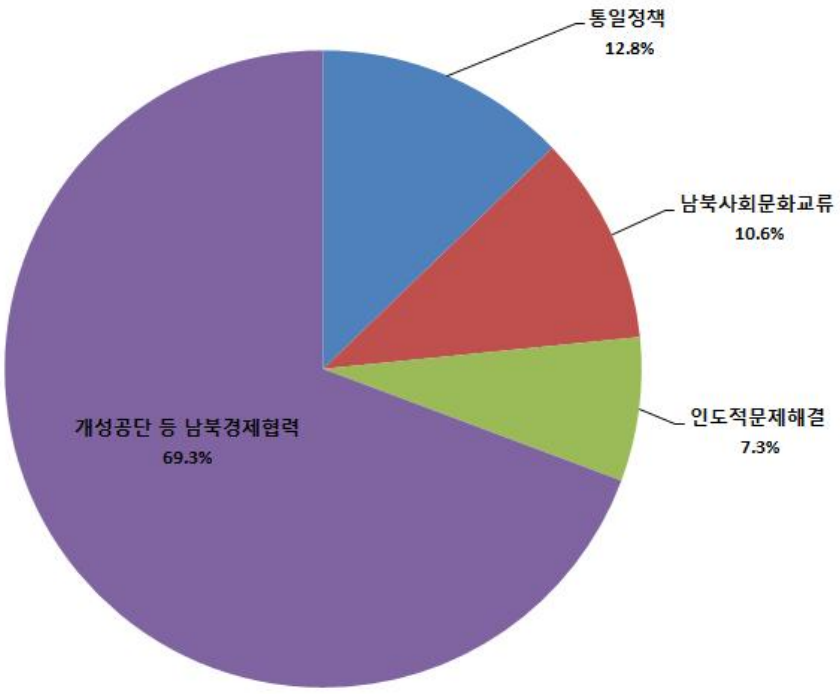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			실적 (B)	달성률 (B/A)
		'24년 계획(당초)	전년도 이월	계획 현액(A)		
사업비	통일정책	4,592	-	4,592	4,220	91.9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4,592	-	4,592	4,220	91.9
	남북사회문화교류	15,951	-	15,951	3,486	21.9
	- 사회문화교류지원	15,951	-	15,951	3,486	21.9
	인도적문제해결	589,498		589,498	2,426	0.4
	- 이산가족교류지원	17,877	-	17,877	1,663	9.3
	- 구호지원	96,307	-	96,307	-	-
	- 민생협력지원	475,314		475,314	763	0.1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262,194	-	265,494	22,855	8.6
	- 경제교류협력보험	3,847	-	3,847	-	-
	- 경협기반(무상)	127,152	3,242	130,694	15,921	12.2
	- 경협기반(융자)	99,014	-	99,014	-	-
	-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9,000	-	9,000	-	-
	- DMZ 평화적 이용	9,408	58	9,466	1,767	18.7
	- 개성공단 운영 대출	6,626	-	6,626	-	-
	- 개성공단 기반조성	7,147	-	6,847	5,168	75.5
	소 계	872,235	3,300	875,535	32,987	3.8
기금운영비		2,239	-	2,239	2,178	97.3
공자기금예수금 원리금상환		596,209	-	596,209	571,211	95.8
여유자금운용		113,431	-	113,431	190,091	167.6
총 계		1,584,114	3,300	1,587,414	796,466	50.2

자료: 통일부

2024년 기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에서 각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비 총 지출액 329억 8,700만원 중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이 약 69.3%(228억 5,500만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통일정책 프로그램이 약 12.8%(42억 2,000만원), 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약 10.6%(34억 8,600만원),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약 7.3%(24억 2,600만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4년 결산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중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 >



자료: 통일부

최근 3개년간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집행 현황을 분야별로 보면,

통일정책의 경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체험연수 운영과 시설관리 운영은 경상경비 지출 등으로 3년간 평균 집행률은 89.4%[('22) 84.6% → ('23) 91.7% → ('24) 91.9%]로 양호한 편임.

남북사회문화교류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등으로 집행률은 17.7%를 기록하였고, 인도적 문제해결 및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경우 최근 3개년 모두 저조한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최근 3개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3년간 평균 집행률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통일정책	3,415	2,888	84.6	3,660	3,357	91.7	4,592	4,220	91.9	89.4
남북사회 문화교류	22,095	3,353	15.2	21,520	3,456	16.1	15,951	3,486	21.9	17.7
인도적 문제해결	661,489	4,393	0.7	730,004	1,745	0.2	589,498	2,426	0.4	0.4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595,278	67,282	11.3	454,934	13,876	3.1	265,494	22,855	8.6	7.7
합 계	1,282,277	77,916	6.1	1,210,118	22,434	1.9	875,535	32,987	3.8	3.9

자료: 통일부

2. 남북협력기금 수입 결산 검토

가. 건물대여료

‘건물대여료’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 및 시설 대관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 수입으로, 2024년도 계획액은 4,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실적은 3,500만원임.

< 2024년도 건물대여료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40	-	40	35	35	-	87.5

자료: 통일부

전년(15백만원, 38.6%) 대비하여 계획액 대비 수납률은 87.5%로,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24년도 건물대여료 수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구내식당 위탁운영	12	7	7	-
시설 대관	28	28	28	-
합 계	40	35	35	-

자료: 통일부

나.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재산수입 중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은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의 융자금으로부터 회수되는 이자수입으로, 2024년 계획액은 38억 5,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억 3,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억 9,8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은 38.8%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는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에 대한 대출원금 회수 수입으로, 2024년 계획액은 225억 6,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2억 4,700만원이며 수납액은 61억 6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은 27.1%임.

< 2024년도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A)	이체 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기타민간 이자수입	3,856	-	3,856	4,530	1,498	2,893	139	38.8
기타민간 융자원금회수	22,560	-	22,560	37,247	6,106	27,223	3,918	27.1

자료: 통일부(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4.12월말 결산일 기준)

기타민간이자수입과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최근 5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남북경협 중단 및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협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년마다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74]를 실시하고 있는 바, 경협기업의 규모가 대체로 영세하며 최근에는 코로나19,

74)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환 유예와 기존 대출에 대해 금리 조정{예시: 2021년의 경우에도 21. 6. 10. 기준 기금대출 연체가 아니며, 금리가 1.5% 이상인 대출[264개사(중복제외), 394건 대출잔액 245,488백만원]에 대해 0.5%p인하. 이자경감 규모는 연간 약 12억 3천만원}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이자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원금 수납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기타민간 이자수입	2020	4,992	2,850	1,712	34.3	60.0
	2021	4,062	3,052	1,384	34.1	45.3
	2022	3,411	2,513	804	23.6	32.0
	2023	3,856	3,604	1,440	37.3	40.0
	2024	3,856	4,530	1,498	38.8	33.1

구 분	연 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기타민간 융자원금 회수	2020	62,143	32,555	10,552	17.0	32.4
	2021	73,099	36,798	9,218	12.6	25.0
	2022	10,600	32,522	6,166	58.2	19.0
	2023	18,241	32,178	5,280	28.9	16.4
	2024	22,560	37,247	6,106	27.1	16.4

자료: 통일부

참고로, 금강산 관광 중단(2008. 7.) 및 5.24 조치(2010), 개성공단 가동 중단(2016) 이후 남북경협 중단 지속으로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고려하여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212개 기업 1,746억원 규모임.

<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상환 유예 현황 >

(단위: 개사,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개성공단	기업수	112	104	96	95	94
	금액	68,046	85,476	79,077	78,227	76,712
개성공단 외	기업수	154	144	135	135	120
	금액	99,797	149,798	48,216	63,181	55,274
합 계	기업수	264	247	229	228	211
	금액	167,843	235,274	127,293	141,408	131,986

자료: 통일부(중복 제외)

기타민간이자수입과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징수결정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원리금 만기가 도래한 금액으로, 상환유예 또는 만기연장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에서 제외됨.

< 2024년 남북협력기금 융자 잔액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24년말 융자잔액	융자대상	2024년 만기도래액(원금)			
			계	상환액	상환유예	미상환액
경협기반(융자)[주1]	309,431	조선무역은행	-	-	-	-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171,464	㈜아난티 등 178개	63,920	4,533	55,274	4,113
개성공단운영대출	181,253	재영솔루텍㈜ 등 119개	121,087	1,573	119,307	207
계	662,149[주2]	284개[주3]	185,007	6,106	174,581	4,320

자료: 통일부

주1) 2007년 조선무역은행 앞 차관방식으로 제공한 경공업차관(북측의 의복,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자재장비차관(경의선, 동해선 북측구간 철도, 도로 및 역사 기자재관련 차관)

2) 미달러화 대출은 '24.12.31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1,470.0원) 적용하여 원화 환산

3) 중복 기업수 제외

2024년말 기준 해당 회계연도에 원리금 만기가 도래한 금액 중 상환 유예 또는 만기 연장 경우 등을 제외한 징수결정액은 융자금 372억 4,700만원, 이자 45억 3,000만원이나, 이를 상환하지 못한 융자금 및 이자의 연체 규모는 42개 기업 301억 1,600만원임.

< 남북협력기금 원금 및 이자 연체내역 >

(단위: 개사, 백만원)

구 분		원금(A)		이자(B)		계(A+B)	
		기업	금액	기업	금액	기업	금액
경협대출		3	7,375	3	543	3	7,918
특별대출	교역·경협·금강산	24	10,240	24	1,656	24	11,896
	개성공단	15	9,608	15	694	15	10,302
교역대출		-	-	-	-	-	-
합 계		42	27,223	42	2,893	42	30,116

자료: 통일부(중복기업 수 제외)

대출 원리금 연체 사유는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5.24조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경협·교역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 및 사업기반 약화임.

다.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운용수익 등으로, 2024년도 계획액 26억 600만원의 121.8%인 31억 7,300만원이 수납되었음.

< 2024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2,606	-	2,606	3,173	3,173	-	121.8

자료: 통일부

전반적인 이자율 하락 기조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이 하락하여 전년(수납액: 33억 3,800만원) 대비 수납액이 감소하였음.

라.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기금 무상사업비를 개산급[75]으로 지급한 이후 그 정산에 따른 환입금 수입 및 지난 2013년,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시 지급된 경협보험금 회수액으로, 2024년 계획액은 112억 4,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3억 3,700만원으로 수납률은 11.9%임.

<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11,249	-	11,249	1,337	1,337	-	11.9

자료: 통일부

세부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환입금 수입으로 11억 6,500만원과 경협보험금 반납으로 1억 7,200만원이 수납되었음.

<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환입금 수입	3,547	1,165	1,165	-
경협보험금 환입	7,702	172	172	-
합 계	11,249	1,337	1,337	-

자료: 통일부

‘환입금 수입’ 11억 6,500만원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환입금 6억 8,300만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환입금 4억 5,300만원 등에서 발생하였음.

75) 개산급(概算給): 갚거나 주어야 할 돈의 액수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 금액을 미리 대강 계산하여 주는 일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환입금 수입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환입금	68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환입금	453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사업 환입금	11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환입금	11
이산가족 교류촉진 사업 환입금	4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 운영 사업 환입금	2
기타(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 환입금 등)	1
합 계	1,165

자료: 통일부

한편, ‘경협보험금 환입수입’은 당초 계획액을 77억 200만원으로 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억 7,258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2.2%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중단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기업들이 반납해야 하는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경협보험금 환입관련 현황을 보면 약관[76]에 따라 경협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이를 남북협력기금의 세입으로 회수하고 있음. 2013년의 경우 4월 개성공단 사업 중단 후 지급된 59개 기업대상 보험금 1,761억원에 대해서는 같은 해 9월 개성공단 재개 이후 총 1,311억원을 연차적으로 기금의 세입으로 환입 받았음.

76) **「지분 등 투자보험 약관」 제27조의2(대위권 등의 행사)**
③ 기금은 대위권 등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반납기한을 정하여 보험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경상이전수입 경협보험금 연도별 반납 현황 >

(단위 : 개사, 억원)

연 도	기업수	반납금액	비 고
2013년	40	1,166	
2014년	10	87	6개기업 중복
2015년	7	54	7개기업 중복
2016년	-	-	가지급금 초과지급분 및 회수금 통지 지연에 따른 초과지급분 반환 제외
2017년	-	-	-
2018년	-	-	-
2019년	1	0.1	1개기업 중복
2020년	1	0.4	1개기업 중복
2021년	1	0.6	1개기업 중복
2022년	1	1	1개기업 중복
2023년	1	1.2	1개기업 중복
2024년	1	1.1	1개기업 중복
합 계	44	1,311	연도별 중복 반납기업 제외

자료: 통일부

그리고 2013년 보험금을 지급받고 사업 재개 이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피해기업에게 지원해야 할 피해지원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지원한 바 있음. 따라서 기금관리주체인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업이 다시 재개되지 아니하는 한 보험금 환입 대상 기업은 없다는 입장임.

< 2013년 개성공단 재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경협보험금 미반납 현황 >

(단위 : 개사, 억원)

보험금 지급		보험금 회수		사업 포기		보험금 미회수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59	1,761	44주)	1,311	5	59	14주)	391

자료: 통일부(2024년 말 기준, 보험금 일부반납기업 4개사 포함)

마.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은 교역보험 및 경제협력사업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 수입,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자 연수비 및 숙박비 등으로, ’24년 계획액은 31억 7,700만원이고 수납액은 5,600만원으로 수납률은 1.8%임.

< 2024년도 기타잡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3,177	-	3,177	56	56	-	1.8

자료: 통일부

세부내역을 보면,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2017년 이후 교역·경협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수입은 계속 없었고, 통신관로 임차료 수입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KT간 체결한 「남북철도시설이용에 관한 계약」(2018. 1. 20.)에 따라 KT로부터 통신관로 사용료를 약 700만원 수납하였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비의 경우 2024년 통일체험연수가 활성화되면서 전년(21백만원) 대비 증가한 약 4,900만원을 징수·수납함.

< 기타잡수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보험료 수입	3,046	-	-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비	131	49	49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통신관로 임차료 수입 등	-	7	7	-
합 계	3,177	56	56	-

자료: 통일부

바.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일반회계전입금은「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으로 2024년도 계획액 1,000억원을 수납하였음. 수납액은 2024년에 도래하는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예수금의 이자 상환분 512억 1,100만원과 남북협력사업비 충당분 487억 8,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이하 “기금예수금”)은 경수로사업 관련 공자기금 원금상환과 남북협력사업 수요의 변동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만으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예수하는 것으로, 2024년도의 경우 당초 계획액은 1조 3,564억 7,600만원이었으나, 계획액의 38.3%인 5,200억원을 수납하였음.

< 2024년도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	-	100,000	100,000	100,000	-	100
공자기금 예수금	1,356,476	-	1,356,476	520,000	520,000	-	38.3

자료: 통일부

기금예수금 5,200억원은 경수로사업 관련 기존 공자기금 예수 원금 중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며, 남북협력사업 관련 계획액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사업 집행률 저조와 여유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예수하지 않음.

3. 남북협력기금 지출 결산 검토

가. 통일정책

‘통일정책’ 프로그램은 접경지대에 남북교류의 공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남북청소년 교류 및 국내외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연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도 통일정책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결 산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3,357	4,592	4,220	5,043
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3,357	4,592	4,220	5,043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최대 40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일체험 연수시설이자 남북교류 지원시설로, 2014년 11월 개관하여 2015년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음.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현황 >

o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
o 총 사업비: 493억원(건축비)
o 사업 기간: 2011년~2014년(2014년 9월 준공, 11월 개관)
o 시설 규모: 부지 273,074㎡(약 82,600평), 건축연면적 17,362㎡(약 5,200평)
- 주요시설 현황: 운영센터 및 연수관(지상 2층), 체험관, 체육관 및 식당, 생활관(4층), 가족빌리지, 직원숙소,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야외공연장, 한반도 투어링장 등
o 최대 수용인원: 408명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통일체험연수는 전국 일선 학교(초·중·고)를 대상으로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과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해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초청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온라인 통일미래체험 프로그램과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 총 227개 학교·단체 등, 연인원 38,257명 대상의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하였음.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의 2024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42억 2,0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현액(45억 9,2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1.9%임.

< 2024년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4,592	0	4,592	4,220	-	372	91.9	91.9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의 집행률은 전년(91.7%) 대비 근소하게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탈북청소년 한마음 체육대회, 주한유학생·재외동포 대상 통일체험연수 등 기존 대비 연수 대상 확대와 콘텐츠의 적극적 발굴·개편 등으로 인한 결과로 설명됨.

나. 남북사회문화교류

‘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은 남북간 주민 왕래 및 사회문화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해 남북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상호 호혜적 관계 구축 및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은 예산구조 개편을 거쳐 2016년부터 ‘남북사회문화교류’라는 1개의 단위사업 아래에 ‘사회문화교류 지원’이라는 1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되었음.

< 2024년도 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획	결산	
1. 남북사회문화교류	3,456	15,951	3,486	10,368
가. 사회문화교류지원	3,456	15,951	3,486	10,368

자료: 통일부

1) 남북사회문화교류

가) 사회문화교류지원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은 남북한 주민 왕래 및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사회문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통해 사회문화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극복과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남북협력기금법」제8조제1호 및 제2호[77]에 근거하여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액 159억 5,100만원의 21.9%인 34억 8,600만원이 집행되고, 124억 6,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15,951	-	15,951	3,486	-	12,465	21.9	21.9

자료: 통일부

2024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학술협력사업은 계획액 26억 400만원 중 92.1%인 23억 9,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인적왕래·기타협력사업은 계획액 133억 4,700만원 중 8.2%인 10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음.

77)「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환경,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8. (생 략)

< 2024년도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교육학술협력사업	2,604	-	2,604	2,398	-	206
·인적왕래·기타협력사업	13,347	-	13,347	1,088	-	12,259
합 계	15,951	-	15,951	3,486	-	12,465

자료: 통일부

인적왕래·기타 협력사업으로 집행된 10억 8,800만원의 내역은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3억 7,300만원,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및 활용 5억 9,300만원,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 운영 1억 2,200만원임.

< 2024년도 기타협력사업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승인액	집행액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373	373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및 활용	593	593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 운영	122	122
합 계	1,088	1,088

자료: 통일부

다. 인도적 문제해결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교류를 촉진하고,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재해 등 복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① 이산가족교류지원, ② 대북인도적 지원의 총 2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 2024년도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획	결산	
□ 이산가족교류지원	993	17,877	1,663	13,408
○ 이산가족교류지원	993	17,877	1,663	13,408
□ 대북인도적지원	752	571,621	763	588,115
○ 구호지원	-	96,307	-	112,230
○ 민생협력지원	752	475,314	763	475,885

자료: 통일부

1) 이산가족교류지원

가) 이산가족교류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은 남북 당국 간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산의 고통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계획액 178억 7,700만원 중 16억 6,3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9.3%임.

< 2024년도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17,877	-	17,877	1,663	-	16,214	9.3	9.3

자료: 통일부

세부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이산가족교류활성화기반조성 사업에 16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산가족상봉행사 사업과 이산가족면회소운영 사업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변경)	결 산	
○ 이산가족교류지원	993	17,877	1,663	13,408
· 이산가족상봉행사	-	11,621	-	9,324
· 이산가족교류활성화기반조성	993	1,893	1,663	1,093
· 이산가족면회소운영	-	4,363	-	2,991

자료: 통일부

2) 대북인도적지원

‘대북인도적지원’ 사업은 북한의 식량·경제·재해 등 인도적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과 농축산·산림·환경협력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등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북인도적지원 1개의 단위사업 아래 구호지원 및 민생협력지원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4년도 대북인도적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획	결산	
○ 대북인도적지원	752	571,621	763	588,115
· 구호지원	-	96,307	-	112,230
· 민생협력지원	752	475,314	763	475,885

자료: 통일부

가) 구호지원

‘구호지원’ 사업은 북한 지역의 자연재해 및 전염병, 식량난 등 인도적 위기상황 발생 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북한주민의 고통 경감 및 기본적 생존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은 963억 700만원이었으나 당국간 지원 합의가 없어 전액 미집행 되었음.

< 2024년도 구호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96,307	-	96,307	-	-	96,307	-

자료: 통일부

나) 민생협력지원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통해 통일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축산 협력 및 산림 복구, 환경,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78]

2024년 계획액 4,753억 1,400만원 중 7억 6,300만원이 집행되고, 4,745억 5,100만원이 불용됨으로써 집행률은 계획액 대비 0.1%임.

< 2024년도 민생협력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475,314	-	475,314	763	-	474,551	0.1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인도적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사업은 계획액 10억 6,300만원 중 71.8%인 7억 6,300만원이 대북지원협력사업 통합관리체계구축 사업 등에 집행되었음.

내역사업 중 북한영유아 등 지원, 보건의료협력,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사업은 북한의 국경 봉쇄 및 외부지원 미수용 등 사업 추진 여건 악화로 전액 불용되었음.

78) 2016년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개발협력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5년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세부사업을 ‘중점 인도적 지원’에 통합하고 명칭을 ‘민생협력지원’으로 변경하여, 예산구조를 주체와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체계에서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였고,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기존 ‘중점인도적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북한영유아 등 지원, 보건의료협력,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 2024년도 민생협력지원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북한영유아 지원	87,134	87,134	-	87,134	-	-	87,134
·보건의료협력	99,416	99,416	-	99,416	-	-	99,416
·농축산산림환경협력	287,701	287,701	-	287,701	-	-	287,701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	1,063	1,063	-	1,063	763	-	300
합 계	**475,314**	**475,314**	**-**	**475,314**	**763**	**-**	**474,551**

자료: 통일부

라.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은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 기반을 조성하고, 개성공단 내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 및 공단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현장에서 공단을 관리·운영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단위사업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에 경제교류협력보험, 경협기반(무상), 경협기반(융자),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DMZ 평화적 이용 5개의 세부사업과 단위사업 개성공단 조성에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및 개성공단 기반조성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4년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결 산	
□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6,736	248,421	17,687	176,191
○ 경제교류협력보험	-	3,847	-	2,501
○ 경협기반(무상)	3,908	127,152	15,921	102,649
○ 경협기반(융자)	-	99,014	-	59,051
○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	9,000	-	5,850
○ DMZ 평화적 이용	2,828	9,408	1,767	6,140
□ 개성공단 조성	7,140	13,773	5,168	4,964
○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2,027	6,626	-	2,819
○ 개성공단 기반조성	5,113	7,147	5,168	2,145

자료: 통일부

1)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가) 경제교류협력보험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은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대북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에는 보험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라 계획액 38억 4,700만원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4년도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3,847	-	3,847	-	-	3,847	-	-

자료: 통일부

나) 경협기반(무상)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등 남북 당국 간 합의 또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경협기반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무상지원을 통해 남북의 경제적 격차와 통일비용을 줄이고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도 계획현액은 1,306억 9,400만원으로, 이 중 159억 2,1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계획현액 대비 12.2%임.

< 2024년도 경협기반(무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127,152	3,242	130,694	15,921	-	114,773	12.5	12.2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사업에 35억 3,100만원,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사업 90억 900만원, 경원선 철도 복원 사업에 2억 3,100만원,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사업에 31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경협기반(무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남북공유하천공동이용	14,421	14,421	-	14,421	-	-	14,421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3,371	3,671	-	3,671	3,531	-	140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73,801	73,801	-	73,801	9,009	-	64,792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35,048	35,048	-	35,048	231	-	34,817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311	311	-	311	-	-	311
·남북관리구역통행체계 개선	200	200	3,242	3,442	3,150	-	292
합 계	**127,152**	**127,452**	**3,242**	**130,694**	**15,921**	**-**	**114,773**

자료: 통일부

□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업무 위탁비 집행 부적정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내역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부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위탁사업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6억 7,100만원 중 35억 3,1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4,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내역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3,371	3,671	-	3,671	3,531	-	14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371	3,671	-	3,671	3,531	-	140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해산[79]에 따라, 동 재단이 수행하던 사업[80] 중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사업을 남북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하였고, 이에 필요한 경비 3억원을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내역사업 내 민간위탁사업비를 증액(당초 33억 7,100만원 → 수정 36억 7,100만원)하여 집행하였음.

재단 해산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재산권 보호

79) 통일부는 2024년 3월 22일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각 호(아래 주석 참조)에 따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산을 결정함.

8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은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통일부는 2024년 3월 19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을 신설[81]하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공공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입장이나, 동 법률은 재단 업무의 위임·위탁·대행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단순히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도·감독 등) ⑤ 통일부장관은 재단이 법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후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업무의 위탁)에 근거하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82]에 위탁하였다고 설명함.

8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상근(常勤)으로 두어야 하는 임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통일부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3억원을 지원하였다는 것임.

< 계획변경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내역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협의변경 (‘24.7.31.)	320	02	남북교류 협력 민간위탁	+300	개성재단 해산 및 업무이관 관련 남북협력지원협회 남북협력기금 지원 * (3041-405)개성공단 기반조성 세부사업 세목 320-01(민간경상보조) : △300 감액하여 재원 마련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은 통일부의 설명은 모법(「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타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업무의 위탁)]에 근거하여 위탁하였다는 것이나, 국회 및 정부의 법제 기준에 따르면 권한의 위탁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의 근거 법률(모법)에 명시적인 위탁 근거를 두어야 함.

8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상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 기준 >

구분	국회(「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726	정부「법령입안심사기준」, p488
내용	권한의 위탁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함.	행정권한을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위탁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동 재단의 업무 수행 범위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재단의 업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 또한 해당 법률에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임.

통일부의 설명과 같이 시행령 개정 후 타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해당 업무의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업무를 그 청산 이후에는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소극행정으로 인한 국가재정상 손해 발생 여부 조사 실시 필요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내역사업은 철도·도로 등 남북 당국 간 합의 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남북 간 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738억 100만원 중 90억 900만원이 집행되었고, 647억 9,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내역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73,801	73,801	-	73,801	9,009	-	64,792
- 정책연구비 (260-02)	100	100	-	100	-	-	100
- 해외경상이전 (340-01)	2,500	2,500	-	2,500	-	-	2,500
- 민간경상보조 (320-01)	71,201	61,671	-	61,671	-	-	61,671
- 배상금 (310-02)	-	9,530	-	9,530	9,009	-	521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없었던 배상금 세목(310-02)을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내역사업에 신설하여 90억 900만원을 집행함.

이는 2022년 3월에 원고 A주식회사(이하 “원고”라고 함)가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라고 함)을 상대로 ‘미지급한 자재·장비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1심)에서 피고가 패소(2024. 7. 18.)하여 원고에게 원금 38억 6,700

만원과 그 지연손해금 51억 4,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0억 900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임.

< 배상금 지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배상액	비 고
①원금	3,867	
②지연손해금(～'24.12.19)	5,142	
- '08.9.28～'22.4.12	3,895	연 7.44%
- '22.4.13～'24.12.19	1,247	연 12%
합 계(①+②)	9,009	

* 법원 판결 : △'08.9.28.(대금지급 기한 익일) ～ '22.4.12.(피고 소장 송달 시점) 연 7.44%, △그 익일부터 연 1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11월, 피고는 화물열차 개통 일정이 촉박하여 기존 사업자인 원고에게 '先 자재·장비 제공, 後 비용 지급'을 구두 약속하였고, 원고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북한에 38억 6,700만원에 상당하는 자재 및 장비 등을 제공하였음.

그러나 예산당국과의 대금지급 관련 협의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무산되어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자재 및 장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임.

< 배상금 지급 관련 주요 경과 >

1. 미지급금 관련 경과

o 경의선·동해선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 동시 착공('02.9월), 원고와 북측 구간 공사용 자재·장비 제공용역 계약 체결('02.10월)

* 원고가 자재·장비를 공급하고 북한이 시공

o '07.11.16. 남북총리회담에서 12.11.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시작 합의

- 후속회담으로 열린 '07.11.21. 철도협력분과위 제1차 실무접촉에서 문산-봉동간 화

물열차 운행을 위한 자재·장비 제공 목록 합의

o ’07.11월, 화물열차 개통 일정이 촉박하여 기존 사업자인 원고에 ‘先 자재·장비 제공, 後 비용 지급’을 구두 약속 下 사업추진

* 화물열차 개통 : ’07.10.4. 정상회담 합의 → 11.16. 총리회담 합의 → 11.21. 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합의 → 12.11. 화물열차 운행 시작

o ’08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철도·도로 연결 공사 중단

- ’07.11.1.~’08.8.15. 원고의 대북 자재·장비 제공에 대한 비용 38.7억원 미지급

o 예산당국과 대금지급 관련 협의를 지속 추진하였으나, 예산 확보 무산

2. 소송 경과

o 원고, 통일부가 미지급한 자재·장비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소 제기(’22.3월)

o 1심 선고(7.18.), 원고 청구 인용,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원금 약 38.7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

* △원금 3,866,627,670원 △‘08.9.28.(대금지급 기한 익일) ~ ’22.4.12.(피고 소장 송달 시점) 연 7.44% △그 익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o 패소 판결 확정(’24.8.2.)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자료: 통일부

1심 판결 후 피고는 항소를 포기하였는 바,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금 의무가 발생됨에 따라 조속히 대금 지급을 완료하여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실제로 2008년부터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연손해금 51억 4,200만원은 원금의 1.3배에 달하는 규모이고, 특히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 2022년 4월 13일 이후 대금지급 완료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2억 2,300만원에 달함.

이는 대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의 지체, 특히 2016년 4월 이후 통일부와 예산당국과 간에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가 중단된 점이 지연손해금이 늘어난 주요 배경으로 보여짐.

< 예산당국과 통일부 간 예산 확보 관련 주요 협의 연혁 및 입장 >

○ 통일부는 '07.11월부터 원고가 先 투입한 자재·장비 대금 지급 문제를 '07.12월, '10.12월, '12.2월, '16.4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83]'에 상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였으나, 협의 결과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원고 先투입 자재·장비 대금 지급 문제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음.

자료: 통일부

그렇다면 통일부와 예산당국간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수행으로 배상 규모가 늘어나 국가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84]

통일부는 배상금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

---

8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4) 현행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조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임.

따라서 통일부 및 예산당국의 소극행정 등으로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점은 없는지 여부 및 민간기업에 부당하게 소송수행 등의 부담을 지게 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 경협기반(융자)

‘경협기반(융자)’ 사업은 사업의 공공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선사업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남북한간 경제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교류협력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에는 계획액 990억 1,400만원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4년도 경협기반(융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99,014	-	99,014	-	-	99,014	-	-

자료: 통일부

라)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은 해외 수출입 및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 위험도가 높고 일반 금융기관의 지원이 취약한 북측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에는 경제교류협력 자금대출 신규 대출수요 미발생에 따라 계획액 90억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4년도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9,000	-	9,000	-	-	9,000	-	-

자료: 통일부

마) DMZ 평화적 이용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은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실현을 위해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남북공동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임.

2024년도 계획현액은 94억 6,600만원임. 이 중 17억 6,700만원이 집행되고 76억 9,9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계획현액 대비 18.7%임.

< 2024년도 DMZ 평화적 이용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9,408	58	9,466	1,767	-	7,699	18.8	18.7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계획현액 11억 1,900만원 중 5억 3,200만원은 집행하고, 5억 8,700만원은 불용하였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계획현액 59억 5,200만원 전액 불용하였음.

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 사업의 경우 계획현액 21억 5,500만원 중 11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6,300만원은 불용하였으며, 남북철도·도로 출입 시설 역사관 운영 사업은 계획현액 2억 4,000만원 중 4,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7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4년도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	1,061	1,061	58	1,119	532	-	587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5,952	5,952	-	5,952	-	-	5,952
·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	2,155	2,155	-	2,155	1,192	-	963
·남북철도·도로 출입 시설 역사관 운영	240	240	-	240	43	-	197
합 계	**9,408**	**9,408**	**58**	**9,466**	**1,767**	**-**	**7,699**

자료: 통일부

□ 관행에 따른 예산 과다 편성 후 불용 부적정

「DMZ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은 DMZ 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및 콘텐츠 현행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통일부는 2024년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획액 7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8,700만원은 불용하였음.

<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 중 DMZ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리용역비(210-15)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	1,061	1,061	58	1,119	532	-	587
(DMZ통합시스템 운영)	761	761	-	761	474	-	287
-관리용역비(210-15)	761	761	-	761	474	-	287

자료: 통일부

「2024년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낙찰자 선정과정을 보면, 통일부는 2023년 10월 5일 제안요청서 작성하여 같은 해 10월 17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고, 같은 해 12월 14일 낙찰자를 선정하였음.

< 「2024년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약체결 경과 >

구분	제안 요청서 작성	조달청 계약의뢰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조달청 입찰공고 (유찰)	조달청 입찰공고 (수의)	낙찰자 선정
일자	'23.10.5.	'23.10.17.	'23.10.17.	'23.11. 1.	'23.12. 8.	'23.12.14.

자료: 통일부

그런데 통일부가 2023년 10월 5일 작성한 제안요청서 상 「2024년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소요예산이 4억 8,300만원에 불과함.

< 「2024년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산출내역서 >

(단위 : 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산출내역서		금 액
유지관리비	개발SW 유지보수비	50
	상용SW 유지보수비	18
	SW 운영(운영기획·사용자지원 등)	415
합 계		483

자료: 통일부

즉, 통일부는 「DMZ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소요경비가 4억 8,3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어도 2023년 10월 5일 이전에 인지하였음에도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85]에서 이를 감액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소요액을 과다편성(7억 6,100만원)하여, 2억 8,700만원이 불용되는 결과를 초래함.

< 2024년 예산안 외통위 심사 경과 >

구분	외통위 회부일	외통위 상정일	외통위 의결일
일자	2023. 9. 4.	2023.11. 9.	2023. 11.15.

85)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예산심사 경과

구분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외교통일위원회	2023.11. 9	2023.11.15	2023.11.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1. 3	2023.11.24	미의결

이에 대해 통일부는 다음 연도 유지관리 사업 발주 준비 시기인 2023년 9월 말에 2024년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금액(4억 8,300만원)을 산출하였으나, 2024년 예산편성 절차가 2023년 상반기 중에 진행됨에 따라 전년과 같은 금액(7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 2023년도 및 2024년도 세부 산출내역 비교 >

(단위: 백만원)

'23년 계획		'24년 계획	
계획	산출내역	계획	산출내역
761	○ 관리용역비(210-15) : 761 가.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761) ・시스템 유지관리비 : 761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SW 운영비 산정)	761	○ 관리용역비(210-15) : 761 가.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761) ・시스템 유지관리비 : 761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SW 운영비 산정)

하지만 이상과 같은 통일부의 설명은 예산(안) 및 계획(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사업 수요 및 단가 등을 정확히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및 계획(안)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통일부가 이러한 원칙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과거 관행에 따라 형식적으로 예산(안) 및 계획(안)을 편성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임.

예산 및 계획 편성 단계에서의 과다 편성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바, 향후 통일부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국회 심의 시 변화된 상황의 적시 반영 필요

판문점견학[86] 통합운영 내역사업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비무장화가 이루어진 판문점을 더 많은 국민들이 견학·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통일부는 2024년 계획액 21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11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6,300만원은 불용하였음.

< 판문점견학 통합운영 내역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판문점견학 통합 운영	2,155	2,155	-	2,155	1,192	-	963

자료: 통일부

동 내역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 94.2%, 2023년 64.0% 및 2024년 55.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최근 3년 간 판문점견학 통합운영 내역사업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2	2,056	2,056	234	2,290	1,936	94.2	-	354
2023	2,079	2,079	-	2,079	1,331	64.0	-	748
2024	2,155	2,155	-	2,155	1,192	55.3	-	963

자료: 통일부

86) 현재 판문점견학은 주 4일(화·수·금·토), 1일 총3회 실시되고 있는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견학 1회(40명 규모)와 국빈, 외교사절, 국내외 차관급 이상의 귀빈과 정부기관 및 통일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견학 2회로 나뉘어 운영됨.

이는 견학인원의 감소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22년 및 2023년에는 3,700여 명에 이르던 견학인원이 2024년에는 한·아프리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시에라리온 대통령 일행 41명이 유일한 견학인원임.

< 판문점 견학 일원화 이후 견학 인원 >

(단위: 회, 명)

연도	일반견학 횟수	인원	특별견학 횟수	인원	총횟수	총인원
2020년	38	1,285	6	198	44	1,483
2021년	89	1,605	27	380	116	1,985
2022년	73	2,329	64	1,320	137	3,649
2023년	83	2,835	44	938	127	3,773
2024년	-	-	1	41	1	41

※ 2023년 7월 18일 판문점에서 미군병사가 월북한 이후 판문점 견학 중단(2025.5월 중순, 특별견학 재개 예정)
자료: 통일부 (2020.11.이후 2025.5.7.까지)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2023년 7월 18일에 미군 병사 무단월북 사건 직후 판문점 견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함.

그런데 2023년 월별 견학 실적을 보면,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부터 견학인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2023년 8월부터는 일반견학 실적이 전무하였고, 통일부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시점(2023년 9월 1일)에는 이미 견학 중단 상황이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었으며, 그 재개 시점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었음.

<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월별 견학 현황 >

(단위: 회, 명)

구 분	일반견학		특별견학		합 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23년 1월	13	416	2	14	15	430
2월	14	489	4	53	18	542
3월	11	376	3	45	14	421
4월	14	479	10	235	24	714
5월	11	385	9	238	20	623
6월	14	488	11	243	25	731
7월	6	202	4	91	10	293
8월	-	-	-	-	-	-
9월	-	-	-	-	-	-
10월	-	-	-	-	-	-
11월	-	-	1	19	1	19
12월	-	-	-	-	-	-
2024년 6월	-	-	1	41	1	41
합계	83	2,835	45	979	128	3,814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이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오히려 최근 5년 내 최고 금액인 21억 5,500만원을 2024년 계획액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견학 재개 여부 및 시기에 대한 현실적인 예측 없이 과거의 관행에 따라 계획액을 편성하였음을 보여줌.

< 최근 5년간 판문점견학 통합운영 내역사업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액	1,655	1,927	2,056	2,079	2,155

자료: 통일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 9월 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되고 11월 9일에 상정되는 등 국회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 중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맞춰 국회 심의 단계에서 계획액의 감액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규모 불용액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음.

따라서 향후 통일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 여건을 충실히 반영함과 함께, 국회의 심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소요경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개성공단 조성

‘개성공단 조성’ 단위사업은 ①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가동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건립·운영, ② 현장에서 공단을 관리·운영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비 지원, ③ 개성공단 기업·근로자 지원 등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및 개성공단 기반조성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4년도 개성공단 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결 산	
		당 초	변 경		
□ 개성공단 조성	7,140	13,773	13,473	5,168	4,964
○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2,027	6,626	6,626	-	2,819
○ 개성공단 기반조성	5,113	7,147	6,847	5,168	2,145

자료: 통일부

가)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사업은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통해 기반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기업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66억 2,600만원 전액 불용하였음.

< 2024년도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6,626	-	6,626	-	-	6,626	-	-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 사업은 계획현액 17억 8,100만원 전액 불용하였으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상황 지속으로 공단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계획현액 48억 4,500만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4년도 개성공단 운영대출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개성공업지구지원 재단 지원(유상)	1,781	-	1,781	-	-	1,781
공단 기반시설 지원(융자)	4,845	-	4,845	-	-	4,845
합 계	6,626	-	6,626	-	-	6,626

자료: 통일부

나) 개성공단 기반조성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은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가동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을 건립·운영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피해 기업 경영정상화 및 근로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68억 4,700만원 중 51억 6,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5.5%임.

< 2024년도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7,147	-	6,847	5,168	-	1,679	72.3	75.5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에 51억 6,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상황 지속으로 인해 공단 기반시설 건설 지원 사업은 전액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지원(무상)	5,168	-	5,168	5,168	-	-
· 공단 기반시설 건설 지원	1,979	-	1,679	-	-	1,679
합 계	7,147	-	6,847	5,168	-	1,679

자료: 통일부

마.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프로그램은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 및 사업관리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수출입은행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액 22억 3,900만원 중 21억 7,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7.3%임.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결 산	
1.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2,256	2,239	2,178	2,688
가. 기금관리비	42	65	38	65
나. 위탁수수료	2,182	2,101	2,101	2,550
다. 사업관리비	31	73	39	73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기금관리비가 계획액 6,500만원 대비 58.5%인 3,800만원 집행되었고, 위탁수수료는 21억 100만원 전액 집행, 사업관리비는 계획액 7,300만원의 53.4%인 3,900만원이 집행되었음.

바. 기금간 거래

남북협력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함)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 상환 현황을 보면, 2024년도 남북협력기금은 공자기금 예수원금 5,200억원, 예수이자 512억 1,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712억 1,100만원을 상환하였는데, 공자기금 예수원금 5,200억원은 공자기금을 차입하여 상환하였고, 예수이자 512억 1,100만원은 일반회계전입금(정부출연금)으로 상환하였음.

< 2024년도 기금간 거래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획	결산	
1. 기금간 거래	474,873	596,209	571,211	548,737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원금상환	430,000	520,000	520,000	455,400
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	44,873	76,209	51,211	93,337

자료: 통일부

공자기금 예수금은 1999년부터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임.

< 경수로사업 추진경과 및 청산현황 >

□ 추진경과

o ’94.10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서 체결

- 1,000MWe급 경수로 2기(46억$) 제공 등

o ’95.12 :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 2기 건설 계획

o ’97. 8 : 부지정지공사 착공식(협상단계→시행단계 진입)

o ’02.10 : 북한의 핵개발(고농축 우라늄 이용) 의혹 제기

- 경수로 사업 속도조절 결정(’03. 2)→ 사업중단(suspension) 결정(’03.11)

o '06. 5 : KEDO집행이사회, 사업종료 공식 결의

※ 사업공정률 : 34.5% ('03.11), 공사비 투입액 : 15.75억달러(한국 11.46억달러, 1.37조)

□ 청산현황

o KEDO-한전간 사업종결협약(Termination Agreement '06.12) 체결

- KEDO 소유의 북한 외부 기자재를 한전에 양도하고 한전은 청산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

o 한전의 청산 결과

- KEDO의 對 한전 미지급금(원자로 터빈 등 주기기 제작 투입 비용) : 약 6,100만달러
- 한전 하청업체 클레임 처리 : 약 2,600만달러
- 경수로 기자재 : 보관비용 약 6,440만달러, 수익 약 7,900만달러

o 남은 기자재는 △한수원 예비품, △교육·연구·전시용, △해체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리

※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북미 제네바 합의('94.10)」 이후 한·미·일 3국은 '95.3.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합의

- 기능 및 역할: 1,000WMe급 원전 2기 대북 제공 및 재원 마련
  1호기 완성까지 대체에너지 공급 및 기타 제네바합의 이행 조치 수행
- KEDO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와 실무기구인 '사무국'으로 구성
  · 집행이사회: 한국(의장국), 미국, 일본, EU('97.9. 합류)
  · 일반회원국: 뉴질랜드, 캐나다,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체코, 아르헨티나, 칠레, 우즈베키스탄 등 9개국

자료: 통일부

당초 정부는 대북 경수로사업의 사업실시기관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라 함)와의 차관공여협정(1999. 7. 2.)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경수로 계정을 설정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조성된 공공자금관리금 예수금을 차입하여 KEDO에 공사비 총 1조 3,744억원을 지출하였음.

그러나, 2006년 경수로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북한-KEDO 간 채권채무 관계의 청산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협력기금은 공자기금에 대해 매년 기일이 도래하는 예수금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통일부는 경수로사업 이후 2011년도까지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공사비 원금(1조 3,744억원)과 이자를 공자기금을 재차입[87]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였음.

이 과정에서 발생 이자가 원금이 되어[88] 공자기금 차입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일부는 2012년부터 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중 매년 기일이 도래하는 예수원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재차입하여 상환하고, 매년 발생하는 공자기금예수금 이자는 일반회계전입금(정부출연금)을 통해 상환하고 있으며, 공자기금 차입금 규모는 2조 2,995[89]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차입 및 상환 현황('99~24년) >

(단위: 억원)

연 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차 입(❶)		1,498	2,549	3,100	5,050	8,230	3,100	4,100	9,400	5,216	1,475	810	8,750	1,044	4,000
상환	원금(❷)	-	-	-	1,498	2,549	3,100	2,820	7,730	5,330	500	100	7,700	-	4,000
	이자	-	190	391	626	701	795	838	967	984	963	1,002	1,048	1,051	1,126
	소계	-	190	391	2,124	3,250	3,895	3,658	8,697	6,314	1,463	1,102	8,748	1,051	5,126
잔 액(❶-❷)		1,498	4,047	7,147	10,699	16,380	16,380	17,660	19,330	19,216	20,191	20,901	21,951	22,995	22,995

연 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합 계
차 입(❶)		5,300	2,286	905	2,070	7,650	2,784	2,030	5,486	2,370	1,055	4,300	5,200	99,758
상환	원금(❷)	5,300	2,286	905	2,070	7,650	2,784	2,030	5,486	2,370	1,055	4,300	5,200	76,763
	이자	1,054	932	931	912	820	636	580	570	461	431	449	512	18,971
	소계	6,354	3,218	1,836	2,982	8,470	3,420	2,610	6,056	2,831	1,486	4,749	5,712	95,734
잔 액(❶-❷)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자료: 통일부

87)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을 갚기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함.

88) 예를 들면, 1999년 12월 8일 예수금의 경우 원금 1,498억원과, 이자 626억원(이자율 8.66%) 총 2,124억원을 만기일인 2002년 12년 6일 상환하기 위해 공자기금에서 2,124억원을 다시 차입함에 따라 이자 626억원이 원금이 됨.

89) 2011년 이후 잔액 2조 2,995억원은 대출원금 1조 3,744억원과 원금화된 이자 9,251억원의 합임.

사. 여유자금 운용

‘여유자금 운용’ 프로그램은 남북협력기금 조성액 중 사업비·기금관리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자산운용 수익을 얻는 사업임.

2024년도 계획액 1,134억 3,100만원은 통화금융기관예치분 48억 5,500만원과 비통화금융기관예치분 1,085억 7,600만원의 합으로, 이 중 통화금융기관예치 집행액은 계획액 대비 1.9%인 9,3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집행액은 계획액 대비 175.0%인 1,899억 9,700만원임.

< 2024년도 여유자금 운용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결 산	
		당 초	변 경		
여유자금 운용	163,361	113,431	113,431	190,091	94,334
통화금융기관예치	140	4,855	4,855	93	4,855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63,221	108,576	108,576	189,997	89,479

자료: 통일부

Ⅳ.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1. 재정상태 분석

<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자산합계(a)	3,776,732	3,568,824	207,908	5.8
1. 유동자산	396,959	239,252	157,707	65.9
2. 투자자산	2,853,394	2,808,732	44,662	1.6
3. 일반유형자산	415,236	405,263	9,973	2.5
4. 무형자산	12,497	16,014	△3,517	△22.0
5. 기타비유동자산	98,646	99,562	△916	△0.9
부채합계(b)	2,318,936	2,306,947	11,989	0.5
1. 유동부채	472,939	527,159	△54,220	△10.3
2. 장기차입부채	1,844,100	1,779,500	64,600	3.6
3. 장기충당부채	-	-	-	-
4. 기타비유동부채	1,897	288	1,609	558.7
순자산(a-b)	1,457,796	1,261,877	195,919	15.5

자료: 통일부

< 회계별 재정상태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자산	355,098	3,421,633	3,776,732
부채	7,203	2,311,733	2,318,936
순자산	347,895	1,109,901	1,457,796

자료: 통일부

가. 자 산

자산은 3조 7,767억원으로 일반회계 3,551억원, 남북협력기금 3조 4,21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5.8%인 2,079억원이 증가하였음.

세부적으로 상각 등으로 인해 무형자산이 35억원 감소하고 장기미수채권 감소 등으로 기타비유동자산이 9억원 감소하였으나 남북협력기금의 단기자산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유동자산이 1,577억원, 환율 상승에 따른 장기대여금 증가 등으로 인해 투자자산이 447억원, 토지 취득 및 재평가 등으로 일반유형자산이 100억원 증가 하였음.

일반회계의 자산은 3,551억원으로 토지, 건물 등 일반유형자산(3,415억원)이 전체 자산의 96.2%를 차지함.

< 일반회계 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유동자산	301	미수채권, 단기임차보증금 등
2. 일반유형자산	341,536	
o 토지	146,914	통일교육원, 남북회담본부 청사 부지 등
o 건물	156,86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건물 등
o 구축물	16,677	동해선 공동야드 정거장시설 등
o 기계장치 등	14,527	사무용 기계 및 비품 등
o 건설중인유형자산	6,554	통일정보자료센터 관련 건설중인 건물 및 북한인권센터 관련 건설중인 토지, 건물
3. 무형자산	12,497	개발소프트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
4. 기타비유동자산	764	장기임차보증금 등
합 계	355,098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자산은 3조 4,216억원으로 투자자산(2조 8,534억원)이 전체 자산의 83.4%를 차지함.

< 남북협력기금 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유동자산	396,658	
o 현금및현금성자산	93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등
o 단기투자증권	194,332	지분증권
o 미수채권	32,771	미수이자수익, 미수보험금
o 단기대여금	169,462	단기융자금
2. 투자자산	2,853,394	장기지분증권, 장기융자금
3. 일반유형자산	73,700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토지, 건물 등
4. 기타비유동자산	97,882	장기미수대여금이자수익
합 계	3,421,633	

자료: 통일부

나. 부 채

부채는 2조 3,189억원으로 일반회계 72억원, 남북협력기금 2조 3,117억원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0.5%인 120억원이 증가함.

일반회계의 부채는 72억원으로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취득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관련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됨.

< 일반회계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유동부채	5,306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관련 미지급금('25년 지급 예정),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2. 기타비유동부채	1,897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관련 미지급금('26년 이후 지급 예정)
합 계	7,203	-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부채는 2조 3,117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로 구성됨.

< 남북협력기금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유동부채	467,633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25년 만기도래), 미지급이자
2. 장기차입부채	1,844,100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26년 이후 만기도래)
합 계	2,311,733	-

자료: 통일부

다. 순자산

순자산은 1조 4,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5%인 1,959억원 증가하였음.

2. 재정운영 분석

<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금액(C=A-B)	비율(C/B)
1. 프로그램순원가	△5,702	174,511	△180,213	△103.3
2. 관리운영비	71,032	72,796	△1,764	△2.4
3. 비배분비용	57,111	46,125	10,986	23.8
4. 비배분수익	7,569	5,666	1,903	33.6
5. 재정운영순원가 (1+2+3-4)	114,871	287,766	△172,895	△60.1
6. 비교환수익 등	900	-	900	-
7. 재정운영결과(5-6)	113,971	287,766	△173,795	△60.4

자료: 통일부

재정운영결과는 일반회계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성되고,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주로 외화자산 관련 외화환산이익 등으로 구성됨.

< 회계별 재정운영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	내부거래	통일부
1. 프로그램순원가	141,279	△146,981	-	△5,702
2. 관리운영비	70,994	38	-	71,032
3. 비배분비용	4	57,107	-	57,111
4. 비배분수익	1,685	5,884	-	7,569
5. 재정운영순원가	210,593	△95,722	-	114,871
6. 비교환수익 등	-	46,242	△45,342	900
7. 재정운영결과	210,593	△141,964	45,342	113,971

자료: 통일부

가.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는 국가의 정책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총원가(사업비)에서 프로그램관련수익을 차감한 금액임.

프로그램순원가는 1,4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5%인 341억원이 감소하였음.

프로그램별로 북한정세분석, 인도적 문제해결, 통일교육 등이 증가하고, 통일정책, 남북사회문화교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남북회담 등은 프로그램순원가가 감소하였음.

< 프로그램순원가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금액(C=A-B)	비율(C/B)
1. 프로그램순원가	△5,702	174,511	△180,213	△103.3
o 통일정책	19,368	20,534	△1,165	△5.7
o 북한정세분석	9,097	6,395	2,702	42.3
o 남북사회문화교류	3,667	3,745	△78	△2.1
o 인도적 문제해결	10,388	7,338	3,050	41.6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74,734	75,867	△1,133	△1.5
o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150,798	△1,623	△149,175	9,191.3
o 남북회담	3,213	38,930	△35,717	△91.7
o 통일교육	24,627	23,325	1,302	5.6

자료: 통일부

나.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의미함.

관리운영비는 7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인 1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인건비 감소에 기인함.

다.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원가로 분류하기 어려운 비용을 의미함.

비배분비용은 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인 1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이자비용 증가에 기인함.

라.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수익을 의미함.

비배분수익은 76억원으로 전년 대비 33.6%인 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자산처분이익 증가에 기인함.

3. 순자산변동 분석

< 순자산변동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금액(C=A-B)	비율(C/B)
1. 기초순자산	1,261,877	1,285,482	△23,605	△1.8
2. 재정운영결과	113,971	287,766	△173,795	△60.4
3.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03,813	263,709	40,104	15.2
4. 조정항목	6,078	451	5,627	1,247.7
5. 기말순자산(1-2+3+4)	1,457,796	1,261,877	195,919	15.5

자료: 통일부

가.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 말 순자산 금액으로 1조 2,619억원임.

나.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1,139억원으로 일반회계 2,106억원 및 남북협력기금 △966억원(내부거래제거후)으로 구성되며, 재정운영결과로 인해 순자산은 감소하였음.

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3,038억원으로 재원의 조달 3,072억원 및 재원의 이전 34억원으로 구성되며, 재원의 조달로 순자산이 증가하고 재원의 이전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음.

재원의 조달은 국고수입 및 인사혁신처 등이 통일부를 대신하여 부담한 공무원연금 국가부담금 등이며, 재원의 이전은 국고이전지출 등임.

라.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61억원으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및 자산재평가이익 변동 등으로 순자산이 증가함.

Ⅴ.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조치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시 통일부는 13건의 주의, 9건의 시정과 17건의 제도개선 등 총 36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조치 결과 현황 >

조치 결과	구분			소계
	주의	시정	제도개선	
조치 완료	8	8	13	29
조치 중	2	1	4	7
소 계	10	9	17	36

* 시정요구유형의 중복(시정·주의 : 3건)은 시정에 반영함.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조치완료 29건 및 조치 중 7건이라는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개최실적 제고 필요 등	○ [지적사항] 통일부가 운영 중인 소속 위원회(4개) 중 법령상 국회(또는 국회의장)의 위원 추천이 필수인 위원회(남북관계발전위원회 2회,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0회) 뿐만 아니라, 그 구성·운영이 국회 추천 등 외부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위원회(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3회,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4회)도 회의개최 실적이 부진한 바, 회의개최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의	○ **(개최실적)** 적극적인 안건 발굴 등을 통해 회의 개최 실적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조치중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
('25.4.30.)</th></tr>
<tr><td></td><td>- 또한 소속 위원회 위원 위촉에 비수도권, 여성 등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를 위해 성별·지역·직능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균형있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소속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을 제고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 위촉을 통해 전문성, 공정성 및 신중성을 확보할 것</td><td></td><td>< '25년 위원회 개최 실적 >

(단위: 회, 4월말 기준)
<table><tr><th>위원회</th><th>회의 개최 실적</th></tr><tr><td>남북관계발전 위원회</td><td>2</td></tr><tr><td>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td><td>2</td></tr><tr><td>납북피해자보 상및지원심의 위원회</td><td>0*</td></tr><tr><td>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td><td>미구성</td></tr><tr><td>평화경제특구 위원회</td><td>1</td></tr></table>* 납북피해자 보상금 등 신청 감소로 개최 실적 저조

○ (위원구성) '25년 4월말 기준, 통일부에 구성된 위원회들의 여성위원 위촉비율은 50%로 모두 「양성평등기본법」상 여성위원 위촉비율의 법정기준(40%)을 충족하고 있으나,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경우(13%)는 외부 추천비율이 높아 여성위원 위촉비율 제고에 한계가 있음,

- 통일부 장관 임명 4명 중 여성이 2인으로 통일부는 50%를 여성으로 추천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추천 절차 진행 시 성별 균형을 맞춘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하여 위촉 비율 달성에 노력하겠음.

- 또한 민간위원 신규 위촉 시 북한·통일 관련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참여시키도록 독려하여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 ('23.12.) 8.3% → ('24.12.) 32.5% → ('25.4.) 34.4%</td><td></td></tr>
</table>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2)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 삭제 필요	○ [지적사항] 불법시위 개최 및 주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삭제를 권고하였으나, 통일부, 외교부, 과기부는 현재도 해당 규정을 존치 중임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	시정	○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훈령 개정 완료 ○ 조치완료일 : 2024년 9월 11일	조치완료
(3) 통일+센터의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	○ [지적사항]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에서, 일부 센터의 경우 지역통일관의 역할을 겸하고 통일체험·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 등과 그 역할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센터가 설치된 특정 지역에 통일 관련 인프라가 편중되어 있음. ○ 역할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하나센터, 지역통일관 등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통일교육 인프라 기관과 역할이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권역 내 통일 관련 인프라의 지리적 편중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함.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권역별 통일+센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여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통일교육 인프라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제도개선	○ 통일+센터는 지역통일교육센터 등과 기능면에서 중복 우려 지적이 있어 부내 유관 부서들(통일교육원, 인권실)과 협의를 통해 통일+센터 주요 기능에서 지역 통일교육 등 기능은 제외하고 지역에서 통일협력국 핵심 기능인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음. ○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통일+센터와 지역 통일인프라들 간 협력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2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4)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자부담 미이행 등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민화협은 2018년부터 4년간 통일문화축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파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총 9,100만원)으로 통일부 보조사업의 자부담(20%)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보조사업자의 단체 특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	○ 2024년부터 동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의무는 없음. -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현황 연 2회 이상 점검실시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2월 5일	조치완료
(5) 적정 예산과목 편성으로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지적사항]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에서 일반수용비가 과다 불용(1억 5,000만원)된 바,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가 함께 편성되지 못함에 따른 결과임 ○ 사업 취지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정예산 과목(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정 예산과목을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2024년부터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과목(일반용역비 210-14)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낙찰차액 외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바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1일	조치완료
(6) 내역사업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 [지적사항] 내역사업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은 북한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한 홍보사업인데, 2023년도 당초 예산(1억 500만원)에는 임차료가 편성되어 있지	제도개선	○ 기존 콘텐츠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북한인권 영화 다시보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 상영장소 대관에 필요한	조치완료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
('25.4.30.)</th></tr>
<tr><td>집행관리
필요</td><td>않았으나, 내역사업 간 조정을 통해 계획에 없던 '북한인권영화 다시보기'의 상영장소 임차료(800만원)로 집행함. 콘텐츠 개발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장소 임차를 위해 집행한 것은 당초 사업 계획이 면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사업추진시 보다 면밀한 계획을 통해 내역사업간 예산 조정 등 변경집행을 최소화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d></td><td>임차료를 세목조정으로 마련하여 집행하였음.

○ 향후 보다 면밀히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세목조정 등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td><td></td></tr>
<tr><td>(7)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 강화 필요</td><td>○ [지적사항] 내역사업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력양성, 문화행사, 공론화 등의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2023년도에 18개(상반기 15, 하반기 3)단체에 총 20억원을 집행함. 통일부 공모사업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공모사업에 동시에 선정되어 이중으로 지원된 단체(3곳)도 확인된바,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집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td><td>주의</td><td>○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과, 남북하나재단의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재원이 중복되지 않으며,
<table>
<tr><th>구분</th><th>통일부</th><th>남북
하나재단</th></tr>
<tr><td>공모명</td><td>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td><td>민간단체
지원 사업</td></tr>
<tr><td>목적</td><td>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상황 개선</td><td>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남북주민의
소통 및
화합,
남북청년역량강화</td></tr>
<tr><td>재원</td><td>국고보조금</td><td>하나재단
출연금</td></tr>
</table>
○ 각 단체가 수행한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도 차이가 있음.</td><td>조치완료</td></tr>
</table>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table><tr><td>단체명</td><td>통일부</td><td>남북하나재단</td></tr><tr><td>통일맘연합회</td><td>북한인권 여성 피해자 사례 조사 및 관련 내용 웹사이트 업로드, UN 등 국제사회 홍보</td><td>탈북민 애착 기반 부모교육 및 역사 탐방 가족여행</td></tr><tr><td>북한인권시민연합</td><td>북한인권 방탈출 게임 체험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td><td>취약 탈북민 수호천사와 끈잇기 프로젝트</td></tr><tr><td>프리덤스피커즈 인터내셔널</td><td>미국 국무부 및 의회 등에서 탈북민이 직접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영어로 발표</td><td>북한이탈주민 영어능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td></tr></table> ○ 다만, 민간단체 지원 대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통일부-하나재단 간 공모 상황 공유, 선정 단체 사전 통보 등을 통해 유사 사업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동일 단체 지원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3월 18일	
(8) 당초 계획에 없던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위한 전용 등 부적절	○ [지적사항]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 중 자료 발간을 위한 예산은 당초 2,000만원이었으나, 다른 세부사업 등에서 전용, 내역변경 등을 통해 총 1억 2,100만원을 더 조성하여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함 -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동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별도의 홍보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바, 과도한 전용 등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볼 수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충실한 사업계획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정규 예산	제도개선	○ 2024년 '공개보고서 발간 예산'을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에 편성하여 추진함.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에 반영함으로써 과다한 전용 등 변경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9)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필요	○ [지적사항] 동 사업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 시행일(2016.9.4.)에 맞춰 재단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재단 이사 구성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됨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어 예산 집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범 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	○「북한인권법」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진행되지 않아, '16년 법 시행 이후 8년째 재단 미출범 상태 지속 ○ 그간 정부는 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 * '16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총 14회 발송(가장 최근 '24.11.18.) ○ 향후에도 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협력 지속 계획 - 또한,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연내 출범시 사업비는 예비비로 편성·집행 예정)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중
(10) 하나센터 직원 처우개선 대책 마련 필요	○ [지적사항] 최근 5년간 25개 하나센터 근무 직원 127명 중 1년 미만 퇴직자가 59명으로 나타나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하나센터 현황 : 서울(4), 인천(1), 부산(1), 대구(1),대전(1), 광주(1), 경기(6), 강원(2), 전북(1), 전남(1), 충북(1), 충남(1), 경북(1), 경남(1), 제주(1)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하나센터 근무 직원에	제도개선	○ 통일부는 처우개선 등을 통해 하나센터 직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나센터를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시설에 추가('25.1.9.)하였으며, 이에 따른 처우개선 방안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중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
('25.4.30.)</th></tr>
<tr><td></td><td>대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td><td></td><td></td><td></td></tr>
<tr><td>(11) 정보화 사업 추진시 적극적 성과관리 필요</td><td>○ [지적사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세부사업에 총 1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2023년도 기존 내역사업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4억 2,400만원과 신규 내역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에 7억 2,500만원을 집행함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이 10억 이상인 경우 성과평가 수립 및 성과지표 관리가 필요함에도 2023년도에 동 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정보화 사업 관련 성과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10억 이상)을 내역사업 기준이 아니라 세부사업 기준을 적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성과관리에 임할 것</td><td>제도개선</td><td>○「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대상에 반영·관리(행정안전부 주관)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23회계년도 예산 성과지표에 반영조치 하였음.

* '21~'25년도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달성도
<table><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1</th><th>'22</th><th>'23</th><th>'24</th><th>'25</th></tr><tr><td rowspan="3">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 (단위:점)</td><td>목표</td><td>-</td><td>-</td><td>80</td><td>-</td><td>-</td></tr><tr><td>실적</td><td>-</td><td>-</td><td>88.04</td><td>-</td><td>-</td></tr><tr><td>달성도</td><td>-</td><td>-</td><td>100%</td><td>-</td><td>-</td></tr></table>
○ 향후, 정보화 사업 예산이 세부사업 기준 10억 이상일 경우, 성과관리 시행 예정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td><td>조치완료</td></tr>
<tr><td>(12)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td><td>○ [지적사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의지 제고를 위해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09억 8,100만원 중 100억 8,600만원이 집행되고, 108억 9,500만원은 불용함</td><td>주의</td><td>○ 코로나19 펜데믹 종료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입국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4년 기준 탈북민 입국 인원이 '23년 196명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td><td>조치완료</td></tr>
</table>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북한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가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추계의 정확성 부족으로 인해 예산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임(2023년도 예산기준 북한이탈주민 550명, 실제 입국인원 196명)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향후 국제정세 및 북한의 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		* 하나원 정착금 지급 사업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원 수료 인원을 기준으로 편성 o '25년 예산 편성시 예상 수료 인원, 실제 예산 소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음. - '25년 하나원 예상 수료 인원은 380명이며, '24년 예산 편성시 보다 120명 축소 추계하였음.('24년 예산 추계시 예상수료 인원을 500명으로 예측) - '25년 정착기본금 증액(1인 세대 기준 1천만원 → 1,500만원) 등 추가 재정소요에도 불구하고, 정착금 예산은 '24년 대비 23.4억원(187.5억원→164.1억원) 감액 편성함.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13)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 사업의 예산 과다 계상 지양 필요	○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1억 4,700만원 집행)은 남북 그린데탕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남북공동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 예산심의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현실적 어려움 등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아 결국 예산액의 51%를 불용(1억 5,300만원)처리 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주의	○ '24회계년도에 그린데탕트 사업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1.6억원)에 통합 편성(1.6억원)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지적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절감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의 과다 계상을 지양할 것			
(14) 남북회담문서 공개사업 열람 방식 확대·개선 필요	○ [지적사항] 남북회담 사후조치의 일환으로 30년이 경과된 남북회담문서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2022년과 2023년의 남북회담문서 자료 열람건수를 보면 각각 19건과 11건으로 열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수도권에 편중된 남북회담문서 열람 장소를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확대하고, 전자적 열람 방안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홍보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	제도개선	○ 남북회담 문서 공개 열람 장소 확대 방안 모색을 통해 기존 열람 장소 외에 호남권 및 영남권 각 1곳 열람 장소 추가 완료 -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목포), 국회부산도서관 *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시 기존 자료(제1차~제5차) 포함 열람 가능 ○ 남북회담 문서 대국민 온라인 열람 서비스 구축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15) 교육목적에 맞게 현장견학 프로그램 개선 및 세목조정을 통한 위탁용역 신설 집행 지양	○ [지적사항] 국립통일교육원의 장·단기 교육과정(1억 3,400만원 집행)은 통일 및 통합과정을 주도·견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 예산 집행액의 15%를 현장견학에 사용하였는데, 통일정책 지도자과정에는 통일과 무관한 통영·제주 등 관광지 방문 등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에 없던 현장견학 위탁용역 추진을 위해 1,500만원을 세목조정하였음.	주의	○ '24년 통일정책 지도자과정의 교육생 현장견학은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통일 및 안보 지역 위주로 선정하였음. - 하나원, 통일전망대, 납북자 기념관, 캠프 험프리스, 6.25 참전 전사자 묘역, 공군·해군 부대 및 진해 잠수함사령부 등 ○ '24년부터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의 교육생 현장견학 관련 위탁사업 예산을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여 추진함.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통일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현장견학 위탁용역 등을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 조치완료일 : 2024년 11월 1일	
(16)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개설 지원사업의 수강인원 확대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국립통일교육원의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개설 지원사업(7억 100만원 집행)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강형식과 1학기 동안의 학점과정인 통일 강좌로 나눠 지원하는 사업임. 대학생 통일강좌 수강인원 점검 결과 2020년 2,779명 대비 2023년 수강생이 1,681명으로 40% 급감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대학생 통일강좌 수강인원이 급감한 원인을 파악하고, 수강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수강인원 급감 원인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였음. - 급감 원인 : △코로나 19에 따른 수강환경 악화(대학의 대규모 강의 폐지 등) △대면 및 온라인 교육의 혼합 운영이 2023년 전면 대면 교육으로 전환 △사업예산 축소('20년 8억→'23년 7억) - 대책 : △'20년 수준의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예정 △사업공고 1개월 전 4년제 전체 대학에 사업 안내 공문 발송 및 대학연합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홍보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3일	조치완료
(17) 교직원 및 대학(원)생 대상 통일논문 등 공모사업 활성화 필요	○ [지적사항]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사업(4,200만원 집행)과 대학(원)생 통일 논문 및 통일 홍보 영상 공모 사업(4,400만원 집행) 등 공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관련, 2021년 대비 2023년의 응모 수는 41%, 입상 수는 4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대학(원)생 통일논문 공모 사업 또	제도개선	○ 통일논문 공모 응모작 감소 원인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였음. - 감소 원인 : △통일논문 공모 홍보 채널이 교육원 홈페이지, 공모전 사이트에 국한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예비 응모자들의 인지 시점이 늦어 충실한 논문 준비에 어려움. * '24년 통일 논문 공모 시 상금 최고액이 500→300만원으로 줄었음에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한 응모 수와 입상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통일논문 등 공모사업 상금을 올리고,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예비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입상 후 연계 활동을 개발하는 등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할 것		한 홍보가 이뤄지도록 대학교에 홍보 협조 요청 등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24년 논문 응모작 수가 '23년 대비 11편 증가 - 대책 : △대학 홈페이지 게시 등 대학교 대상 홍보 협조 요청 △최초 홍보를 신학기 개강 시점으로 앞당겨 실시 ○ 조치완료일 : 2025년 3월 26일	
(18)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부채 상환 방침 수립 필요	○ [지적사항] 단의 주요 자산이 북한 개성공단에 소재하고 있어 평가액 산정과 현금화 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나, 남북협력기금에서 재단에 운영자금으로 대출한 금액 중 788억원 및 외화 대출 $1,577,050이 미상환 상태임(2023년 12월말 기준)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부채 상환에 대한 방침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	제도개선	○ 청산법인, 관계부처·유관 기관 등과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특히, 정부 차입금(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 조치예정일 : 2025년 하반기	조치중
(19)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및 연구결과 공개 확대 필요	○ [지적사항] 정책연구개발(7031-300)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43건 중 32건(74.4%)을 수의계약에 의해 수행하였고, 통일정책추진(1031-300)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36건의 정책연구과제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수행함.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는 부분공개를 포함하여 그 공개 비율이 2021년 81%, 2022년 79%, 2023년 74%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	시정	○ 국가계약법상 용역에 대해 동법 시행령에서 학술연구 관련 계약 중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이 요구되는 1억원 이하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 26조1항). - '24년 추진된 정책연구개발(7031-300) 연구용역 9건 모두 1억원 이하 용역에 해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는 실정임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정책연구과제의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연구결과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당되나,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일반경쟁 절차를 거쳐 추진하였음(△홈페이지 2건 △조달청 2건). ○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공고 후 유찰·단독 응찰된 경우에도 정책연구용역심의 소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국가계약법 상 '경쟁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홈페이지 사전 공고 등을 통해 계약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임. ※ 국가계약법상 '경쟁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 ○ 향후에는 더욱 정책연구용역 추진시 일반경쟁 절차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24년 정책연구용역 경쟁계약 15건 중 12건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였으며, 3건은 자체 경쟁계약 체결 ○ 비공개 용역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 등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연구결과물 중 일부를 비공개하고 있음. - 상대가 있는 안보부처의 특성상 보안 필요성으로 결과물에 대한 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가능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음. ※ '24년 정책연구용역 경쟁계약 15건 중 2건 비공개(13%)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20)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정산 관리 강화 필요	○ [지적사항] '기타경상이전수입'(10억 3,500만원 수납)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자체 감사 후 환수금액 등이 수납되는 비목이며, '기타재산이자수입'(7,400만원 수납)은 보조금 관련 발생이자 및 관유물대여료 분할납부시 이자 등이 수납되는 비목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 완료하여야 하나, 2022년도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가 2023년 연내 미수납된 사례(2022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집행잔액 6,400만원 등)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관리를 강화할 것	시정	○ 통일부는 각 지자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을 공문을 통해 요청('24.4.9.)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반납을 독려하였음. - 2022년 지역협의회 사업 이자(기타재산이자수입)중 미정산된 금액은 '25.4.14. 현재 24,500원(1건)이며, 이 또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음. ○ 앞으로도 통일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정산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안내 및 독려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중
(21)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 실적 제고 필요	○ [지적사항] 신규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11억 800만원 집행)은 통일미래전략 구상·수립,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지원을 위해 통일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시정	○ '23년 예산의 경우 정책여건 악화로 인해 계획 중이던 국외출장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 이후 '24년에는 계획한 국외출장을 실시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집행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가 의욕적으로 출범한 첫 해임에도 예산집행률은 73.9%에 그쳤으며, 법령상 회의운영 기준도 준수하지 못함 -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을 제고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법령에 따라 설치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사업 실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할 것		실적을 제고하여 예산집행률을 80%로 개선하였음. ※ 12월 통일공공외교 해외출장(미국)을 통해 예산집행률 100%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국내정치상황으로 불용액 다소 발생 - 타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운영해 나가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22) 통일+센터 구축 사업 지연에 따른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지적사항]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해 있는 통일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는 종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인데, 당초 2024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된 강원·충청·경기 지역의 통일+센터 설립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 강원권 통일+센터의 경우 2024년 10월 개관 예정이나, 경기권·충청권의 경우 사업이 반복 지연(예산이월 반복)되어 2025년 6월과 10월로 각각 개관이 늦춰짐.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부된 보조금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하고 추가적인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시정) - 통일부는 통일+센터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시정 주의	○ 강원권 통일+센터는 2024년 10월 25일 개관하여 현재 운영중임. ○ 경기·충청권의 경우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적인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주의)			
(23) 당초 예산계획에 없던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사업 추진 부적절	○ [지적사항] 내역사업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에서 당초 예산계획에 없던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용역) 추진을 위하여 변경 집행을 통해 일반용역비 1억원을 조성하고 8,000만원을 집행한 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충실한 사업계획을 통해 정규예산에 편성하고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신규사업 추진시 관련 예산을 정규예산에 편성하고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시정) - 통일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주의)	시정 주의	○ 2023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향후에는 정규예산 편성 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음. '24년도에는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예산에 내역사업으로 정규 편성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1일	조치완료
(24) 북한경제연구포럼 사업 구조 개선 필요	○ [지적사항] 동 사업의 목적은 정부와 북한경제연구자 간 종합적 소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는데, 포럼 운영에는 세미나 개최 비용 1억원(28.6%)만 편성되어 있고, 일반연구비 및 정책연구비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 다른 정책연구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시정	○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4.11.29. 「북한경제연구포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연구용역 점검 및 향후 북한경제연구포럼 발전방향을 논의하였음. - 정부와 연구자들 간 종합적 소통체계 구축 강화 방안 등을 협의 * △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점검 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내역사업을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게 포럼, 세미나 등 형태의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의를 자주 개최하여 소통 기회를 확대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하는 공개 세미나 추진 등을 통해 포럼 세부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 △사전에 정부·연구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연구 주제 선정 등 ○ 향후 간담회 논의사항을 참고하여 '25년 북한경제연구포럼 기본계획 수립 ○ 조치완료일 : 2024년 11월 29일	
(25)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사업의 추가지연 방지 필요	○ [지적사항] 동 사업은 당초 2023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고양시의 부지 변경 요구로 착공 진행 불가에 따른 설계 중지로 설계비 기성금 잔액 5,000만원, 공사비 등 59억 500만원, 총 59억 5,500백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향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일정의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설계, 착공 등에 있어 철저한 집행관리를 할 것	주의	○ 철저한 일정 관리를 통해 재설계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 기관별 사전협의 절차 완료 - 조달 발주를 통한 시공사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12.16 착공 * '24.12.16 착공, '26.11 준공, '27년 상반기 개관 예정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6일	조치완료
(26) 보조사업자 선정시 정치적 중립성 제고 필요	○ [지적사항] 보조사업 추진 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를 배제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단체를 배제할 것	주의	○ 통일부는 공모를 통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선정하고 있음. - 공모 심사는 보조금법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관련법령조문 】 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2항 -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통일부훈령) 제16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제2항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통일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원들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단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등은 고려치 않음. ○ '25년 공모 선정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25.2.26.) 및 면접 심사 진행(3.5.)을 통해 지원대상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3월 5일	
(27)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사업 연말 예산전용을 통한 사업 추진 지양	○ [지적사항]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사업(2023.12.1. 서울 코엑스 개최)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되었는데, '23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2억 3,000만원을 전용하여 2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불용됨 ※ 구인 기업체 141개, 북한이탈주민 약 1,200여명	시정 주의	○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는 '24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음. ○ 정부는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유의하겠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필요	참가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국회 심의를 거쳐 정규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 예산전용을 통한 사업 추진은 지양할 것(시정) ○ 통일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주의)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28)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내실있게 운영 필요	○ [지적사항]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통일부 훈령 제697호)에 따르면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촉할 수 있으며, 반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총 138개 지역협의회 중 북한이탈주민 위원이 위촉된 지역협의회는 15개에 불과하며, 반기별 회의 개최 규정을 준수한 지역협의회는 3년간 15개에 불과함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구성 및 운영 대책을 마련할 것 ○ 통일부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	제도개선	○ '24.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매뉴얼 수립·배포 - 지역협의회 위원구성 지침 안내(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지역협의회 회의는 연 2회 원칙,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반기별 1회 개최 권고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위하여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종사자간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 조치완료일 : 2024년 3월 27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별 종사자 인력편차 문제를 해소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9)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운영사업의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개편 필요	○ [지적사항] 최근 3년간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중 휴면 중인 기업이 20개 내외이고, 소비재박람회, 국회 상품전시회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등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들의 성과는 정체 또는 축소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관련 기존 사업의 결과분석 및 2024년 이후의 사업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제도개선	○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세부 내용 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개편을 추진하였음. - 개성 입주기업의 실증적 경험 사례들을 기록화 한 '개성공단 기업 운영 경험 공유 사업'은 인터뷰 대상기업 확대 및 결과물의 체계적 관리 등 사업운영 내실화 - 소비재박람회 행사인 '메가쇼'의 전시·판매 공간 추가 확보 및 지역 단위 축제('파주장단콩' 등)에 개성기업 참가 지원 확대 * 메가쇼의 경우 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인 '라이브커머스' 와의 연계를 통한 제품 홍보·매출 제고에 기여 - '위기기업 컨설팅 사업'은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기존 집합식 교육을 1:1 맞춤형 형식으로 프로그램 보완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30)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	○ [지적사항] 남북회담 담당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외부전문가 및 회담 유경험자 강의 등을 통해 회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그 사업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유관부처 합동 해외 사례조사	제도개선	○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과거 회담사례 학습, 회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남북회담 재개에 대비 ○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례조사 진행('24.11.25.-28)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사업 또한 2023년 집행되지 않았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담당 인력의 협상 역량을 강화하고 남북회담에 대한 상시 대응태세를 구축할 것		○ 남북 당국대화협의체 추진 전략 개발 연구용역 완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31) 지역사회 통일교육 제공 주체의 분절화 해소 필요	○ [지적사항]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사업(45억 3,000만원 집행)은 지역 통일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통일관을 지원하는 등 사회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통일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인프라로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관 및 통일+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각 조직의 역할이 통일강좌 확산, 체험학습 등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관 및 통일+센터 상호간 역할과 위치 등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통일 인프라의 역할을 조정 및 재편성할 것	주의	○ 기본적으로 통일+센터와 지역교육센터, 통일관은 △기능 △법적근거 △운영주체 △예산 등이 다른 사업이나, 일부 중복 우려 지적에 따라 부내 협의('24년 9월~11월), 연구용역 추진('25년)등을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중임. ○ 향후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관 등은 '지역 맞춤형 통일교육' 실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통일+센터는 통일 공감대 확산 등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음. - 이를 통해 지역 통일교육 인프라와 통일+센터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음. ○ 조치예정일 : 2025년 9월 1일	조치중
(32) 보조사업자 예산 집행 관련 교육 강화 필요	○ [지적사항] 국가보조금통합시스템에서 보조사업자가 예산집행시 원고비 및 제작비를 사업추진비(240-01)로 집행하고 행사식대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는 등 예산비목과 다르게 집행한	주의	○ '25년도에는 국가보조금통합시스템 비목에 맞게 기금 보조사업 예산 편성·등록(2025년 2월) - 「남북협력기금 집행 정산 지침」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경우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편성 비목과 국가보조금통합시스템상 집행 비목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예산 집행과 관련한 교육 강화 등 예산 집행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통일부는 현재 북측의 호응이 없이 남측만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 진행에 일부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진행 방식 및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관련 보조사업자 교육 실시('25. 2. 21.) ○ 법정시한 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완료 등 사회문화교류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2월 21일	
(33)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지적사항] 남북경협이 장기간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 청산,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장기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경협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5.24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경협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동 자산 지원 △4차례 특별대출 △기업운영관리 경비 지원 △금리인하 등을 실시하였음. - 또한, 경협기업들에 대한 협력기금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24.8월 관련 지침 개정)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다만, 추가지원 문제는 △재정 여건 및 관계기관 입장 △타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34) 집행가능성	○ [지적사항] 통일부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보조금	시정	○ 2023년 이자는 지자체 추경에 반영되어 2024년 12월20일 까지 납부함.	조치완료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
('25.4.30.)</th></tr>
<tr><td>을 고려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 및 보조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td><td>예산을 지자체로 교부하여 지자체 단계에서 전액 이월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 '23년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지자체별 보조금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tr><th rowspan="2">사업시행 주체 (지자체)</th><th colspan="2">통일부</th><th colspan="3">사업시행주체(지자체)</th></tr><tr><th>예산 (A)</th><th>집행액</th><th>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 (B)</th><th>교부 현액</th></tr><tr><td>전라남도</td><td>300</td><td>300</td><td>300</td><td>-</td><td>300</td></tr><tr><td>강원도</td><td>-</td><td>812.5</td><td>812.5</td><td>2,210</td><td>3,022.2</td></tr><tr><td>충청남도</td><td>1,600</td><td>1,600</td><td>1,600</td><td>400</td><td>2,000</td></tr><tr><td>경기도</td><td>1,000</td><td>1,500</td><td>1,500</td><td>1,457</td><td>2,956.8</td></tr><tr><td>계</td><td>2,900</td><td>4,212.5</td><td>4,212.5</td><td>4,067</td><td>8,279</td></tr></table>주) 강원: (전년이월) 8억 1,250만원 교부

○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1:1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지자체 단계에서 국비만 우선 집행되고, 매년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정산·반납되지 않고 있는 것은 통일부의 보조사업 집행관리가 미흡한 것으로서 부적절함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향후 보조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 이월액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교부하고, 지자체의 자기부담금 확보 및 집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며, 매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마다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정산·반납받는 등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집행지침을 준수할 것</td><td></td><td>○ 향후 지지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교부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td><td></td></tr>
<tr><td>(35) 신규 내역사업 미집행 및</td><td>○ [지적사항] 시급한 노후시설의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의 취지는</td><td>주의</td><td>o 노후시설 개보수공사에 대해 2024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을 완료 하였으며, 2025년 예</td><td>조치완료</td></tr>
</table>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내역변경을 통한 노후시설 보수의 문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음 - 당초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시설 공사 예산을 전액 다른 용도의 공사로 사용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 현재 경의선 출입시설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철도출입시설 냉난방기 교체와 CCTV 부분 교체 공사의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할 만큼의 시급성이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음 -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시설물 개보수 공사의 경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하라는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노후시설 개보수공사의 경우 예산에 편성하여 실시하고, 내역변경 등을 통한 집행은 안전과 관련한 시급한 공사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실시할 것		산에도 동 공사 예산을 편성하였음. o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36) 북한의 경수로지원(KEDO) 채무불이행 관련 북한정권에	○ [지적사항] 1999년에 발생한 KEDO(경수로 지원) 차관 원금 1조 3,744억원을 지난 23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돌려막기(리볼빙) 하며 빚을 계속 미룬 결과 이자지급에	제도개선	○ 경수로사업 종료('06.5.31) 이후, KEDO는 북측 책임 공식화 및 대북청구권 유지를 위해 매년 7~8월중 북측에 손해배상 청구 공한을 지속 발송* - 북한은 경수로사업 종료 책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채무상환 촉구 방안 마련 필요	만 원금보다 더 큰 1조 8,705억원을 혈세로 탕진함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차입하다보니 원금과 이자에 또다시 이자가 붙으면서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정부출연금(일반회계전입금)에서 이자 상환(2012~2023년까지 매년 평균 742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됨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북한의 경수로 지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수십년째 누적된 재정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정권에 채무상환 촉구 등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임은 미국에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미국과 KEDO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KEDO사무국 명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앞으로 발송 ** '24년에는 KEDO 사무국 임기 만료 문제로 대북 서한이 미발송, '25년 연장 승인에 따라 서한 2회 발송 추진 - '24년자 서한 발송 완료('25.5.22자), '25년 서한 발송 예정 ○ 남북협력기금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3조원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바, - 정부 재정부담, 납북협력기금 건전성 및 남북관계 진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 조치예정일 : 미정	